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 일 러 두 기 〉

-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에 대한 안내와 공익직접지불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침입니다.
- ◇ 본 지침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추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개정내용 법령해석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에 활용 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지침 개정 여부를 재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1
I. 사업개요	2
II.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	8
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8
가. 지급대상 산지(지급단가)	8
나. 지급제외 산지	8
다. 지급대상자	12
라. 지급제외자	14
② 육림업 직불금	34
가. 지급대상 산지(지급단가)	34
나. 지급제외 산지	34
다. 지급대상자	37
라. 지급제외자	38
III. 준수사항 등	46
① 준수사항 종류	46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49
③ 준수사항별 감액	49
[2] 사업추진체계	56
I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	57
II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등	59
III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7
IV 등록사항 변경·신고	71
V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73

VI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75
VII 사후관리	78
[3]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80
I. 공통사항	81
①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82
②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89
③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102
④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108
⑤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116
⑥ 마을 등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120
⑦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125
II.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138
①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138
②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149
III. 육림업 준수사항	160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160
② 입목의 유지	166
[4] 부정수급	173
I. 부정수급 범위(착오 등 포함) 및 조치	174
II.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 방지대책	176
III.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181
[5] 주요 질의응답	187
[6] 관련 서식	200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1]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I.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산림은 약 221조 원('18)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
- 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음
 - * '21년 임가소득 38백만 원 → 농가 48백만 원의 80%, 어가 52백만 원의 73%
- 농·수산업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공익가치가 큰 임업 분야도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도입('22.10.)
 - * 직불제 도입 후 공익형 전환 : 농업('20), 수산업('21)

2 법적 근거 및 예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 '23년 재원 구성 및 예산 : 국고 100%, 예산 56,607백만원(직불금 468억원)

3 추진 경과

- ('05, '08, '16, '20, '21) 임업직불제 필요성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 ('17) 조건불리지역 임업직불제 법률 제정안 발의
- ('19) 농업직불제에 임업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 ('19)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시행
- ('20)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 발의
- ('21) 「임업직불제법」 제정(11.30.) 및 시행('22.10.1.)
- ('22) 「임업직불제법」 시행령(9.20.), 시행규칙(9.30.) 제정 및 시행(10.1.)
- ('22) 임업직불금 지급(21천명, 467억원)

4 용어정리

1. 임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 포함),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관련 서비스업

2.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 “산지”란 아래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垓)로 변경된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 도로(다만, 임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제방·구거 또는 유지인 토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다른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①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 ②건물 담장 안의 토지, ③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신고를 통해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2) 임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임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4) 임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5)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6) 2)부터 4)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
|---|

3. 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산림”이란 아래 다섯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임목(立木)·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

*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임목·대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밭두렁,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대나무와 그 토지
-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임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3) 임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 5) 1)부터 3)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4. 임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라 한다)

5. 임업인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1)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음.

2)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음.

6. 임산물생산업

-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을 생산하는 임업

7. 육림업

-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8. 종사

-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위탁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9.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 “종합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아래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것

- 1) 이자소득 : 소득세법상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 2)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 3)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4)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반대급부로 받는 소득
- 5)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 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 6)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10.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농업소득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1호)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 등록신청인이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활용하여 대량 검증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서류 제출

5 구성 및 추진체계

1. 임업직불제 구조

임업직불제도			
구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소규모임가	면적	
최소 면적	0.1ha 이상	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임업인: 3ha 이상 농업법인: 10ha 이상
구간 및 단가	0.1ha~0.5ha: 120만 원/가구	1구간(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2ha 초과~6ha 이하): 82만 원/ha 3구간(6ha 초과): 70만 원/ha	1구간(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10ha 초과~20ha 이하): 47만 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 원/ha
지급 상한	임가당: 120만 원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임가 60ha) 농업법인: 50ha

* 송이 구간 / 단가 별도 고시

2. 추진체계



3. 추진절차(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p>①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사전준비</p>	<p>1~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수요 등을 반영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 직전 연도 직불금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행정정보 연계 등 사전정보 구축 및 자격요건 사전검증 ▶ 임업인 대상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p>② 직불금 신청·등록</p>	<p>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규모임가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임차 임업인은 임지의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 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인쇄·배포 등 * 지자체 사업관리 예산 내시 통보(5월)(*예정)
<p>③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p>	<p>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자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 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조사위원회 심사 ▶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지자체 직접지불금 예산 내시 통보(7월)(*예정)
<p>④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자 확정</p>	<p>2~5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정보 변경 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산지·임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 대상 등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자체 서류 및 현장점검 ▶ 준수사항 이행점검(지방산림청·관리소 계획에 따라 추진)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9.30.) ▶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시스템 검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 입력은 시·도 담당자
<p>⑤ 지급금액 산정</p>	<p>10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 임업직불금 교부결정 통보(산림청 → 시도→ 시·군·구)
<p>⑥ 직불금 지급</p>	<p>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직불금 지급(시·군·구 → 임업인) ▶ 임업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p>⑦ 사후관리</p>	<p>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산림청·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II. 지급요건 등 주요 내용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가.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임업경영체 등록 >

- 법적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등록대상 :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등록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항,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
 - △ 수실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자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참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나. 지급제외 산지

① 국유림, 공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산림의 구분)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임차한 경우도 제외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면적)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아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더라도 대상 산지에 포함함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임도는 제외됨)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④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불금(소규모농가, 면적)을 등록 신청한 산지

⑤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육림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해당 산지분에 한함

⑥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⑦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하되, 등록 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지구·지역·단지의 산지 중 보상을 받지 않았던 산지분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산지로 인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⑧ 휴경 중인 산지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산지로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⑨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버섯류 및 수목부산물류는 제외한다)을 파종 또는 식재(접목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품목 중 버섯류를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다만, 버섯류 중 송이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

* 송이 지급 기준은 [붙임4] 일시적인 채취행위 중 예외적 지급 기준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공무원 A는 임업인 B의 직불금 신청 산지 현장조사를 하던 중, 임산물이 식재되지 않은 일부 면적을 확인했다. 이 경우,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한 면적 안에 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으로 포함해야 할까?

→ 임업인이 신청한 면적 중 현장조사 결과 휴경면적이 확인된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대상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사례2) 국유림을 대부분아 송이를 채취하는 임업인 C가 해당 산지를 직불금 신청할 경우, 직불금 신청 가능한 산지로 볼 수 있을까?

→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은 ‘국,공유림’은 제외하므로, 직불금 신청이 불가

사례3) 임업인 D는 밤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산지를 직불금 신청했다. 신청한 면적 중 작업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제외해야 할까?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중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면적은 지급 제외하고 있음. 다만,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 예외로 지급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로도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에 포함해야 함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변경 시 별도 고시)

△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 송이 외 품목

구간	지급단가(송이 외)	사례
1구간(0.1ha이상~2ha이하)	94만원/ha	○ 면적 0.5ha ⇒ 47만 원 ○ 면적 5ha ⇒ 434만 원 ○ 면적 10ha ⇒ 796만 원 ○ 면적 30ha ⇒ 2,196만 원
2구간(2ha초과~6ha이하)	82만원/ha	
3구간(6ha 초과)	70만원/ha	

* 송이

구간	지급단가(송이)	비고
1구간(0.1ha 이상~10ha이하)	62만원/ha	
2구간(10ha 초과~20ha이하)	47만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원/ha	

다. 지급대상자

* 소규모임가직불금은 [붙임9]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증명 참고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종사)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 지급 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신청자의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전년도 1.1~12.31)

△ 직전년도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수기·스마트영림일지 등)

👉 '23년 「임업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 안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현행	개정	사유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11조제1호의 연간 종사일수 완화	90일 이상	<u>60일 이상</u>	조방적인 임업 특성을 반영

* 증명 방법은 [붙임1]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자 종사 기간/일수 산정 세부 기준 참고

(산지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 기준 충족

① 임업인 : 0.1ha 이상

② 농업법인 : 5ha 이상

↳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판매금액)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충족

① 임업인 : 120만원 이상

② 농업법인 : 4,500만원 이상

* 증명 방법은 [붙임2]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자 연간 판매액 기준 참고

👉 '23년 「임업직불제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 안내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현행	개정	사유
시행규칙 제4조제1호가목의 연간 판매금액 보완 기준 마련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u>연간 경영투입비용 60만원 이상도 인정</u>	생산주기가 긴 임업 특성 반영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명 관련

임업인 A는 2년 전에 키우던 임산물을 모두 판매하고, 1년 전 새로 임산물을 식재하여,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는 판매 실적이 없다. 이 경우, 직불금 신청시 직전년도 임산물 판매액(120만 원)증명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법령에서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임산물의 경우 생산주기가 길어 매년 판매 증명이 어려운 품목도 있으므로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을 직전 연도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① 직전 연도 또는 신청연도의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②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충족

예) ㉠ 직전 연도 임산물 12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인정

㉡ 2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text{만 원}/2\text{년} = 150\text{만 원}$ → 인정

㉢ 3년 전 임산물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300\text{만 원}/3\text{년} = 100\text{만 원}$ → 불인정

㉣ 5년 전 300만 원, 3년 전 300만 원 판매영수증 제출 → $600\text{만 원}/5\text{년} = 120\text{만 원}$ → 인정

㉤ 직전 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 신청연도 판매영수증 60만 원 제출 → 불인정

□ (농촌거주)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 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의 경우 주소지(농촌)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의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수령 가능

△ ㉡의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한 자는 보유한 지급대상 산지에 대해 직불금 수령 가능

↳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는 임가 구성원 모두가 신청연도 직전 3년간 계속 농촌 거주

* 주업기준

임업인	농업법인
① (거주제한) 동일연접 시군 산지 3ha 이상 * 「임업진흥법」 상 임업인 기준	① (주소제한) 동일연접 시군 산지 10ha 이상 * 농업법인의 평균재배면적 10.7ha(농업법인조사)
② (전국)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 단기임산물 주업 임가의 임산물수입액 중위값 1,690만 원('20 임가경제조사)	② (전국) 판매액 8,000만 원 이상 * 가장 수입이 낮은 헛개나무 생산액 8백만 원/ha('20 임산물소득조사)
③ (전국)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주업 임가의 임업경영비 중위값 800만 원, 수입 대비 50% 적용	③ (전국) 경영투입비용 4,000만 원 이상 * 수입대비 50% 적용

라. 지급제외자

- ①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②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③ 소농직불금(신청일 직전 연도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 ↳ 전년도 소농직불금을 반납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정산한 경우 지급 가능
 - * [붙임8] 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수령 참고
- ④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신청일 직전 연도 한정)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이 30ha를 초과한 자
 - * [붙임8] 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수령 참고
- ⑤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 *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아님을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전까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⑥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 다만,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 ⑦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 ④, ⑤, ⑥, ⑦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하여 지급 제외

❖ “⑦” 관련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자 1인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0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임가 구성원 간 권원 인정) 임가 구성원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 있는 임가의 다른 구성원이 분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불필요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 인정 관련

임업인 B는 배우자인 A(경영주의 임업인)의 임야를 직불금 신청했다. 이 경우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였으므로 직불금 지급이 불가할까?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본인 소유 또는 본인명의 임차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이 있는 산지에 대해서만 직불금 신청이 가능함. 단, 임가 구성원의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 있는 임가의 다른 구성원이 분할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 임업 직불금 지급 가능

붙임1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자 종사 기간/일수 산정 세부 기준

☑ '종사'의 기준은 '임업경영체 등록' + '직전년도(1.1~12.31) 90일 임업 종사'

☑ 90일 이상 종사 인정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와 '수기 영림일지' 병행 인정

□ 종사기간 : 지급대상 산지에서 적법한 권원(소유, 임차 등)을 가지고 직전년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① (기존 수령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단,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1년이상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2.1.1.이전부터 지급대상 산지를 지속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인정)

② (신규 대상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기준 충족

□ 종사일수 :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는 예외 인정 기준 충족)

①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②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③ 스마트폰 미소유자,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자체·지방산림청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 수기 영림일지 서식은 별지 제37호 임산물생산업 서식에 한하여 인정 ('22년 시행지침 별지 제40호 서식 병행 인정)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22. 1. 1. 이전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2. 1. 1. 이전부터 지급 대상산지를 지속적으로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소유권 확인 또는 임차계약서(계약 종료일은 9.30일 이후) 제출 필수

△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연간 90일 경영체 등록 기준(직전년도 '22.10.1. 이전 경영체 등록)

- 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했으므로 인정(농업 '21년 기준 준용)

□ 종사일수 세부 증빙 기준

① 임 내 6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 임 내 활동과 임 외 활동은 같은 날 중복 인정 불가

② 동일한 날짜에 다수 필지에서 임 내 활동을 하였거나 다수의 임 외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③ 모든 대상 필지별 연 10회 이상 임 내 활동 필수(1일 최대 2필지까지 인정)

◆ 주요 임산물생산업 종사 내용

* (임내) 임산물생산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비용, 임차료 청구 등

<직전 1년(연간 90일) 이상 종사 확인(증빙) 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애플리케이션) 활용한 연간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동선 기록(사진+GPS기반) : 1일 인정
- 임산물생산업 기자재 구입 또는 임산물 판매시 영수증 자동스캔 : 1일 인정(중복 불가)
- 경영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상담시 지자체 또는 산림조합 인증 : 1일 인정
- * (IT 취약계층) 초기 앱 설치 대행 및 사용법 안내(읍·면·동, 지방산림청 담당자, 산림조합)

△ 수기 영림일지 작성을 통한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90일 이상 영림일지 작성(영수증, 작업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
- * '23년은 임업인의 사전준비 여건 등 고려 사진 첨부는 권고사항 운영

* '24년 적용 <직전 1년 연간 90일 이상 종사 관련 수기 영림일지 작성 > 기준(안) 안내

- (임내) 공종별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임내 일수의 20%이상 첨부
- (임외) 모든 작성 일에 대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연간 120만 원 판매 실적을 증명해야 함**

* 주업요건 충족 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도 같은 기준 적용

□ 인정 기준

○ (출하 등 납품 시) 다음의 자와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납품·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 ③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
-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직거래 시) 직거래(금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 ① 계좌이체 시 :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거래품목, 거래금액)
- ② 카드거래 시 : 카드결제영수증과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시 택배 영수증으로 같음)
- ③ 기타거래 시 : 판매금액(입금 또는 전자결제 내역), 품목, 거래일, 구매자 인적 사항-연락처를 증명하고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불인정 기준

- ① ‘신청자-신청자 본인’, ‘신청자-신청자 소속 법인’ 판매금액

*** '24년 적용 기준(안) 사전 안내 : (추가) '신청자-신청자 가족' 판매금액 불인정**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붙임3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읍·면의 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구분	용도지역	기초자치단체			
		시의 '동'		자치구의 '동'	
동	도시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생산녹지	녹지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보전녹지
			자연녹지		자연녹지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읍면	전체지역				

**거주지 기준
농촌·도시지역
구분**

농촌지역

도시지역

*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토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참고하여 시스템 검증

붙임4 일시적인 채취행위 중 예외적 지급 기준

☑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일시적인 채취업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생산하는 송이, 수액과 죽순은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을 증명하여 인정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기준

- ①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는 일시적인 채취행위로 지급 제외
- ② 수목부산물류의 경우 파종·식재(접목 포함)·종균접종 행위가 있더라도 지급 제외

□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기준

△ (예외1)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송이산가꾸기사업 등)하는 송이

- 기준 : 송이의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생산

1.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숲가꾸기
2.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3.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4.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 증명서류 : 공문서,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 (예외2) 수목부산물류 중 식재 및 관리를 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

- 기준 : ①조림, 식재 ② 임목 및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임지 관리

- 증명서류 : ①과 ② 모두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함

① 조림, 식재의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조림·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②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붙임5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종균을 접종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 그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는 지급 제외, 다만 송이는 별도 증빙하여 인정받을 경우 지급)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지급대상 제외)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수액 및 죽순은 별도 증빙하여 인정받을 경우 지급)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산물생산업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종류	품목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뜸덩굴, 피칸

붙임6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갖는 자의 판단

☑ 지급대상 산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법 제8조제3항제5호)

1 (자경)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임야대장,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일 경우

* 공유재산일 경우 직불 등록자의 지분만큼의 면적

2 (소유권자가 확실한 경우)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을 통해 그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증명 시 잔여기간이 '23.9.30일 이후인 경우('23.9.30일 이전시 지급 제외)
- 중중소유 산지는 ① 중중 대표가 신청할 경우 중중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중중회의록에 대표에게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② 중중원이나 타인이 신청할 경우 중중(중중대표)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신청인에게 산지의 경작권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

3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 ① 경영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세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② 확인서 ③ 원인관련 증빙자료로 증명

* 사망(상속자 불분명), 행방불명, 소유자 미복구,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다만,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산지는 제외(소송 등 분쟁 여부 확인 곤란하여 해당 사실이 아닌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 작성)

- 해당 필지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증명서”(「지방세법」 제107조제3항)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산지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 “확인서” + “원인 관련 증빙자료” 등 첨부)

* 원인 증빙자료 - 소유자 사망, 외국인 소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의 자료

붙임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산지 임대·분할 등 기준

☐ 역진적 지급단가체제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산지 분할을 엄격히 제한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한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지급대상자로 인정

1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讓受)·임차(賃借) 또는 사용차(使用借)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해당 산지분에 한정)

<지급 제외 예외 조건>

- ① 상속 / ② 직계존비속 증여
- ③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권리의 일부 포함)를 양수·임차·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해당 산지의 권리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양도인등 본인 보유산지는 지급대상에서 포기하기로 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④ 면적직불금 신청자로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2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해당 산지분에 한정)

<지급 제외 예외 조건>

- ① 상속 / ② 직계존비속 증여
- ③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입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 포함)를 양도,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해당 산지를 취득한 자 중 승계할 1인을 특정하고, 양도인등 본인 보유산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산림청에 신고한 경우
- ④ 법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 2년간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 기간 2년 이상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스마트·수기 영림일지로서 연간 종사일수가 90일 이상 증명,
- ②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증명

붙임8 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수령

☑ 동일 경영지(구역)는 한 가지 직불금만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경영지(구역)의 경우 농업 기본형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한도 내 중복수령 가능

- (동일 경영지) 동일한 경영지에 직불금 중복지급은 과도한 지원으로 농업 기본형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각각 중복수령 금지
 - 단, 친환경직불금, 경관직불금 등 농업 분야 선택형 직불금은 농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임업 분야도 중복수령 가능
 - 복합경영의 경우 동일 경영지에 두 직불금 수령요건 충족 시 한 가지 선택

○ (다른 경영지) 직불금 간 중복수령 가능 여부 등

-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은 자*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받을 수 없음(소농이 대규모 임업을, 소규모임가가 대규모 농업을 하는 사례 방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불금을 받은 자를 말함

- 면적직불금은 농업과 임업 모두 수령 가능하나, 유사 사업이므로 과다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상한*(농업+임업 임업인 30ha, 법인은 50ha까지)을 둠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과 당해 연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면적의 합을 말함

- 임업인당 지급상한은 임산물생산업 30ha + 육림업 30ha까지 가능
- 임가 내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임가당 지급상한은 임산물 생산업 60ha + 육림업 60ha까지 가능

구 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소임가	면적	
농업 기본 직불금	직전 연도에 소농 수령 시	X 지급받은 자 및 농가 구성원 모두	X 지급받은 자 및 농가 구성원 모두	○
	직전 연도에 면적 수령 시	X 지급받은 자 및 농가 구성원 모두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임업 직불금	소임가 수령 시	○	X	X 산지면적 1.55ha 미만 불 충족
	면적 수령 시	X	○	○
	육림업 수령 시	X 산지면적 1.55ha 미만 불 충족	○	○

붙임9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증명

- ☑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음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가. 소규모임가 구성원

-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임가를 말함. 다만, 가구 구성원이 아래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해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 ②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 ③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 이 3년 이내인 자

*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외

※ 소규모임가직불금의 지급 단위는 ‘임업인’이 아닌 ‘임가’ 기준으로, 한 임가에서 여러 건의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한 임가가 경영체를 분리하여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여도 임가 당 1건 지급함

나. 지급요건 및 단가

- 아래의 ①부터 ⑦까지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의 구성원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에게 소규모임가 직불금 120만원(가구당) 지급

* 법인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면적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은 소규모임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① (임지요건)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합이 0.5ha인 이하

- ② (산지소유) 임가 모든 구성원(비농업인 포함)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지급대상이 아닌 산지 포함, 타인에게 임대해준 산지 포함)이 1.55ha 미만
- * 공유 필지, 종중소유 산지 등의 경우 해당 소유자의 지분 면적은 임업인 별도 증명
- ③ (영농종사)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 3년간 종사 증명 ;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3년 이상이거나, 스마트·수기 영림 일지(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농기계 임대계약서·일용직 고용·농자재 구매·수확한 농산물 판매 등을 서류 등으로 영농종사를 증명하고 등 조사·심사·등록기관이 인정할 경우(*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 ④ (농촌 거주기간) 임가 내 모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읍·면·동 직불담당자 주관 농촌거주기간 연속 3년 유지 여부 확인
-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촌에 있어야 인정. 다만, 요양병원 입원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질병의 치료·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시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3개월 이내) 그 기간에 한해서는 농촌에 거주한 것으로 봄
- ⑤ (소득검증)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과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기준을 충족
-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2,000만 원 미만인 자
-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500만 원 미만인 자
- ⑥ (시설재배업 소득)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 농업의 시설재배업을 포함한 금액
- ⑦ 농업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자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급대상자는 소규모임가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또는 지급 가능

①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②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면적직불금 지급액의 합계가 소규모 임가직불금 지급 금액(120만 원)보다 낮은 경우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연도 직전 계속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한 경우

-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2천만 원 미만이고,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 합이 4천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면적직불금 지급요건에는 충족될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 근거 : 「임업직불제법」제9조제2항

붙임10 소규모임가 직불 신청·접수 유의 사항

☑ 소규모임가 직불 신청 임가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의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신청 임업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소규모임가 범위에 해당하는 자만** 확인할 것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 직전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규모임가 직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① (1단계)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읍·면·동 담당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은 모두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기재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같으나 세대주가 분리하여 거주(예 : 1층 부모님, 2층 결혼한 자녀의 가족)하고 있는 경우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

② (2단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있지 아니한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은 모두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 구성원**에 기재

* 분리세대 중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는 우선 ④-2에 먼저 추가

③ (3단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 중 **▽결혼한 자녀 또는 ▽결혼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④ (4단계) 소규모임가 직불 등록자 대상 가족관계 인적정보 검증

* 지급대상 확정 직전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⑤ (5단계) 소규모임가 직불 등록 후 임가 단위 산지소유면적, 농업외 종합소득 등 기타 자격요건 검증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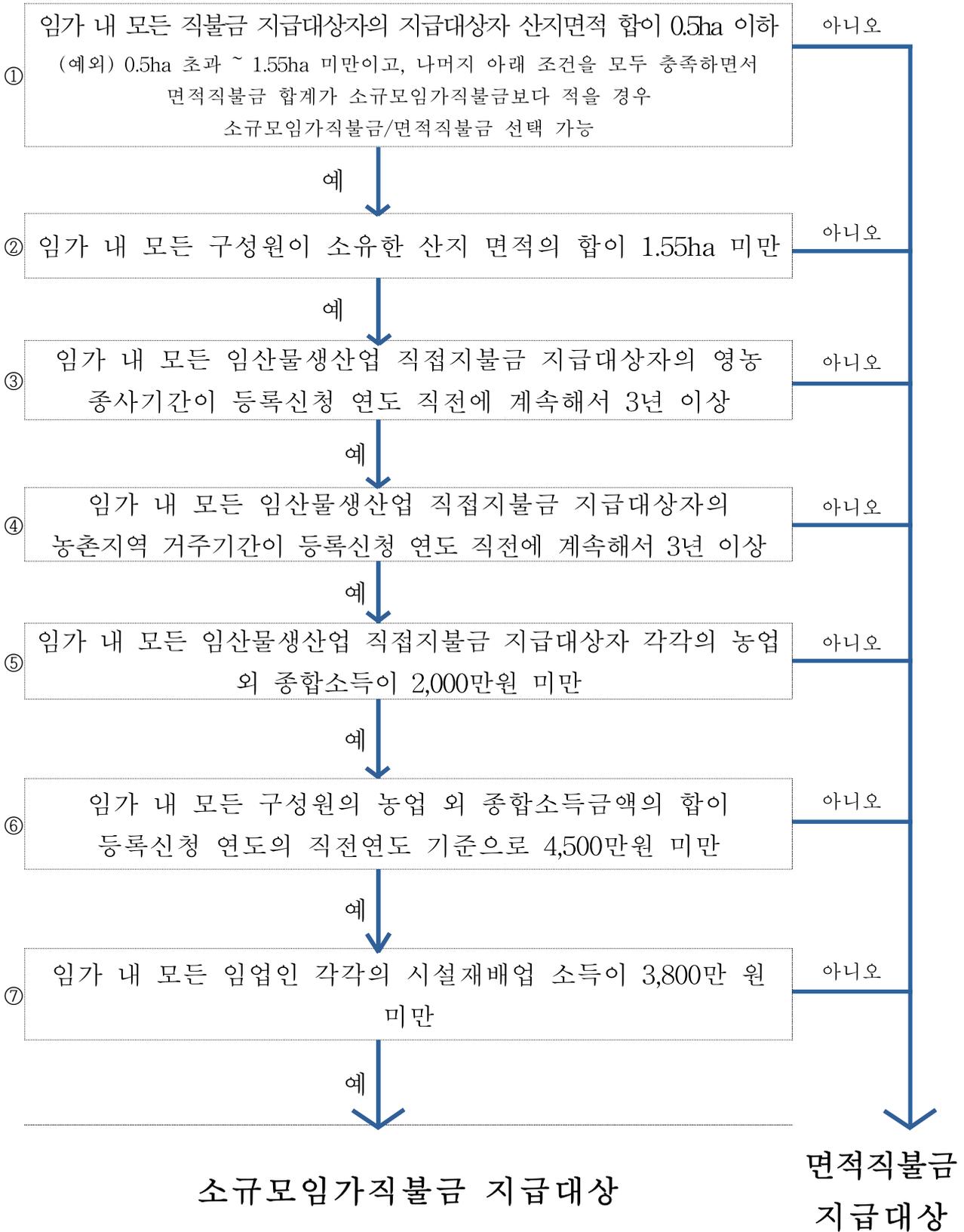
☛ 소규모임가직불금을 신청하는 임가 구성원은 모두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에 모두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면적직불 전환

☛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을 **거부한 경우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서 제외**

☛ 가족관계 인적정보를 **고의로 미등록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제한 처분**

붙임11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지급대상 결정 절차



붙임12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함)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주업기준 적용

□ 임산물생산업을 경영산지 면적 기준

- (임업인)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3ha이상의 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임업인
- (농업법인) 농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10ha 이상의 산지(그 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농업법인

□ 임산물 판매액 기준 : 연간 1천600만원 이상 임업인, 연간 8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증명 기준** :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시행지침 13페이지 사례1 참조)

□ 경영투입비용 기준 :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연간 4천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증명 기준** : 신청연도 또는 신청 직전 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시행지침 13페이지 사례1 참조)
-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해 경영 투입된 다음과 같은 용도의 비용을 말함
 - 농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붙임13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임업인등 자격요건 검증

□ 지급대상 산지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서류
① 토지대장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등록증 교부전, 지급대상자 확정전) 토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의 정보가 다른 내용 확인 * 말소여부, 공부상지목, 공부상면적, 토지소유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야대장,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산지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된 산지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22.7. 전국 확대 예정)에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 산지 관리 자료) 및 지자체 보유 인허가 자료
③ 산지일시사용허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된 산지는 부적합 * 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작업로, 운반로 한정)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22.7. 전국 확대 예정)에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새올시스템 산지 관리 자료) 및 지자체 보유 인허가 자료
④ 농업직불금 등록 신청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농림부 기본형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⑤ 육림업직불금 등록 신청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육림업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⑥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자가 소유한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부적합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⑦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산지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개발지역 산지는 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확인) 지자체 서류 확인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하여 인정된 산지 여부 점검 및 반영
⑧ 휴경 중인 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확인서(휴경 확인) + 현장조사

□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검증주체) 및 방법	검증서류
①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종사요건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연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여부 (2) 연간 판매금액 충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년도 1년 이상 종사 여부 확인 * 연 90일 종사: 영림일지 또는 영농자재 구매, 교육 이수, 임산물 생산 판매 실적, 계약재배 확인서 등 확인 ▶임산물 연간 판매액 증빙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인 120만 원, 법인 4,500만 원 이상
② 상속·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속·증여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증여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의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③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등록신청자가 농촌(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한정)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확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지를 기준으로 임지 위치, 면적 등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농업경영체 서류(면적: 임업인 3ha, 법인 10ha 이상), 임산물 판매영수증(개인 1,600만 원, 법인 8,000만 원), 경영투입비용(개인 800만 원, 법인 4,000만 원) 증빙서류
④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중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 임대·분할 등을 한 경우는 등록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⑤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지급대상자 확정전) 환수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취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에서 이관된 경영체의 처분사항 농림부(시스템) 확인 필요
⑥ 지급대상 산지 면적합이 0.1ha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지급대상 산지 면적 충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확인서(실경영면적 확인) +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산지 면적: 임업인 0.1ha, 법인 5ha 이상
⑦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국세청 소득검증자료를 반영하여(대량검증부적격) 취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에서는 소득검증결과 등록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⑧ 거짓이나 부정한 산지분할 의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사항) 직전 최근 연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면적이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산지면적보다 큰 경우 (과거 면적>신청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변동사항(이력관리), 임야대장, 상속, 증여 및 본인지급제외신고서
⑨ 파종·식재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파종, 식재, 관리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이: 송이산가꾸기 실행 여부 * 죽순: 식재 증명 필요(조사위원회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인 채취행위 검토를 위한 종자구매확인서, 식재인건비, 작업전후사진 등 명확한 입증서류
⑩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해당 필지 대상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신청자 납부), 공증된 회의록 등

□ 소규모임가 직불금 자격요건

*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면적직불금으로 전환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 실시할 수 있음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서류
①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 임가의 세대 구성원 자격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사항)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임가 직불금 신청한 경우 지자체 확인 ▶(지급대상자 확정전) 임가 구성원이 각각 소임가 직불금 등록한 경우 모두 면적 직불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임가 구성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연속하여 3년 이상 농촌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농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등본
③ 연속해서 3년 이상 영농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직전 연도 3년 연속 영농 종사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영림일지, 농산물·임산물판매실적 및 영농자재구매 등 증명자료
④ 지급대상 임업인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임가 단위 지급대상자 각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여부 검증 ▶(지급대상자 확정전)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 직불금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 신고서류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⑤ 임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 종합소득합 4,5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임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 4,500만원 미만 여부 검증 ▶(지급대상자 확정전)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신고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⑥ 임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한 산지면적합이 1.55ha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면적합이 1.55ha 이상 여부 * 임가내 구성원 각각 소유산지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산지 정보 * 공동소유, 종중산지 등으로 면적이 불일치할 경우 토지대장 확인 후 수정
⑦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 실시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 시설재배현황을 참고하여 초과대상자 현장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시설재배현황 조사결과 참고, 초과시 항공사진 또는 현장 조사 실시)

② 육림업 직불금

가. 지급대상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실적은 본인의 실적으로 인정)이 있는 3ha이상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근거

나. 지급제외 산지

① 국유림, 공유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산림의 구분)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 국·공유림을 대부 또는 임차한 경우도 제외

②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③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면적)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단, 아래의 경우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더라도 지급 대상임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 또는 제7호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에 예외 인정

④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 임업경영체와 농업경영체 등록 중복 불가

⑤ 등록 신청하는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

⑥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로서의 제한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으로 함 → 직불제 시스템(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 구축) 자료 제공

⑦ 아래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산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산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산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산지

⑧ 휴경 중인 산지 : 벌채 후 조림하지 않은 산지

⑨ 다른 법률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지역

▶ 지급대상 산지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1) 동일 면적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을 하면서 동시에 하층부에 임산물생산을 하는 임업인 A는 육림업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 동일한 산지(면적 기준임)에 두 가지 직불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으며, 임업경영체 등록 시 육림업으로 등록한 산지는 육림업으로만 신청 가능(임산물생산업직불금으로 변경 및 신청 불가)

사례2) 임업인 B는 2022년 3월 소나무 임지를 벌채 후, 2023년 4월 직불금 신청 시기까지 재조림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임지일까?

→ 벌채 후 재조림 미이행시 휴경 중인 산지로 판단하며, 직불금 지급 불가함

◆ 육림업직불금 지급단가(변경 시 별도 고시)

△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 적용

구간	지급단가
1구간(3ha 이상~10ha 이하)	62만원/ha
2구간(10ha 초과~20ha 이하)	47만원/ha
3구간(20ha 초과)	32만원/ha

▶ 지급 사례 알아보기

사례1) 육림업 면적별 지급금액

- 육림업 10만㎡ ⇒ 620만 원 (62만 원x10만㎡)
- 육림업 20만㎡ ⇒ 1,090만 원 (62만 원x10만㎡)+(47만 원x10만㎡)
- 육림업 30만㎡ ⇒ 1,410만 원 (62만 원x10만㎡)+(47만 원x10만㎡)+(32만 원x10만㎡)

다. 지급대상자

- (대상)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종사)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 신청자의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확인(직전년도 1.1~12.31)
 - △ 직전년도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영림일지 등)
- (산지면적)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를 소유(지급대상 산지 입목 등기)하고 실적 충족
 - 임업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 농업법인 :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10ha 이상인 산지
- (농촌거주) 농촌(산지가 소재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에 주소를 둔 자,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함)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가 경영하는 산지의 면적,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

* 주업기준

임업인	농업법인
① (거주제한) 동일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ha 이상 * 낙엽송 30ha를 30년간 경영 시 연 670만 원 수입 가능	(주소제한) 동일시도(연접 시군 포함) 산지 300ha 이상
② (전국) 다음 요건 모두 만족 ㉠ 주된 산지에서 100ha 이상 경영 ㉡ 해당 산지에서의 종사일수 90일 이상 ㉢ 목재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	
* ㉡은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 준용	* 「임업진흥법」 상 법인독립가 기준

라. 지급제외자

①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
→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ha** 미만인 자

③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자(주업기준 충족 시 예외로 함)

④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 또는 임목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다만, 상속,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상세내용은 붙임7 참조)

* ③, ④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산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④” 관련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외에 대한 예외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1인일 것

나. 양도인등은 지급대상 산지(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 가목에 따른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제외하 나머지 지급대상 산지에 대한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수령을 포기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지 제2호 서식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을 것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법 제12조에 따른 면적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지급대상 임업인 판단 사례 알아보기

사례) 임업인 A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지가 산지 소재지와 연결하지 않은 곳이다. 이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할까?

→ 농촌에 거주하지만,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결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업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지급 사례 알아보기

* 임산물생산업 1,000.03m², 육림업 201,000.51m² 경영 임업인의 직불금액

(단위: 원)

구분	직불금액**	산출금액*	합계	1구간	2구간	3구간
합계	11,026,010	11,026,019	11,026,019.14	6,294,002.82	4,700,000.00	32,016.32
임산물 생산업	94,000	94,003	94,002.82 (1,000.03m ²)	94,002.82 (1,000.03m ²)		
육림업	10,932,010	10,932,016	10,932,016.32 (201,000.51m ²)	6,200,000.00 (100,000.00m ²)	4,700,000.00 (100,000.00m ²)	32,016.32 (1,000.51m ²)

* 산출금액: 합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한다.

** 지급금액: 산출금액에서 십 원 미만은 버린다.

붙임14 육림업 지급대상자 종사 기간/일수

☑ '종사'의 기준은 '임업경영체 등록' + '직전년도(1.1~12.31) 90일 임업 종사'

☑ 90일 이상 종사 인정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와 '수기 영림일지' 병행 인정

□ 종사기간 :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직전년도 1년 이상 육림업에 종사

- ① (기존 수령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단,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1년이상 지속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2.1.1.이전부터 지급대상 산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
- ② (신규 대상자) '22.1.1. 이전부터 임업경영체 등록되어, 등록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또는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기준 충족

□ 종사일수 :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종사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는 예외 인정 기준 충족)

- ①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 ②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 ③ 스마트폰 미소유자,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경우(지자체·지방산림청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 수기 영림일지 서식은 별지 제37호 육림업 서식에 한하여 인정
('22년 시행지침 별지 제40호 서식 병행 인정)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 예외 인정>

△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의 1년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22. 1. 1. 이전에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22. 1. 1. 이전부터 지급대상 산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정(소유권 확인 필수)

△ '23년 신규 직불금 대상자의 90일 이상 종사 인정 기준

→ 연간 90일 경영체 등록 기준(직전년도 '22.10.1. 이전 경영체 등록)

- 전년도 12.31까지 임업경영체 90일 이상 등록 유지했으므로 인정(농업 '21년 기준 준용)

□ 종사일수 세부 기준

①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45일까지 인정

* 임 내 활동과 임 외 활동은 같은 날 중복 인정 불가

② 육림업을 주업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 임내 90일 이상

③ 동일한 날짜에 다수 필지에서 임 내 활동을 하였거나 다수의 임 외 활동을 하였더라도 1일로 인정

◆ 주요 육림업 종사 내용

* (임내) 육림업 종사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외) 육림업기자재 구입, 목재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시설유지관리비 등

<직전 1년(연간 90일) 이상 종사 확인(증빙) 방법>

△ 스마트 영림일지(애플리케이션) 활용한 연간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동선 기록(사진+GPS기반) : 1일 인정

- 육림업 기자재 구입 영수증 등 자동스캔 : 1일 인정(중복 불가)

- 경영계획 수립 등 계획수립·상담시 지자체 또는 산림조합 인증 : 1일 인정

* (IT 취약계층) 초기 앱 설치 대행 및 사용법 안내(읍·면·동, 지방산림청 담당자, 산림조합)

△ 수기 영림일지 작성을 통한 90일 이상 종사 인정 방법

- 90일 이상 영림일지 작성(영수증, 작업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권장)

* '23년은 임업인의 사전준비 여건 등 고려 사진 첨부는 권고사항 운영

* '24년 적용 <직전 1년 연간 90일 이상 종사 관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기준(안) 안내

- (임내) 공종별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을 임내 일수의 20%이상 첨부

- (임외) 모든 작성 일에 대하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 첨부

붙임15 육림업 지급대상자 주업기준

☑ 육림업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1), (기준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함

□ (기준1)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임업인)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30ha이상의 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결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
-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와 같은 시·도에 소재하는 300ha 이상의 산지(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과 연결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

□ (기준2) 다음 ① + (② 또는 ③) 모두 충족

- ① (임업인) 임업인의 주소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 포함)·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에 소재하는 100ha이상의 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결한 다른 시·군의 산지를 포함)를 경영하는 임업인
- ② 연간 목재 판매금액 1천600만원 이상인 임업인
- ③ 연간 경영투입비용 연간 800만원 이상인 임업인
-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영투입비용) 지급대상 산지에 육림업을 위해 경영 투입된 다음과 같은 용도의 비용을 말함
 - 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등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에 투입된 비용
 -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 산지에서 육림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는 비용과 목재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붙임16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 실적 인정 기준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산지는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임

□ 관련 규정 : 시행규칙 제10조(육림업 직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세부사항) 제1항

□ 육림 실적 기준

○ (인정 기간) 2013. 1. 1. ~ 2022. 12. 31.(기간 내 완료된 실적만 인정)

○ (대상 사업)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의한 아래의 사업

- 조림(식재조림, 파종조림, 용기묘조림), 천연림갱신(천연하종갱신, 음싹갱신),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 개량, 음싹갱신 보육

○ (인정 기준)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법 제13조제1항)로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하여야 함

① (산주 직접)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 실행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 : 신고수리증과 전·중·후 사진첩 제출(지자체장이 수리한 실적만 인정)

* 대상사업: 숲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 「산림자원법」 13조제5항(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준수

- 실행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계약서(사업비 지급내역), 설계도·서, 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사업 실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조사·심사·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대상사업 :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② (보조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실행한 실적

☞ 선도산림경영단지·대리경영 등 산주가 경영 주체가 아닌 실행 실적은 불인정

붙임17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에 따른 ‘공익용산지’는 지급대상 제외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붙임18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임업인등 자격요건 검증

1 지급대상 산지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서류
① 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 검증	▶(사전, 실시간) 임야대장과 농업경영체 산지의 정보, 경영계획 인가 내용 확인	임야대장,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자료
② 산지전용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③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전, 실시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용 등이 확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등록된 산지전용 자료
④ 부정수급 등으로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사전, 실시간)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산지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부적합 안내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⑤ 지급대상 산지 휴경면적 제외	▶(사전, 실시간) 벌채 실행 여부 확인 (벌채시 재조림 실행여부 확인)	임업경영체 확인서(미조림지 여부 확인) + 현장조사
⑥ 개발지역 (주·상·공,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사전, 실시간) 개발지역 자료 확인	지자체 개발지역 관련 자료 확인

2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고려대상	검증단계 및 방법	검증서류
① 등록신청자	▶(실시간) 종사요건 검증(직전 1년간 임업경영체 등록 90일 이상 여부)	임업경영체 서류(직전 연도 등록 여부 등)
② 상속·증여	▶(실시간)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속·증여 여부 확인	상속·증여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③ 육림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실시간) 등록신청자가 농촌(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한정) 외 지역 거주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 임업경영체 확인서(면적 확인), 목재판매액 또는 경영투입비
④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 농림사업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실시간) 통합포털("임업in") 정보 확인	임업경영체
⑤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실시간) 통합포털("임업in") 정보 확인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 정보
⑥ 지급대상 산지 면적합이 3ha 미만	▶(실시간) 신청자 본인 육림실적 실적 3ha이상 여부 확인	임업경영체 확인서(육림 실적 확인)
⑦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사후) 통합포털("임업in") 정보 확인	소득세신고 경정신고 등을 통해 소득정보가 수정된 경우 입증서류 확인 후 수정
⑧ 산지의 의도적인 분할 확인	▶(확인사항) 직전 최근 연도 임업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면적이 등록신청연도 등록신청 산지면적보다 큰 경우 (과거 면적 > 신청 면적)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일부 분할 등으로 취득했는지 여부 검토(경영체 정보) 및 양도자가 본인의 남은 산지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신고한 법정신고서

Ⅲ. 준수사항 등

- ☑ 임업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지급
-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최대 40%)

① 준수사항 종류

☐ 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육림업)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①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과 산지 정화 활동 △ 이웃한 토지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경계 표시·관리 	지방산림청	
②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임업직불제 운영 및 직불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임업직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확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기관 지정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기관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제출 *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지자체 전문교육기관	
③ 그 밖의 준수사항	③-1. 비료의 보관 준수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	지자체
	③-2.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지자체
	③-3. 하천의 사용 관리 준수	△ 「하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하천수 이용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지자체

<p>㉓-4. 지하수 개발 이용 준수</p>	<p>△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p>	<p>지자체</p>
<p>㉓-5.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p>	<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 살포기준을 지킬 것</p>	<p>지자체</p>
<p>㉓-6.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금지</p>	<p>△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p>	<p>지자체</p>
<p>㉓-7.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p>	<p>△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산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p>	<p>지자체</p>
<p>㉓-8.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의 변경등록</p>	<p>△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p> <p>* 임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p>	<p>지방산림청</p>
<p>㉓-9.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p>	<p>△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 등에 보관하여 산지등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할 것</p> <p>△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않을 것</p> <p>△ 시·군·구 : 마을에서 모아둔 폐기물을 마을순회 회수차 등을 운영하여 수거</p> <p>*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서 소각, 투기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홍보 강화</p>	<p>지방산림청</p>
<p>㉓-10.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 기록 작성 보관</p>	<p>△ 영림활동과 관련된 (1) 종자(종묘)·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 굴삭기 등 기기 작업 일자 (3) 수확·판매 등 기타 영림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기록하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간 보관할 것</p> <p>△ 지방산림청 등 관계기관에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적합 발생시 농약·비료 구매·사용기록을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할 시 협조할 것</p>	<p>지방산림청</p>
<p>㉓-11.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할 것</p>	<p>△ 농업직불금에서 인정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적용함. 또한, 임업 관련 협회 및 단체(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모임·행사에 참석함을 증명할 것</p> <p>▶ 다음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p> <p>가. 지역 또는 마을공동체 주변 영농·생활폐기물의 공동 수거·처리</p> <p>나. 마을공동 공간의 청소·정비</p> <p>다. 지역 경관개선</p> <p>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계 교란 생물의 제거</p>	<p>지방산림청</p>

□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①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p>△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할 것</p> <p>*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잔류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p> <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할 것</p>	지방산림청 지자체
② 임산물 생산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 기준 적합	<p>△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p> <p>▶ 임산물 생산단계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지방산림청
③ 임산물 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p>△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량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p> <p>▶ 임산물 유통·판매단계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지자체
④ 출하 제한 및 임산물 폐기 등 처리 조치 준수	<p>△ 출하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제2항) 및 임산물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처리조치 준수</p>	지방산림청

□ 육림업 준수사항

항목	준수사항	관리기관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p>△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p> <p>△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p>	지자체
② 입목의 유지	<p>△ 적정 그루수 유지</p> <p>△ 조림 후 2년 이내 활착률 80% 이상, 그 후 60% 이상(8cm 미만), 경급별 그루수의 60% 이상 의무이행으로 인정</p>	지방산림청

② 준수사항 이행점검

항목	준수사항
기관	△ 지방산림청/지자체가 주관이며 전문교육기관 등이 관련 업무 지원
대상기간	△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서류 수거일 등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점검대상	△ 임업직불금 등록자 표본조사 ○ 지방산림청 : 직불 등록자 중 점검대상 비율에 따른 무작위 선정 ○ 지자체 : 관련 법령 위반자 중 직불 등록자
점검방법	△ 현지조사 원칙으로 필요시 서류조사 병행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임업직불금 전부를 미지급

③ 미준수 감액 기준

각 준수사항별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임업직불금의 10%씩 감액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임업인등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즉시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1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임업in”) 시스템에 입력 완료

-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임업직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함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 다만, 당해연도(전년도 10.1 ~ 등록연도 9.30일 사이)에 같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적용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가중, 감경기준) 시·군·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다만, 반복위반한 경우 감경할 수 없음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반복위반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1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2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 (40%)
반복위반 감경, 가중	산지의 형상 위반 (5%)	산지의 형상 위반 (30%)	-	산지의 형상 위반 (10%)
감액합계	15%	50%	40%	50%

-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 대상자에게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붙임19 등록 및 준수사항 중 지자체 행정조사 점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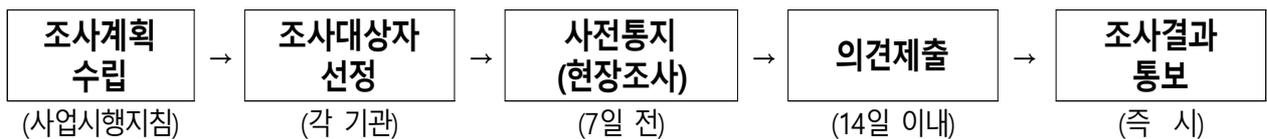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p>◇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지자체(식약처) 에서 농산물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p> <p>○ 조사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식품공전에 따른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산림청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조치 - 지자체는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수거·폐기하고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산물이 부적합인 경우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p>○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임업직불금 감액 대상 제외</p>		
	▶「농약관리법」 제23조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임산물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식품위생법」 제7조	▶(부적합 임산물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품질관리법」 제63조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농안법」 제38조의2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⑤ 비료의 적정	▶「비료관리법」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기술센터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보관·관리	제19조의2제1항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⑥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허가 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가축분뇨·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 재배금지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붙임20 임업직불금 관련 행정조사 기본사항

- ☑ **임업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조사**(법 제20조, 제29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
-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 **(기본원칙)** ▽ 조사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남용금지), ▽ 조사대상자를 선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비밀누설 금지, ▽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 **(조사시기)** 등록사항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되 아래의 사항인 경우 수시조사 가능
-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 **(주요절차)**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



- **(계획수립)** 산림청(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금 등록자에 대한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조사 등에 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마련**
- * 다만,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농 자격요건 특별점검,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사 가능
- **(사전통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7일 이내 사전통지**하고 입회요구 등(법 제20조제5항)
- **(의견제출)** 조사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 *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
- **(조사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자격요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in”)**을 통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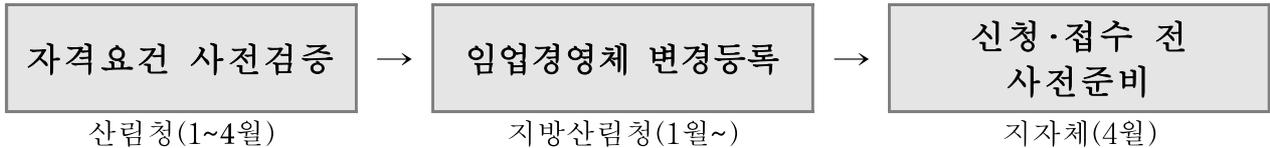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정방법
육림업	조림·숲가꾸기	나무심기 / 풀베기·덩굴제거 / 가지치기 / 어린나무가꾸기·숙아베기	동선기록, 사진
	산림관리	울타리설치·관리 / 임도·작업로 관리	동선기록, 사진, 지출증명서, 납부영수증 등
	산림보호	병해충 예찰 / 산불감시 / 산사태감시 / 자연재해 예방·복구	동선기록, 사진, 확인서 등
	임목생산	선목·입목조사 / 임목매각(현장인도) / 반출확인	동선기록, 사진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종자종묘 구입 / 기타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임대·수리 등	사진,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
	교육·컨설팅	산림조합 및 지자체 상담, 법인사무소 산림경영계획 작성 상담 등 임업 관련 교육 이수(산림청, 전문교육기관 등) *교육 4~8시간/1일 인정 - 교육명, 교육일자,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재할 것	①산림조합·지방산림청·지자체: QR코드 입장 후 관리자 승인 ②기타법인: 업체명, 연락처, 상담자이름
임산물 재배업	재배·관리	파종·식재 / 관수·비료·농약주기 / 풀베기·풀뽑기 / 재배지관리(가지치기, 덩굴제거, 수형잡기, 병충해·냉해피해방지 등)	동선기록, 사진
	시설관리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관리 / 울타리 설치·관리 / 작업로 관리 / 시설유지관리비용(전기료, 수도세 납부, 임산물보험료 지급 등)	동선기록, 사진, 지출증명서, 납부영수증 등
	산림보호	병해충 예찰 / 산불감시 / 산사태감시활동 / 자연재해 예방·복구	동선기록, 사진, 확인서 등
	임산물수확	임산물수확	동선기록, 사진
	임산물판매	임산물 판매 / 임산물 홍보	사진, 홍보물 증빙, 지출증명서 등
	기자재 구입 등 사전준비	종자종묘 구입 / 기타 기자재 구입 / 기자재 임대·수리 등	사진,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
	교육·컨설팅	산림조합 및 지자체 상담, 법인사무소 산림경영계획 작성 상담 등 임업 관련 교육 이수(산림청, 전문교육기관 등) *교육 4~8시간/1일 인정 - 교육명, 교육일자, 인정시간, 교육기관 기재할 것	①산림조합·지방산림청·지자체: QR코드 입장 후 관리자 승인 ②기타법인: 업체명, 연락처, 상담자이름

※ : 임내작업 / : 임외작업

[2] 사업추진체계

I.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

- ☑ 임업경영체에 따라 등록 산지, 농업법인, 소규모임가, 부정수급자 등 관련 행정정보 활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격요건 검증(1~5월)
- ☑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를 활용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를 사전 선정(5월)



① (사전검증) 임업직불 지급대상 산지·임업인·소농 자격요건 사전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관 행정정보 수집 및 사전분석(4월)

▶ 임업직불금 등록대상 사전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게 검증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 (산지) 임업경영정보, 임야대장, 산지전용, 국토이용계획시스템, 부정수급자 소유산지 등
 - * 산림청은 전용, 타용도 사용허가 등 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지자체(서울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관련 정보 수집(1월, 9월)
- △ (임업인) 산지 소유 및 임차 대상, 소득, 부정수급자*, 지급대상 산지 1천㎡ 미만, 신규대상자 사전검증 등
 - * 종전의 농관원 직불금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환수여부) 등에 관하여 행정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임업경영정보 상호 검증 추진(1월, 9월)
- △ (소규모임가) 지급대상 산지 0.1~0.5ha(역전구간 포함), 경영체 등록기간 등

② (경영체 등록·변경) 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신고’ 준수 사항 이행점검 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서와 안내자료를 임업인 배부·홍보 추진(지방산림청, 1월~)

▶ 임업직불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경영정보의 변경이 확인된 경우 지방산림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정보를 수정·변경 요청 → 지방산림청은 해당 임업인에게 경영정보 수정을 안내하고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농업경영체육성법」 제6조, 제6조의2)

* (말소) 임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주기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정정) 임업인의 주소, 연락처, 법인의 소재지 및 연락처, 재배품목 및 품목별 면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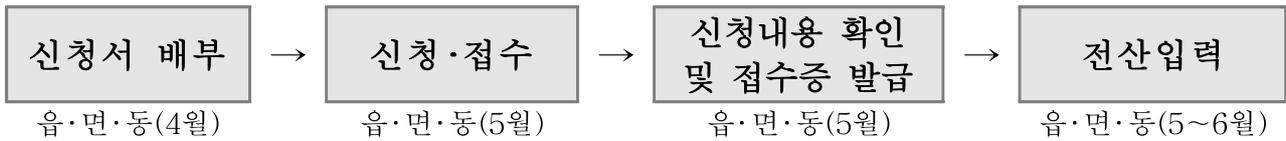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할 것

- △ (폐경 반영) 전년도 이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점검결과, 산지전용 데이터 등을 반영하여 임업경영체 산지정보 현행화
- △ (이행점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주기적 현행화를 위하여 준수사항 이행 점검계획 수립, 임업인 대상 홍보계획 등 수립·추진(별도 사업시행지침 수립)
 - * ▽ 임업인 또는 법인의 성명(명칭), 주소, ▽ 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시설현황
- ③ (신청·접수 전 사전준비)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를 교육하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업인 대상 홍보 추진
 - △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 및 홍보계획 수립·추진(산림청·지방산림청, 시도, 시·군·구 등, 5월)
 - (지방산림청) 은 先 경영체등록정보 변경, 後 공익직불금 신청 체계 정착을 위한 계획 수립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 동장·이장단 월례조회·교육, 홍보지·지방지·현수막·홈페이지 배너 등
 - △ 지방산림청, 지자체 현장조사원 및 보조원 채용 등 사전준비(지방산림청, 시·군·구, 2월)
 - * 사무소, 읍·면·동 여건(신청·접수 건수, 소규모임가직불 대상 등)을 고려하여 인력 배분
 - △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을 통해 등록신청 공고 (관계기관, 4월)

II.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등

☑ 임업직불 사전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서 배부, 신청·접수, 전산등록 등 추진

* 사전검증 결과 임업인이 보완해야 하는 서류는 미리 지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① (신청접수계획 수립) 시·군·구(신청접수 대상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 임업직불담당자는 관할지역 신청접수 계획(별지 제1호 서식)을 수립하고 (시·군·구) → 시·도 → 산림청에 제출(4월)

△ 읍·면·동 여건에 맞추어 이장 등을 통하여 임업직불 신청접수 대리를 요청하는 경우 사전에 신청서 배포, 작성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아울러 시·군·구 임업직불금 업무담당자는 읍·면·동 담당자 대상 임업직불금 주요 자격요건 및 전산 보조원 전산입력 사항 등을 숙지하고 원활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조정

② (신청서 배부)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파악한 임업직불 사전검증 정보를 기반으로 문자서비스 등 활용하여 해당 임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배부(읍·면·동 → 이장 또는 임업인, 4월)

△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소규모임가(임가 단위) 및 면적·육림업(임업인) 대상자 각각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인쇄 및 배부(읍·면·동, 4월)

- 임업종사기간, 농촌거주 기간, 산지면적(0.1~0.5ha) 등 기본적인 소규모임가 자격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임가 단위로 소임가 직불신청서 배부

- 신청서 배부와 동시에 공익직불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및 준수사항 교육자료 등을 동봉

③ (임업인 사전준비)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하여 임가·임업인에게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관련 준비서류를 안내(신청서 배부 시 안내문 발송)

- ▶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는 임업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임업인 등을 감안하여 이장·통장 등 협조 가능. 다만, 소규모임가직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 신청
- ▶ 주민등록등본, 임야대장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사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공증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임업인 주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5월~등록 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실경영 산지 누락, 신청인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관리소)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 지방산림청 방문, 전화, 인터넷(www.foco.go.kr), 팩스, 문자 등

- (산지) 임차 임업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9.30일 이전 종료, 신청자와 임업경영체 등록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 준비

* (사유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해당 필지에 대한 신청인의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 + 확인서 등 (중증임야 등) 중증회의록 등

- (소규모임가) 소규모임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전준비

* 소규모임가직불 신청 임업인은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모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혼인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서명

*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 할 경우 소규모임가직불 자격요건 검증 불가로 면적직불 지급

△ 임업인은 매년 2월 이후 신청산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에 임업공익직불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특히 관외경영자(산지소재지 기준, 타 시·군·구에 거주)는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

△ 신청서를 배부받지 아니한 임업인은 산지가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접수하는 것을 원칙

△ 읍·면·동 임업직불담당자는 임업인이 원활하게 신청, 서류 준비, 자격요건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

④ (신청서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담당자는 임업직불 사전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누락, 행정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접수, 이관, 전산입력, 자격요건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숙지

※ 특히 행정과실로 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접수·관리 계획을 수립

▶ 신청대리인(이장, 통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받은 신청서 수량을 확인

▶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즉시 접수·입력하고 접수증 현장 발급

▶ 임업직불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미접수 및 접수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접수 및 전산입력) 읍·면·동 직불담당자는 임업인 또는 신청대리인(이장·면장)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등록하고 접수증 발급

- (공통)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는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한 후 산지소재지 별도로 임업직불 신청 관련 서류를 이송

* 지급대상 산지의 정보가 입력되면 산지소재지 기준 산지가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정

▶ 기간 : (접수 읍·면·동 ↔ 관할지 읍·면·동) 10일 이내

▶ 방법 : 직불시스템 내의 지자체간 이송시스템을 활용(PDF를 활용한 전송)

* 다만, 업무 여건에 따라 우편, 방문, 팩스 등도 가능. 이 경우 기관 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원본보관 : 최초 접수기관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 원본 보관

- (소규모임가접수) 사전에 소규모임가직불 신청서가 배부된 임가 내 경영주가 소규모임가직불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 정보 입력

※ 세대원 정보의 입력이 누락된 경우 기본적으로 면적직불만 지급 가능

▶ (1단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입력

▶ (2단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1) 배우자, (2) 미혼인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등 입력

* 분리기간이 3년 이상이라도 19~29세로 학업 등을 위해 단순분리된 것은 세대분리로 보지 않음

▶ (3단계) 기혼자, 결혼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4단계) 모든 세대원의 자필 서명 유무 확인 및 체크

*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수기 서명 요청, ▽기타 지자체 확인 수단 활용

- (면적접수) 소규모임가직불 자격요건이 미충족하거나 지급대상 산지면적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임업인은 면적직불 대상 임업인 정보, 산지 입력

△ (계좌검증) 임업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는 같아야 하며, 신청자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타인의 계좌입력 방지를 위하여 신청인 계좌검증 기능 추가

붙임22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 (육림업) '2013.1.1.~2022.12.31.'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 증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 실행 : (슈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신고수리증, 전중후 사진첩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사업장 전체의 사업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중·후 사진첩(필수), 영림일지(사진 필수), 산림사업법인 등과 계약으로 추진한 경우 계약서·설계도서·인건비 지급명세서 등 (단 산림경영계획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된 실적만 인정) 2) 지자체 보조사업 : 사업실행 여부 확인 가능한 공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부서를 통하여 육림 실적 확인이 가능할 경우, 확인으로 대체 가능
4. 본인 소유가 아닌 산지(임차임업안)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공익직불 신청인과 산지의 소유자·임차인이 다른 경우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확인서 + 원인증명서류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회의록 * 22년 직불금 신청 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미제출 (단, 계약기간이 '23.9.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3.9.30일 이후로 갱신하여 재제출 필요,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5.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임가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대장 ▶ 임가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임가 구성원의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따른 2022년도분 소득금액증명원

구 분	제출서류
5. 승계대상자 필수	<p>※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임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지급) 연도 임업공익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임업직불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7. 농촌(산지 소재지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주업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면적 : 시스템 확인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하 납품 시 : 영수증, 납품확인서 등 2) 직거래 시 : (계좌이체)입금내역, 거래내역서/(카드거래) 카드결제영수증, 거래내역서(원거리 거래 시 택배영수증) ▶ 연간 경영투입비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자재 및 종자육묘 등 구입비, 인건비 증명 서류 2) 산림경영관리사,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간이 임업용 시설, 임산물 간이 처리시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계약, 대금지급 등 증명 서류 ▶ 연간 종사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사 증명 : 영림자재 구매, 교육이수, 기반시설 지원이력 등 증명 ▶ 목재판매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약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품목, 거래자 인적 첨부) 등
7. 금년도 임업직불금 등록자 신청산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필수	<p>※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산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산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 확인, 임대차계약서 ▶ 산지전용 등으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붙임23 산지의 임대차계약 관련 확인 및 처리 절차

☑ 「임업직불제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

1. 등록신청서 필수	▶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지급대상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 (공통) '19.4.1~22.9.30 내에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시스템으로 확인하여 대체 가능 * 다만, 분할·합병 필지 등으로 산지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1 ① 임야대장 상 산지 소유자와 임업직불 신청자(실경작자)가 상이할 경우, ② 임대차 기간이 종료(9.30일 이전), ③ 임대차면적과 신청면적이 상이할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요청

*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9.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기한까지 보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록대상 산지에서 제외

2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신청자와 계약당사자와 같은지, 임대차면적이 신청면적과 같은지 확인하고, 시스템에 임대차기간 입력

○ 임업직불 신청자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재산세 납부자(≠소유권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직전 및 신청 연도(0000.1.1~0000.12.31)에 한하여 인정

3 읍·면·동 담당자는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를 스캔하여 임업직불제시스템에 등록(→ 지방산림청이 확인 후 농업경영정보 현행화)

4 산지 소유자가 임업직불 신청자가 무단으로 산지를 점유하였다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 서류 확인, ② 실경작 여부 확인 등을 거쳐 부정수급 행정처리

구 분	확인방법	임업인 보완서류	서류 확인 및 조치사항
<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사유지	▶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임업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개인, 법인, 종교 소유 산지 모두 포함)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 ▽신청자와 임차인의 동일여부, ▽임대차 계약기간이 직전1년이상, 등록연도 9.30일 이후 여부 확인

구 분	확인방법	임업인 보완서류	서류 확인 및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와 임차인이 상이한 경우 - 원칙적으로 해당 필지 제외
	▶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다수이고 임업직불 신청자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소유분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증서를 서면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산지 소유분에 대한 면적만 신청면적으로 인정 - 필지 전체면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소유자와 계약서 작성
		▶ 해당 산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대표하여 재산세납부를 하는 경우 그 당사자와 임대차계약 + 확인서	▶ 해당 산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신청면적으로 인정
사망 또는 상속이전 산지 등	▶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가 소유한 산지 등 <u>소유주는 명확하나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u>	▶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임대차계약	▶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p><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p>* 점유권에 대한 소의 패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필지대상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p>			
사망 또는 상속이전 산지 등	▶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외국인 소유, 행방불명자가 소유한 산지 등 <u>소유주는 명확하나 임업직불 신청 당사자가 해당 산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u>	▶ 원인 관련 증명자료 + 해당 필지에 대한 <u>직전년도 재산세납부 영수증 + 확인서</u> 3가지를 모두 제출	▶ 해당 산지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종중소유 산지	▶ 토지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종중대표(재산세납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 <u>종중대표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u> 해당 필지에 대한 <u>직전년도 재산세 납부 증명서+확인서</u>	▶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해당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자(실질적인 소유자)를 통한 <u>임대차계약+확인서</u>	▶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 임야대장의 토지 소유주가 종중소유이나 <u>실질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u>	▶ 해당 토지분에 대한 경작권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종중회의록</u>	▶ 해당 산지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인정

서식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확인서
-----------	---------------------------

※ '23년 임업공익직불금 등록과 관련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거지)	(전화번호 :)		
해 당 산지번호		(대표)	성 명
		소유주	연락처

본인은 다음 제1항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아래 2항에 기재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본인은 '23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시 해당 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산지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또는 세금납부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산지 소유 및 경영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이 진행중이지 않고, 해당 산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 및 실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사유(해당 사유에 √ 표시) : ① 사망자 소유산지(상속자 불분명), ② 행방불명자 소유산지, ③ 소유자 미복구 산지, ④ 외국인·해외이주자 소유 산지, ⑤ 소유자 다수산지, ⑥ 종중산지, ⑦ 기타(직접기재) : _____
- 관련서류 붙임 : ① 재산세납입증명서나 재산세납부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필수), ② 원인 증명서

2. 만일 위의 1항에서 확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후 산지소유자가 무단점유 등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은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공익직불금 전부를 환수하는 동시에 등록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5배 부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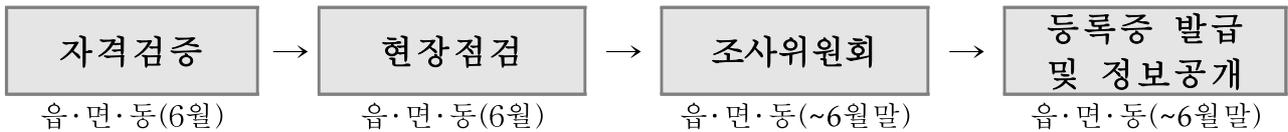
- 아울러 제1항에서 확인한 사정이 없어지거나 중요한 점에서 달라지는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으로 임업경영체정보를 현행화하여 임업직불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자(공익직불금 등록신청자) (서명 또는 인)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Ⅲ.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 ☑ 지급대상 산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시스템 자동검증, 현장확인 (실경작 여부, 관외경작자 등) 등을 추진(6월중)
- ☑ 읍·면·동별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 및 등록증 발급(6~8월초)



- ① (자격검증) 신청자의 정보를 전산 입력 이후 지급대상 산지, 임업인, 소규모 임가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후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 등록정보 수정·보완
- △ (실경작 확인) 임업직불 신청자가 임업에 종사(일부위탁 및 휴경하는 경우 포함) 하는 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 * 임업인이 해당 산지에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업을 직접 수행
 - * (확인방법) (1) 임산물 판매내역 (2) 자재 구매영수증 (3) 현장조사
- △ (임차임업인) 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에 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갖고 실경작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
-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임대차기간 등이 명시된 산주확인서,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세금납부자와의 임대차계약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종중회의록
 - ** 농약·비료·종묘·농자재 등 구매영수증(차후 전산화 예정), 현장조사
- △ (타지역 또는 도시지역 거주자)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 (소규모임가요건) 지급대상 임업인이 연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 * (농촌지역 여부) 시스템을 통해 확인, (3년 연속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3년 미만이면 읍·면·동 담당자가 이전 주소지가 농촌지역인지 확인

② (지자체 현장점검) 읍·면·동 담당자는 이(통)장, 등의 협조를 받아 관외경영자, 신규대상자, 산지분할 신청자 등을 중심으로 신청한 산지, 경작여부 등을 현장확인

△ 다른 읍·면·동의 산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산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산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실경작 여부, 산지분할신청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만일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등록거부 가능

△ 산림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축산, 시설 관련 정보를 참고하여 소임가자격 요건 중 시설재배업소득을 초과되었다고 추정되는 임업직불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예정

③ (조사위원회) 임업직불 신청자에 대한 임업종사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개최

◇ (마을단위 자율 경작심사) 읍·면·동에서는 효율적인 실경작여부 조사를 위해 별도로 마을단위에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사전 실경작 여부 확인 가능(시군 자율)

○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마을이장은 마을공동체 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3-5인)하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실경작 여부 확인 요청시 각 마을의 관외경영자, 신규신청인, 실경작 의심자 등 확인이 필요한 목록을 마을이장에게 배부

◇ 준수사항인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정착을 위해서도 마을 단위로 실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와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마을단위 경작 사실심사 등을 권고

△ 조사위원회는 관할지 기준으로 임업직불을 신청한 임업인의 자격요건에 심사 및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임업직불을 신청한 지급대상 산지의 자격요건 심사

* 심사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가능

* 마을단위 심의를 위한 심사 수당 등은 시군에서 지원 가능(사업관리비 등 활용)

△ 읍·면·동에서는 임업직불금 등록정보 확인·서류보완, 현장확인, 조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면 ‘임업직불제시스템’의 등록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등록정보를 시·군·구에게 제출(8월말 읍·면·동에서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시·군·구 조회)

④ (등록증발급, 등록거부) 임업직불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신청자에 대하여 각각 소규모임가직불, 면적직불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문서로 등록거부 통보(8월)

△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규정된 등록증을 발급하여 통보

* 별지12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서식으로 발급

* 등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 불가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을 통해 등록증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증은 반드시 임업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임업직불금 등록자, 등록거부자는 시·군·구 주관으로 문서로 근거를 남기고, 해당 임업인에게 규정된 “등록거부통보서”를 발송하고 14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

* 별지16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서식으로 통보

⑤ (정보공개) 시·군·구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자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 (임업인) 성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정보공개 방법 >

1)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자 성,(예 : 이OO, 김OO)·산지 주소 및 지번 리스트를 공개

2) 전체 정보 공개 열람을 원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시행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열람목적과, 열람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를 별도 대장에 제공(작성) 후 열람 가능함을 정보공개 게시물에 함께 안내

* 단, 방문 열람 시 정보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하고 열람만 가능

붙임24 조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접 심의 또는 인근 읍·면·동과 합동으로 심의

- 위원장: 읍·면·동장
-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다만, 등록대상자가 소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 주관 조정 심의 가능
 - 산지 소재지 읍·면·동 관할 이·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이나 회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산림조합 등 임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
 - 해당 읍·면·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소속 직원이나 회원
-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해촉: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임업 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임무: 실제 임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보조사업간 DB 비교로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 관외 경영자, 신규대상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동일 필지에서 서로 다른 보조금을 수령한 자의 실 경영 및 임업 종사여부 확인
: (1) 경영면적 및 기간 + (2) 실경영여부(판매, 자재 영수증 등 영립증명서류 + 현장 조사)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대상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산지에 대한 심사
 - ④ 관외경영자 등 임업종사 여부 심사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산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산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마을별 마을공동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확인
 - ⑨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IV. 등록사항 변경·신고

- ☑ 임업직불금 등록 대상자는 등록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 등록정보를 수정
- ☑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신고하거나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제출

① (변경등록 신청)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등 다음의 등록사항이 변동되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

-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소재지·소유자 등 산지 현황
- 산지의 자경(自耕)·임차(賃借)·휴경(休耕) 및 폐경(廢耕) 등 임업 현황
- 임업시설 종류 및 면적 등 재배현황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요건

△ 임업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임업인등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그 직불금 등록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② (서류 제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

- 발급받은 등록증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류
- * 단, 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③ (양수·임차·승계등 신고) 산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분할·공유지분 취득을 신고하거나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할하여 일부 양수·임차할 경우, 본인 또는 양수인 중 1인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과 관련된 임업직불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류

* 단, 읍·면장이 임업경영정보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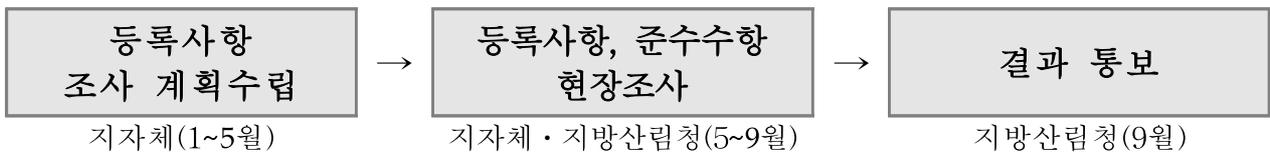
④ (지자체 변경등록)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

⑤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를 신청하고, 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별지 제17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V.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조사

- ☑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 ☑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자의 등록·준수사항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은 현장조사 추진



- ① **(조사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매년 조사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
 - △ 시장·군수·구청장등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 통보
- ② **(현장조사)**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등록자의 등록·준수사항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이 현장조사 추진
 - *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불금 등록자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 △ (조사기간) 임업직불금 등록 이후 ~ 지급 전(부정수급 관련은 상시)
 - △ 조사·수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에 출입하여 조사·수거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 가능
 - △ 규정에 따라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제시

- 임업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음

* 별지 제18호 서식(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19호서식(조사원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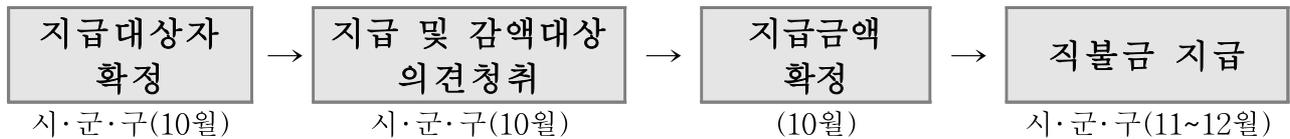
③ (지급대상자 조사협조 의무)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조사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됨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준수사항 및 등록사항과 관련된 **아래의 서류들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비치**해야 함.

- 발급받은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변경등록 확인서
- 임산물 판매 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서류, 종자·육묘 등의 구매서류, 교육 이수증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 및 등록·변경등록과 관련된 서류

VI.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 ☑ 소규모임가·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임업인별 직불금 산정, 보조금 교부 통보
 - ☑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인한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및 감액비율 확정
- ※ 시·도, 시·군·구는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조기 마무리



① (지급대상자 확정) 지급대상자는 사후검증 결과, 지급요건 유지 여부를 반영하여 9.30 기준으로 최종 확정

△ 등록증 교부 이후 최종 확정일(9.30)까지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미유지시될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9.30일 기준으로 유지 확인 및 반영해야 하는 사항 >

-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권원 변동, 면적, 휴경, 품종 등 변경 여부
- 거주 요건 변동(거주 요건 변동 시는 주업요건이 충족할 경우 가능) 여부
- 기타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 지급요건 유지 여부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 등 사후검증 결과 반영

△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가 확정되면 산림청은 내시(7월), 지급금액 확정 후 교부 결정 통보(10월)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집행 여건 마련

* 임업직불금 신청 등록 등 사업관리예산은 5월에 내시 통보

△ 시·도, 시·군·구는 임업공익직불 등록대상자가 확정된 후 산림청 내시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9월)

- 집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e나라도움-e호조'(시·도, 시·군·구)로 사전에 관련 업무 절차 숙지

< 지급대상자 등록자(신청자) 사망 등 신상 변동 시 변경 처리 >

- (신청기간 내) 기존 신청 취소, 신규 지급대상자가 신규 등록신청
- (신청기간 완료~산림청장이 공고하는 날까지)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후 읍·면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요건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 변경신청

* 임업직불금은 상속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대상자의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할 경우만 지급
* 변경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 정보 승계(변경) 신청 선행 필수

② (의견청취) 지급대상자 확정 이후 농업외종합소득, 지급대상 면적 미만 등으로 등록거부된 등록자, 준수사항 부적격으로 **감액대상인 자 의견청취(~10월)**

△ 등록거부자에 대하여 의견청취 이후 자료제출 등으로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충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에 관련 내용 등을 보고하여 등록정보 수정

△ 시·군·구에서는 준수사항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액비율 적용**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감액비율 감경비율 최소화

③ (지급금액 확정) 지급대상 산지소재지 기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지급금액을 산정하여 시스템을 통해 제공(10.30일)

△ 지급대상 산지가 2곳 이상일 경우 신청받은 산지 지자체에서 지급

④ (지급) 시·군·구에서는 임업직불금이 등록 연내에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 말까지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추진**

△ 산림청은 시·군·구 단위로 “e호조 집행명세서”의 형식으로 제공 예정

* 지급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관할지	거 래 처 명	거 래 처 구 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입 금 유 형	은 행	예 금 주 명	계 좌 번 호	공 급 가 액	부 가 세 액	공 제 액	지 출 액	지 로 번 호	C M S 번 호	대 표 채 주	대 표 자 명	우 편 번 호	가 본 주 소	상 세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폰 번 호	입 금 명 세
-----	---------	-----------	---------------	---------	---------	-----	---------	---------	---------	---------	-------	-------	---------	-----------	---------	---------	---------	---------	---------	---------	-----------	---------

△ 시·군·구에서는 직불금을 교부받은 이후 신속하게 지급대상자 계좌에 임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임업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임업공익직불**” 통장 명기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입금명세서를 지급대상 임업인에게 전달 가능

△ 지급금액 확정 ~ 지급 전까지 승계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승계 대상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선 승계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등록정보 수정

* 지급기간 중에는 임업공익직불 등록정보의 수정 및 수정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⑤ (정보공개) 시·군·구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자 정보를 홈페이지 공개

* (임업인) 성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농업법인) 법인명, 산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 정보공개 방법 >

- 1)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자 성,(예 : 이OO, 김OO)·산지 주소 및 지번 리스트를 공개
- 2) 전체 정보 공개 열람을 원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시행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열람목적과, 열람자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별도 대장에 제공(작성) 후 열람 가능함을 정보공개 게시물에 함께 안내

* 단, 방문 열람 시 정보에 대한 사진촬영 금지하고 열람만 가능

⑥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임업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 제출(이듬해 3월 이전)

△ 산림청은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 확정하고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반납을 요청

△ 시·도, 시·군·구에서는 임업공익직불 집행잔액은 정산 후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VII. 사후관리

- ☑ 지자체 교차점검,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정기·상시 운영하여 사업 실태를 수시로 점검

□ 지자체 교차점검

- 시·도와 시·군·구는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연 2회 실시(6월, 10월)

□ 산림청·지자체 합동점검

- 산림청은 시·도, 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연 2회 실시(7월, 11월)

□ 부당수령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지방산림청 및 시·군·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내용에 대하여 지방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조사

- ① 시·군·구는 지방산림청 등과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 조사
- ② 조사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사 결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③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한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신고의 경우 전화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의 통지 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

- ④ 신고에 의해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제출받아 산림청에 통지

- ①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②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③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 ④ 익명(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 ⑤ 임업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⑥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⑦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산림청)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 (필요시) 점검
- (시·도)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시·도 주관 교차점검(6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3]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1. 공통사항(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 마을 공동체 등 공동활동 참여
- 그 밖의 준수사항

2. 임산물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그 밖의 준수사항

3. 육림업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 임목의 유지

< 준수사항 공통사항 >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현장점검 기준일
 - * 단 각 의무준수사항별 적용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세부내용 참조
 - 적용시점: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 * 다만,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의견제출로 재조사한 경우 10월10일까지 가능

□ 감액조치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불이행 시 10% 감액 조치

□ 조사대상자 선정

- 전체 지급대상자(직불금 유형별·품목별) 표본 추출 선정
 - ('23) 공통 항목별 : 20%이상
 - 임산물생산업 항목별(농약, 토양검사) : 10%이상
 - 육림업 항목별 : 10%이상
 - ('24) 여건을 감안하여 표본조사 비율을 단계적 상향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조사 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타 준수사항 병행조사 가능
- 그 밖의 준수사항 : 시스템 활용 전수 검증

□ 조사대상자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제시

I. 공통사항

1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와 관련한 체계적인 이행점검 추진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및 제16조, 시행령 제13조 >

- (법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것
- (시행령)
 1.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3.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관리할 것

< 법 제20조 >

- 임업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기간

- 이행점검 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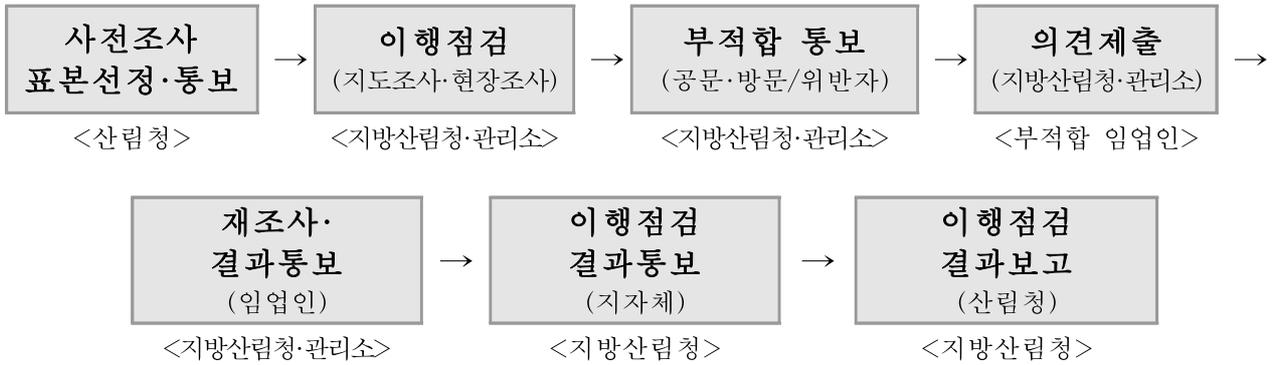
- 점검대상 : 전체 지급대상자의 20%이상를 표본 선정하여 조사
 - 다만, 신규대상자, 주업 경영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 표본선정 우선순위 : 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피해지, ② 산림병해충 피해지, ③ 전년도 부적합 필지, ④ 당해연도 신규등록 및 주업 경영자, ⑤ 전년도 미표본 대상지, ⑥ 경영체 DB 산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 불일치 신청자, ⑦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등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로 같음

5. 이행점검 조사

- 점검대상 : 직불금 신청·등록된 산지(임업인)
 - 등록된 산지(임업인) 중 경영체 정보 및 현장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해당 산지 등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하고 산림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하며, 표지석·울타리·말뚝·경계 끈 등으로 이웃 토지와 경계 표시 등
 - * 필요시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점검방법** : 지방산림청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영체 정보와 신청면적 비교,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
 - (면적확인) 경작·경영·휴경·불이행면적은 최근 항공영상(국토지리정보원), 드론촬영 영상,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산정한다.
 - * 부적합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경작·경영면적) 산지의 형상을 유지하며, 임산물 경작·재배,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은 경작·경영면적으로 산정한다.
 - * 준수사항 이행기간('21.10.1.~'22.9.30.) 내 경작·경영에 이용된 산지분 포함
 - (휴경면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를 휴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 다만, 미관리 및 방치 등으로 산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 폐경 처리
 - (불이행면적)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콘크리트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산지의 형상을 상실한 토지분은 불이행면적으로 산정하며, 해당 산지분을 지급면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산지분은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한다.
 - * 다만,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임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은 지급면적에서 제외하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을 경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감액은 미적용
- ** 필요시 생산·개량·부속시설에 대한 세부사항 실태조사 내용(항목)추가 조사
 - (산지의 기능 미유지) 재배·휴경하는 산지분에 한정하여 산지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산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의 기능 미유지로 처리하고,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10% 감액을 적용한다.
 - 태풍, 홍수, 전염병 확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기타 사유로 산지의 형상 및 기능 현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이행점검 추진
 - * 가급적 현장조사, 드론촬영 영상 등을 활용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하되, 당해연도 태풍, 집중호우 등 원인으로 산지 유실이 확인되면 이행점검 이행으로 조치

○ 점검절차



* (1차) 경영체 정보 비교 사전점검 → (2차) 항공사진·드론 등 활용 및 현장조사

6.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 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7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
 - *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 지자체는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 지급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 원칙 및 처리방안

☞ (원칙) 6월말 등록대상 정보를 기준으로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폐경 등 산지형상 위반 적발 시 엄격한 감액 조치

* 임업직불제법상 신청등록을 잘못된 경우에는 감액 조치 등이 불가피하므로 적발 이후 경영체 및 직불시스템 산지에서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 부적합 확정 즉시 감액 공지 및 시스템 반영, 이의제기를 거쳐 감액 확정

⇒ 다만, 임업인이 등록증 발급 이후,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 내 폐경 등 부적합면적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감액 제외할 수 있고, 등록정보 이의신청 기간 이후 변경등록은 원칙대로 감액 적용

☞ (적용사례) 6월말 등록 이후 9.30일 기간 중 사례

① 6월 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경영체 또는 직불시스템 정보를 9.30일 이전에 삭제하더라도 감액 조치

② 6월 말 등록 필지(a)를 신청자(A)가 이행점검에 적발된 후 타인(B)으로 9.30일 이전에 변경 등록하였다더라도 신청자(A)에 대한 감액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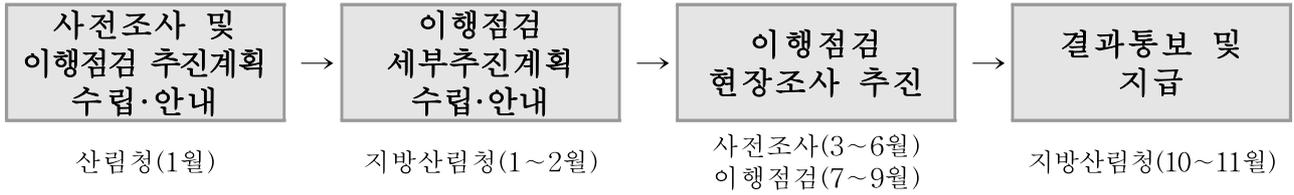
* (사전 조치사항) 다만, 타인(B)로 변경등록 시 적발 면적을 포함하여 등록되지 않도록 연계 및 검증

③ 6월 말 등록 필지(a)를 당초 신청자(A)는 이행점검에 적발되지 않고, 타인(B)으로 등록 후 이행점검에 적발 시는 B에 대해 감액 조치

* (사전 조치사항) 타인(B)로 변경된 직불금 신청 등록정보가 이행점검시스템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연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계획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유지관리 등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②-1 사전조사 및 표본선정	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조사,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선정 ▶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②-2 현장조사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정보와 비교 점검,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에 대한 현지조사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 제출고지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②-4 의견제출 제출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서 제출(서면)
②-4 재조사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③ 결과 통보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10.1>, 산림청<10.31>)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2. 공익직불제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 사전조사 및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전국) 및 안내(지방청·지자체)	○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관할지역) 및 안내(지자체)	○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3~10월	교육 및 홍보	○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교재 제작 등	○ 임업·산림 공익기능 의무교육 등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사전조사 및 표본선정	○ 사전조사 대상 및 방법 확정 ○ 이행점검 표본 필지 선정 및 점검의뢰	○ 부적합 우려 필지 선정 및 사전안내 ○ 이행점검 표본대상 검토 및 사전통지(관할지역)	○ 사전조사결과 공유 및 공유되는 부적합 우려사항을 감안, 직불 신청·접수를 ○ 이행점검 대상 선정결과 공유
	현장조사	○ 현장조사앱 개발 및 태블릿PC 배부	○ (1차) 경영체 정보 비교 점검, (2차)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현장조사결과 공유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 제출 고지 적정 관리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 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현장조사 부적합결과 및 세부내역 공유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서면) ○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 직불금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 평가 ○ 익년도 산지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추진계획수립	○ 이행점검 결과 산림청 제출(11.30일까지)	-

2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관련 분야로 지방산림청, 지자체, 한국임업진흥원 담당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한국임업진흥원 전문교육기관	임업교육사업실	실장 지동훈 책임 임진아 주임 강병완	02-6393-2571 02-6393-2574 02-6393-2577
전국 지자체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 협조 :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등

개요 및 일반사항

□ **목적** : 임업직불금을 지급받는 임업인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제공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이행점검 추진

□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 (법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시행령)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
2.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시행규칙)

1.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2. 교육기관의 현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며, 교육이수 결과를 교육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 적용시점

- 지불금 등록자 대상 공익증진 관련 교육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당해연도 1.1 ~ 당해연도 9.30
 - * 이행점검 완료일을 고려 '23년 이행점검 준수사항 교육과정 운영은 9.15일 이전까지 완료

□ 교육 대상자 및 교육시간

- 공익직불금(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을 수령하려는 자는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 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들의 역할
-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들의 준수사항
-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유관기관 협업

-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관계기관은 진흥원에서 설계한 표준 교육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아울러, 공익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시행령 제15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산림청에서 승인 받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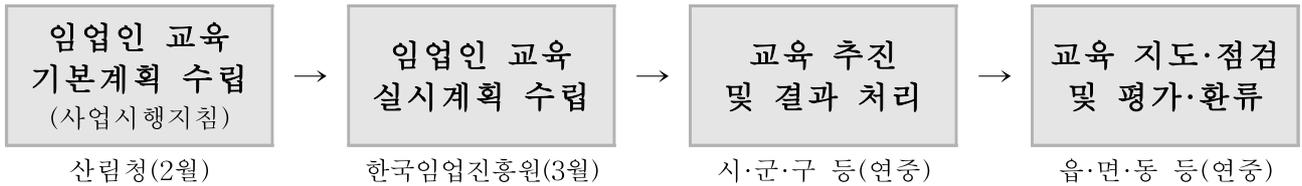
□ 교육 이수 결과 등에 대한 처리

- 교육이수 적용기간 종료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고, 종료 이후에는 교육 결과를 확인하여 미이수자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3월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인 교육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 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공유, 홈페이지 게시
↓		
② 임업인 교육 추진계획 수립	3월 (한국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인 교육 교육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
↓		
②-1 교육과정 설계 및 콘텐츠 제작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산림 특성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과정 설계 ▶ 영상 콘텐츠 제작·개선(기존 제작자료 활용 등)
↓		
②-2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임업진흥원 강사 약 000명 수준으로 양성 및 관리 ▶ 교육기관 지정 등 추가 전문강사 양성
↓		
②-3 교육이력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연중 (한국임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원 교육인력포털에 구축된 교육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 ▶ 교육 대상자 관리 및 이수여부 확인 <p>* 기능: 교육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이수자 업로드, 온라인 교육 등</p>
③ 사이버 교육 운영	1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p>* 대면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p>
④ 집합 교육 일정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 집합 교육(보충) 일정 제출 요청 ▶ 지자체, 산림청(소속기관), 집합 교육 일정 ▶ 집합 교육 일정(확정)
↓		
⑤ 집합 교육 운영	4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7일전 교육안내서 발송(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 교육 개선 자체 홍보
↓		
⑤-1 교육 실시 및 결과 처리	교육당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진흥원 제작 표준교육 동영상 상영 ▶ 대상자 출결 확인, 이석관리, 교육 진행 ▶ 교육 이수자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 (교육 완료 후 7일까지)
↓		
⑤-2 교육 미이수자 체크 및 독려	5월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 독려
↓		
⑤-3 교육결과 최종 확인	완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력관리시스템으로 임업인 교육 이수자 확인 및 마감
④ '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 교육	10월~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사이버교육 진행

1. 임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2. 임업인 교육 단계별 역할

[산림청]

- (기본계획 수립) 농업인이 적절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및 운영
 -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임업인의 특성에 따라 교육방식을 다르게 구성·운영

[한국임업진흥원]

- (실시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교육 운영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제작) 대면, 비대면 방식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각 과정별로 전달 목표를 명확히 하여 표준 교육(첨부1) 제작
-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임업·산림 공익기능, 준수사항 및 실천방법 등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강의역량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관리
- (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임업인 교육 이수 및 교육 이력을 총괄 관리

[교육기관(지자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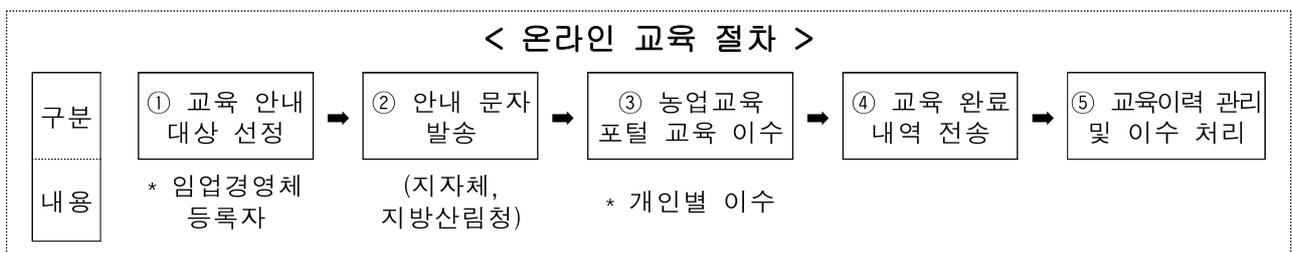
- (세부실시계획 수립)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통지, 교육일정·장소, 교육결과 처리 등을 포함하여 임업인 교육 세부실시계획(첨부2)을 수립·시행

-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 진흥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과정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온라인으로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 등을 위해 대면 교육을 편성 및 운영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계획을 제출하여 산림청에서 승인받은 후 운영
- 대면교육을 운영할 경우, 지역 임업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교육장소를 선정
- (이수독려)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대상자 등록 후에는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여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첨부4) 독려

3. 교육별 세부 운영 계획

[온라인(비대면)교육]

- (운영기관) 한국임업진흥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에서 총괄 운영
- (교육방법) 임업인이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포털 내 「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교육 수강하여야 한다.
 - 별도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웹페이지 내에서 경영체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경영체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교육 수강
- (교육안내) 등록된 임업경영체 대상으로 교육 개설 및 이수 안내 문자 발송
 - 임업경영체 등록는 지방산림청에서 발송(교육 문자 발송 시기는 별도 안내)
- (이수관리) 임업직불시스템(교육이수관리)으로 전송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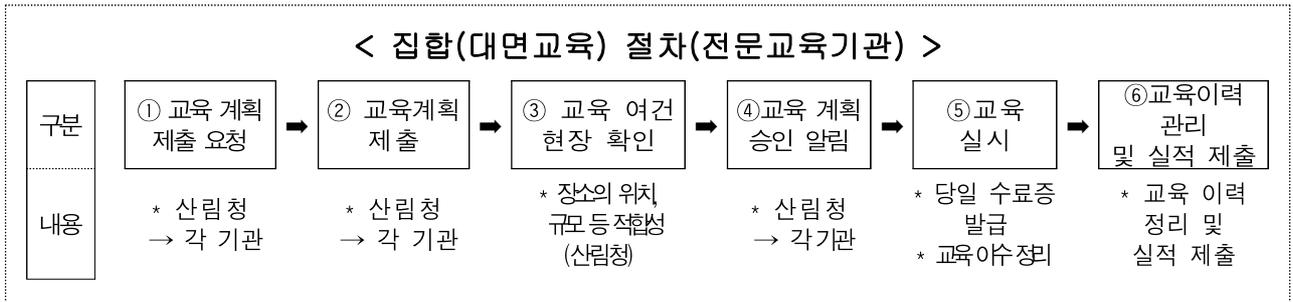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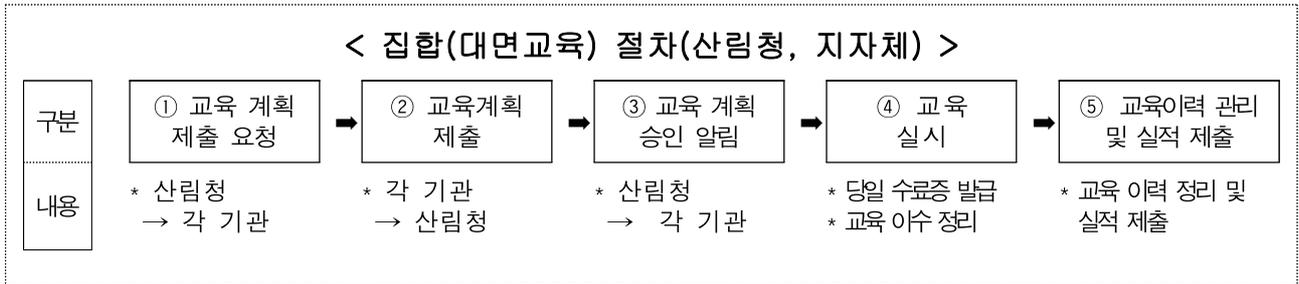


< 문자 발송 내용(예시) >

-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신 임업인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임업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임업인 교육을 농업교육포털 내(www.agriedu.net) '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교육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실명을 입력 후 교육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실 임업인께서는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이 감액 되오니 '23년 9월까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합(대면)교육]

- (운영기관)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 (교육방법)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수요, 교육여건을 감안해 자체 임업직불제 임업인 과정 개설하여 운영
- (교육방법) 기관별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고 산림청에 제출·승인 후 교육과정 운영
 - (산림청,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는 자체 기관 사정에 따라 교육 계획 수립하여 운영
 - (전문기관) 유관기관·단체 교육 대상자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계획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승인 후 운영
- (교육안내) 교육과정 개설 확정 후 신청 전까지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 일시, 장소 등을 안내·통지
- (교육 콘텐츠) 임업진흥원에서 제작한 표준 강의자료 및 표준 강의 영상을 활용하여 강의 진행
- (이수관리) 교육운영 실적을 공문으로 매월 말일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교육 과정이 완료된 이후, 교육 이수자 명단(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업경영체 등록번호)(첨부5)을 작성해 공문으로 교육실적을 제출
 - 교육 참석자 서명부 등 원본 서류는 교육기관 보관하고,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에게 교육 당일 이수증(첨부6)을 발급



3. 행정사항

- 산림청(소속기관), 지자체(소속기관)에서는 임업직불제 임업인교육 개설 및 이수와 관련하여 임업인 안내, 홍보를 적극적 실행
- 산림청은 지자체에 대해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다음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

(첨부 1)

임업직불금 임업인 교육 내용

연번	교육 목차 및 내용	비 고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적 가치 및 공익적 기능 이해- 공익적 기능 평가 및 활용방안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개념<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직불제의 도입배경 및 역사-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주요사항- 임업·산림 공익직불제의 이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직불금 지급대상<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육림업 직불금 자격요건 및 제외사항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직불금 신청방법<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절차, 신청 시 주의사항- 임업경영체 등록 방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 준수사항<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의무- 이행점검 시기 및 방식, 감액비율 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수급<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처벌 등	

* 교육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이 추가, 단축, 제외될 수 있음

(첨부 2)

임업직불금 교육 집합(대면) 교육 계획(서식)

교육계획 : (기관·단체명)

구분	일시	장소	인원
제1기			
제2기			
합 계		회	명

교육내용 :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임업인 준수사항, 부정수급 조치방안 등 공익직불 제도 전반

교육 운영 인원 : ○○명(참석자 명부작성 등 교육 관리 인원)

교육일정 사전 공지 : 문자 등으로 본인의 교육일정 7일 전까지 통지

-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여건이 어려운 경우, 대면교육을 선호하는 경우 등 집합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소집

교육이수관리

-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서명자료는 교육기관에서 보관

* 참석자에게는 교육이수완료 문자 또는 이수증 발급

- 첨부5 서식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말 산림청에 제출

※ 원활한 이수자 관리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교육 참석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한 뒤, 교육 시, 참석자에게 정보제공 이용 동의 등의 서명을 받도록 함

(첨부 3)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안내서

■ 우편 발급 양식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안내서	
1. 성명 : _____	2. 생년월일 : _____
<p>「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교육과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 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3.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p>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2023 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p>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p> <p>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p> <p>(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p>

(첨부 4)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안내서(안)

■ 우편 발급 양식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 안내서	
1. 성명 : _____	2. 생년월일 : _____
<p>「임업직불제법」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매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교육과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또는 육림업 적접지불금을 수령하려는 자)
교육일시	2023. 0. 0. 00:00
교육장소	○○시·군·구 ○○읍·면·동 ○○교육장
준비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p>1.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일정은 지자체(시·군·구,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공고되어 있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2023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교육기관명	

■ 시스템을 통한 교육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양식

<p>OOO는 2023년 00월 00일 00:00부터 0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p> <p>문의처: 읍·면·동 또는 교육기관, 연락처(000-0000-0000)</p> <p>(교육 미이수 시에는 직불금 수령액의 10%가 감액 조치됩니다.)</p>

(첨부 6)

교육 이수증 양식(안)

발급번호: 기관명-날짜-일련번호(예시: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20230501-1)

《 교부용 》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이수증

성 명: 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00시·도 00시·군·구 00읍·면·동

교육과정: 20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교육일시: 2023. . .

교육장소: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인 교육 과정을 이수 하였음

2023년 00월 00일

교육기관명

직인

3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 협조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공익직불금 수령자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 및 이행점검을 추진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 지급대상 산지 및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및 감액여부 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유도를 위해 이행점검 외에 계도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음

4. 적용내용

- (관리주체)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책임은 해당 산지 등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있음
- (점검방법) 영농폐기물 중 폐농약병, 폐비닐의 적정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되,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부적합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적정처리를 위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간 동안 처리가 되었을 경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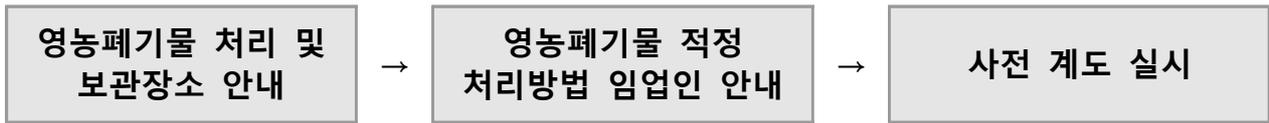
5. 기타사항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준수사항은 환경부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특히,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별로 처리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직불 담당-환경 담당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 시·도에서는 현장(읍·면·동)의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의 일정 조율, 수거 및 보관장소 지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시·도의 환경 담당자와 적극 협의를 하여 현장(읍·면·동)에 안내

II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안내 및 홍보	1~2월 (산림청,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직불 수령자 대상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 공동 집하장, 임시보관장소의 위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 일정 등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 안내
② 사전 계도	수시 (지방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점검 전,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미처리된 폐기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처리방법을 안내하고 처리하도록 계도
③ 이행점검 실시	6~9월 (지방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 이행점검 대상 필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6월)하고 이행점검 실시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과 병행하여 이행점검을 추진할 수 있음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인,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계획 통보
③-2 점검실시	점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불 지급대상 산지 등에 영농폐기물이 버려져 있거나 적치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
③-3 보완요청	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14일 이내) * 다만, 임업인이 지자체의 일제 수거의 날, 별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 등 개별적으로 지정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보완하도록 안내
③-4 보완결과 확인	지정된 날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요청 필지 재방문 및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재점검 →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 미감액
③-5 통지 및 의견청취 등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자에 대해서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통지하고 10일 이내 의견청취를 진행
③-6 감액대상자 확정 및 보고	10.1.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대상자를 확정하여 10.1.까지 시스템 입력 및 공문 통보
④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자에 대해서 감액처리 진행 * 산림청 → 지자체 통보를 통해 직불금 지급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10일 이내)

1.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사전 안내 및 홍보



[산림청, 1~2월]

- 산림청은 임업인이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방법, 장소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및 홍보**
 - 산림청에서는 농식품부와 협조를 통해 분석한 직불관할지 기준 전국 공동 집하장 및 임시보관장소 지정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에 공유**
 - * 환경부 및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되었고, 해당 리스트는 별도 송부
 - ** 임시보관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직불담당이 환경담당과 협의하여 적정 처리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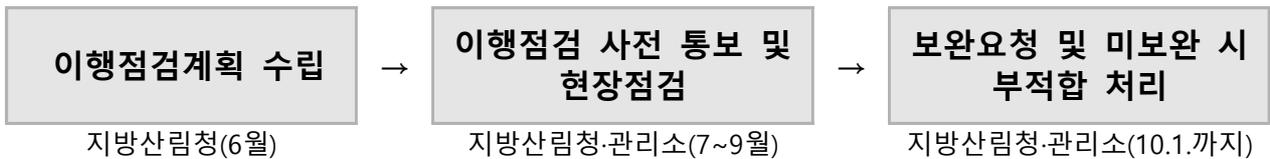
[지자체]

- 지자체는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수거함,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
 - 임업인에게 안내문자, 우편, 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지 소재지와 가까운 공동 집하장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영농폐기물 등이 산지에 방치, 매립 또는 소각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홍보를 추진**
 - * 생활폐기물은 지자체 환경부서의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 지자체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의 공동 수거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
 - 임업인 등은 마을 지역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일제 수거 기간 중에는 관계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
 - 특히, 직불 준수사항 중 임업 관련 협·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과 연계하여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 기간 등을 운영하도록 권장**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이행점검 시작 전,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산지주변에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 매립 및 소각된 임가에 대해서 걱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 실시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 **(계획수립)** 지방산림청은 영농폐기물 처리 현황, 사전 계도 시 폐기물 방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 여부를 확인
 - 이행점검 대상지역 선정 시, 공동 집하장 등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점검
 -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지형상 및 기능 유지 현장조사 대상 필지와 병행하여 조사 가능
- **(사전안내)** 영농폐기물 등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현장 입회, 부적합 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업인에게 **점검 7일전까지 사전안내 실시**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 다만, 증거인멸 등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 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이행점검 시 산지 및 그 주변에 폐농약병과 영농폐비닐이 적치·방치 및 소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
 - * 영농폐기물 '소각' 이행여부 점검은 산림청·농식품부·환경부 합동으로 실시하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위반사항으로 반영 대체

- 임업인 등에게 **1회***에 한하여 해당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보완요청 할 수 있고,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지 등의 영농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지자체의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개별 업체에 요청하여 수거하는 등 임업인이 처리하기로 한 별도의 일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시기를 인정
- **(부적합 사전통보)** 배출장소가 지정된 지역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반은 **7일 이내에 부적합 내용과 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고, 배출장소 미지정 지역에 대한 위반사항은 ‘주의장’ 발부
 -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1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다만, 이미 1회 보완요청을 하였고, 그럼에도 보완되지 않은 경우 재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 지자체는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감액 대상자가 확정되면 직불금 지급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감액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진행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영농폐기물 등의 적정 처리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4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I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 추진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법 제11조, 제16조>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은 아래 사항을 적용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4. 사전안내

- 조사대상 임업인 및 산지의 불일치한 정보 등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조사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다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제시.

5. 점검대상 선정

- **일반현황·산지정보** : 직불금 신청정보, 경영체 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임야대장 등 정보를 비교한 결과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영체
 - * 공익직불 지급대상 임업인·산지 등 자격요건에 대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기적으로 자동 검증하여 등록정보 중 부적격 내용을 표출
- **현장조사** : 직접지불제 종류(소규모·면적·육림업), 기준면적 구간(1·2·3구간), 재배품목을 고려하여 임업경영체 전체의 5% 내외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
 - * 단, 경영체와 직불금 신청정보 또는 일반현황·산지정보 불일치자, 필지, 면적 등 경영정보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휴경 및 일시적 채취행위 관련자, 주업 대상자, 산지전용 및 산지분할 우려자 등을 우선으로 선정함

6. 점검내용

- **일반현황·산지정보** :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현황·산지정보와 주민등록정보·임야대장 시스템 간 대량검증으로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 여부

- 경영주와 경영주의 임업인의 사망, 개명, 주소 변경, 농업법인의 말소, 명칭 변경, 산지 지번의 말소·분할·합병, 공부상 면적과 지목 변경, 산지소유자의 변경, 산지전용, 폐경 등 확인된 면적, 중복 필지 실경영·공동경영 여부, 경영형태 (자경, 임차) 등 점검
- **현지조사**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품목, 면적 등 불일치한 정보의 변경 여부 조사
 - **(불일치기준)** 해당 품목이 아닌 경우, 품목은 일치하지만 등록된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다만, 면적 차이가 100m²이하는 제외)
 -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성사진, 항공사진, 드론관측영상 등도 활용 가능
 - 등록정보 미 변경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
- **부적합 판정** : 임업경영체 정보 변경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 변경에 불복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동법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 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및 별표1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의미
 - **(일반현황·산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 통지
 - **(현장조사)** 표본 필지의 현지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상의 품목 재배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재배 면적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도록 직불금 신청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일치 사항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부적합 판정, 통지
 - *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9호) 참조

7. 점검절차

- **일반현황·산지정보** : 시스템 대량검증(주민등록정보·토지대장) 결과 불일치 통지(산림청) → 임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방산림청) → 14일 이내 미변경(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방산림청) → [의견제출(임업인) → 재조사(지방산림청) → 재조사 결과 통보(지방산림청 → 임업인)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시스템 입력, 지방산림청 → 지자체)
*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은 서면(등기우편),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
- **현장조사** : 표본대상지 선정·통지(산림청) → 현지조사(지방산림청) → 임업경영체에게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지방산림청) → 14일 이내 미변경(임업인)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지방산림청) → [의견제출(임업인) → 재조사(지방산림청) → 재조사 결과 통보(지방산림청 → 임업인)] → 지자체에 부적합 항목 통지(시스템 입력, 지방산림청 → 지자체)

8. 조사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 의무 불이행 확인 시 조치내용
 - 증빙자료(현장사진, 조사자 소견서) 확보 및 서면 등으로 결과 통지
 - * 조사대상자 확인서 징구(조사표에 조사대상자의 서명·날인)하거나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지 생략

9. 정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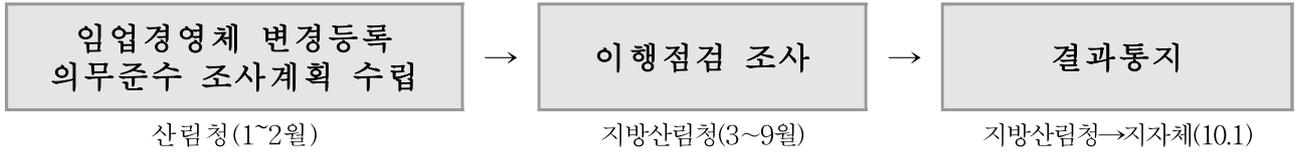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고 조사결과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의무 미이행자 정보는 매년 10.1.까지 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입력·전송
- 지방산림청은 10.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II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계획 수립	1~2월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변경등록 준수사항 이행점검	3~9월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준수 사항 이행점검
↓		
②-1 표본추출	3~6월	▶ (일반현황·산지정보) 경영체 정보, 직불금 신청 정보, 주민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대량검증을 통해 경영체 불일치 정보 추출 ▶ (현장조사) 품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임업경영체의 5% 추출
↓		
②-2 일반현황·산지정보 등 변경요청	3~9월	▶ 불일치 정보 변경요청
↓		
②-3 현장조사	3~9월	▶ 표본필지 현장조사 실시
↓		
②-4 변경등록	변경 요청 14일 이내 (9.30.)	▶ 일반현황·산지정보 대량검증, 현장조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 14일 이내 등록자에게 변경요청
↓		
②-5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3~9월	▶ 14일 이내 변경등록이 없는 등록자에게 통지
↓		
②-6 의견제출	3~9월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등록자는 이행점검 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제출(서면)
↓		
②-7 재조사	3~9월	▶ 의견제출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후 결과 통지
↓		
③ 결과 점검 및 통지	10월.	▶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10.1>, 산림청<10.31>)
↓		
④ 조사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III 세부추진사항

1.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2.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산림청	지방산림청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계획 수립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자체계획 수립	
3~9월	일반현황·산지	○ 주민정보·임야대장 대량검증 * 불일치 정보 추출	○ 대량검증 불일치 경영체 변경등록 요청서 발송 및 변경 여부 확인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현장조사	○ 현장조사 표본 추출	○ 품목 및 면적 일치여부 현지조사 - 불일치 경영체 대상 변경등록 요청 *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통지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지 여부 및 관리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지(등록자)	
	이의신청 및 재조사	○ 이의신청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지 여부 등 관리	○ 이의신청 임업인에 대하여 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지(서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결과 통보기관에 이의신청 제출(서면)	-
	조사결과 조치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통지 관리	○ 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를 입력 후 관할 지자체로 통지	○ 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의무준수 조사 추진계획 수립 등	-	-
12~1월	교육 및 홍보	○ 전단지 등 제작·배부	○ 임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등 임업인 변경등록 의무 홍보	○ 관할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입업정보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경영체 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제출 증명 자료	
-------------	--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 기존에 등록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대장·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탈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형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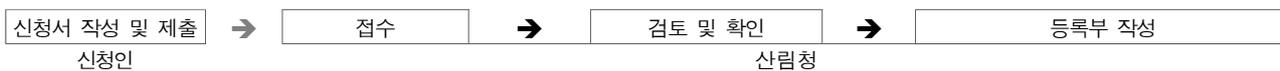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및 그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동기계·농차제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각 지자체	산림부서	읍·면·동

* 협조 : 산림조합중앙회 등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관리를 추진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준수사항]

●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보관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해당 산지등의 공익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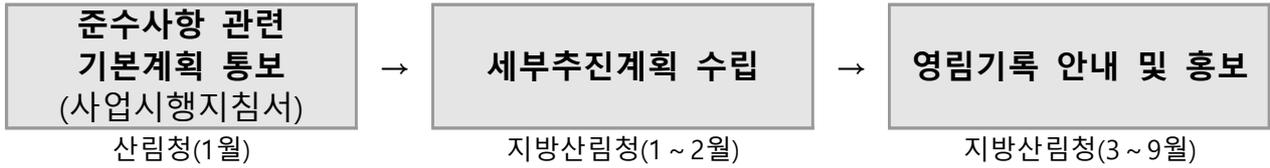
3. 적용기간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한 이행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 1. ~ 당해연도 9. 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II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매년 1~2월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등에 대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및 계획 수립
↓		
② 영림일지 배포	신청접수전	▶ 임업인 필수 안내서에 포함하여 영림일지 배포
↓		
③ 이행점검(지방산림청)	3~9월	▶ 준수사항 위반 임가를 중심으로 표본 선정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이행점검
↓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 계획 통보
↓		
③-2 점검실시	점검일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점검에서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7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③-3 결과입력	완료시	▶ 임업인 의견서 검토 결과를 반영 부적합에 해당하면 조사결과 통지(시스템 활용)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1.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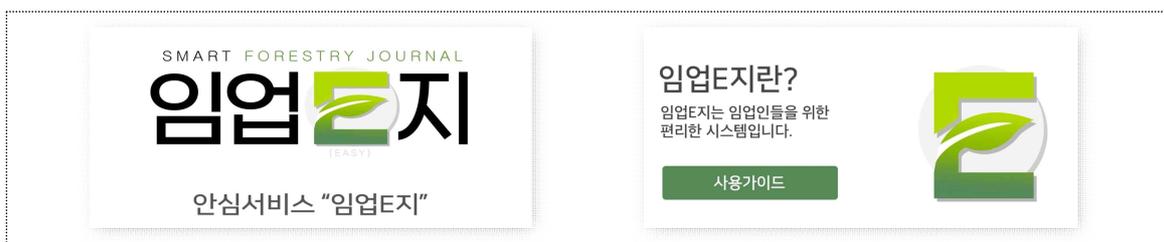


[산림청,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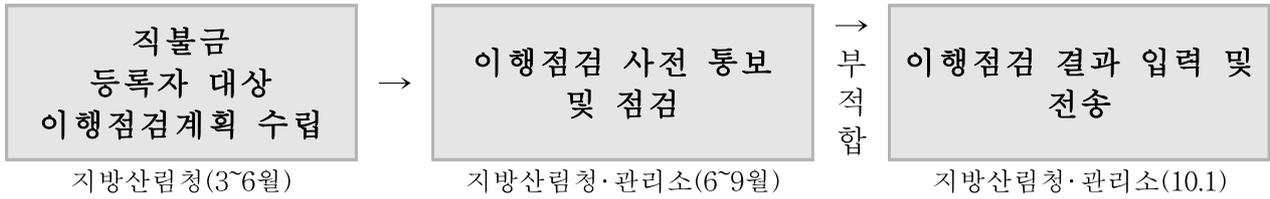
- 영림일지 작성 등 직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서)을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지자체·산림조합]

- (개요) 농촌사회의 고령화, 이행점점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작성방식을 인정
- (세부 시행방안) 지자체, 산림조합, 마을대표, 이장 등은 재배임산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임업인의 영림일지 작성을 지도·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임업활동 이력 기록(GPS기록 및 사진포함), 농자재 구매 또는 임산물 판매 영수증, 산림조합·지자체 경영계획 상담 인증, 관련 교육 이수 현황, 울타리 설치 및 관리, 판매홍보 실적, 시설 유지관리비용, 재해예방 활동 등 구체적인 임업활동내용 작성 등
 - (작성방법) 임업인 연령, 온라인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수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 ▶ (수기작성) 실제 작성예시 및 표준양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여 활용 권고(임업인 필수안내서, 지자체·지방산림청 등 홈페이지에 게시)
 - * 표준화된 수기 영림일지 활용하여 작성(사진자료, 구매영수증, 교육이수증 등 증빙자료 권고)
 - ▶ (온라인)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를 활용하여 작성
 - * (IT취약계층) 초기 앱 설치 대행 및 사용법 안내(산림조합, 읍·면·동, 지방산림청 담당자)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영림기록 작성·보관에 대한 이행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준수사항 위반 임가를 대상으로 영림기록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한다.
-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대상 임가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점검 계획을 통보 하며 해당 임가에게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성조사 현장입회 요구서(시료수거 7일전 발송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점검 계획 통보 생략이 가능하다.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영림일지 점검은 해당 임가에 기록 여부 확인을 위하여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한다.
- 이행점검 시 등록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직불금 전액 감액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지방산림청은 이행점검 결과를 기록 관리(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입력)한다.
- 지방산림청에서는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자 등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며, 10.31일까지 영림기록 작성·보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스마트영림일지 “임업지” 를 활용한 종사기간 증빙 기준

- ☞ (원칙)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 ①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수기영림일지 선택 가능
- ② 스마트폰 미소유자, 80세 이상의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움이 경우(지방산림청 판단) 수기영림일지 작성 가능

6 마을 등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 협조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등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산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한 준수사항에 대한 원활한 정착과 체계적인 점검관리

2. 근거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할 것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해당 산지등의 공익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3. 적용기간

- 직불금 등록자 대상 임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의 이행 점검 기간 등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공동체 활동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산지 소재지 및 주소지 주변 마을의 활동만 인정
 - * 마을이란 행정리 또는 행정리에 속하는 자연마을을 의미
- 마을 책임자 및 자치회(이장 등)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되, 필요시 지자체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 마을 인원이 현저히 적거나(5명 이하) 책임자 부재 등의 사유로 공동체 활동 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지역(타행정리 또는 마을) 공동활동 참여, 임업 관련 협회·단체(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활동, 기타 농촌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인정
 - * 다만, 위의 기타활동 등의 공동활동 참여 실적은 사진 등 증빙자료(영림일지 작성)를 통해 신청인 본인이 증빙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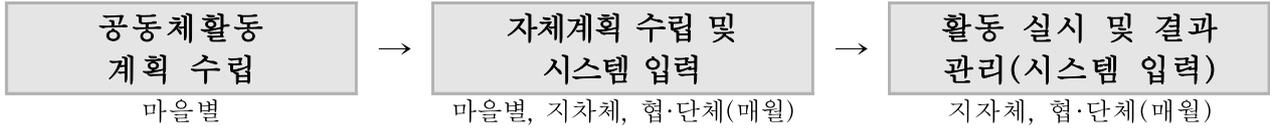
- 이행점검 시 마을별 계획에 따른 활동 실시 여부 점검
 - *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의 경우 해당 협회·단체를 방문하여 활동 참석 여부 점검
- 활동 계획에 따른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활동 여부를 판단하되,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마을 책임자가 제출한 활동사진 등으로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마을(자치회)] 마을별 공동활동 실천 결과 증빙서류 보관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협단체)] 공동활동 참석자 증빙서류 보관
 - [지자체·지방산림청] 시스템 입력 및 이행점검

II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공동체 활동 추진 계획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지자체는 각 마을별 안내 및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 수립 및 제출 안내 및 독려 ▶(협·단체) 자체 여건에 맞게 공동활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및 운영
② 공동체 활동 운영	연중	▶공동체 활동 계획 및 추진결과 입력(시스템*)
②-1 마을대표 등 공동 행사 안내	행사 1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방송, 마을회관 게시 등 지역주민 참여 유도 * 관외거주자, 귀산촌인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참여 안내
②-2 공동행사 운영	행사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참여주민의 역할 부여하여 행사추진
②-3 결과 제출	행사 후 1주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자는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참여 인원(명단 및 서명), 사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지자체에 제출 * 지자체는 시스템에 등록 활동결과 입력
③ 이행점검(지방산림청)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활동 활동여건 등을 고려 무작위 선정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의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할 수 있음
③-1 이행점검 사전통보	점검 1주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이장 등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 포함 점검 계획 통보 * 사전에 관련자료 등 제출을 요청하거나, 시스템 확인
③-2 점검실시	점검일	▶공동체 활동 운영계획(시스템 확인 등)에 따라 실제 공동체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
③-3 결과입력	완료시	▶점검결과 활동 실시여부 및 내용 제출(시스템 입력)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동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익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 임업직불제 시스템 구축(25년 예정) 전까지는 운영 및 점검 결과를 공문으로 제출

1. 계획수립 및 실행



[지자체 및 협·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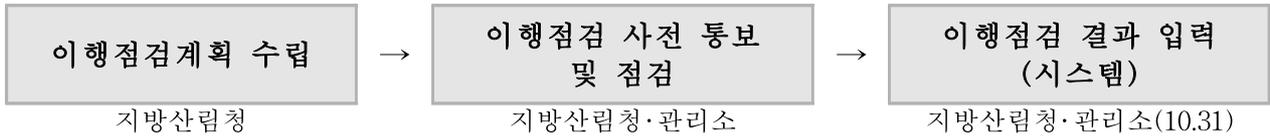
- 마을 공동체 활동 세부추진계획 수립(마을자치회에서 수립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시·군·구) 영농폐기물 일체수거의 날 등 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이장 등 마을 자치회 대표와 논의하여 마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및 활동방안 교육, 지원조직 연계 등 실행
 - 읍·면·동 담당자는 통보받은 마을별 공동체 활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 ('25년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후에는 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 (협·단체) 협·단체별 자체 공동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마을별 세부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실행(~9.30)

적용례

-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 마을 공동 공간 청소·정비 및 꽃길 조성, 가로수 심기 및 정비 등 마을 경관개선
-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활동
- 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공동 제거
- 지자체, 마을이 개최하는 마을축제, 교육, 문화활동 등 10인 이상 참여 공동 행사
- 기타 산림청·농식품부·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 마을, 협·단체별 계획이 확정되면, 행사일 이전까지 대상자 확인 후 참여 안내
-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목적 및 활동 내용에 대해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및 필요시 역할을 분배
- 공동체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는 마을에서 지자체에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하고 협·단체는 공동활동 실적 및 참석자 증빙서류 보관
- 지자체(읍·면·동) 담당자는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가 제출한 공동체활동 결과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 읍·면·동에서는 매월 활동시간이 미달인 마을에 대하여 공동체활동 실행 독려

2. 이행점검(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마을 공동활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행점검계획을 수립
 - (점검대상) 지자체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을 확인한 뒤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이행점검(단 주업기준 충족자, 신규 직불금 대상자 등 우선 적용)
 - *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타 준수사항과 병행 실시 가능
 - (사전안내) 이행점검 계획이 수립되면 점검 7일 전까지 조사일시, 목적, 내용 등을 사전에 안내하며 관련자에 대한 입회 요청을 할 수 있다.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도 가능
 - (점검방법) 이행점검계획에 따라 마을 등 단위로 공동활동 참석자(명단 및 서명), 활동 내용, 활동 일시 확인 등을 통해 공동체 활동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
 - * 연 1회 이상 참석 시 의무준수사항 충족으로 판단함(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 이행점검 사항 : 마을공동체 활동여부, 공동체 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
- 지자체는 공동체 활동이 미흡한 마을이나 지방산림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으로 통보된 마을은 공동체 활동 책임자(이장 등)를 통해 추가적으로 공동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 안내
- 지방산림청에서는 마을 등 공동활동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최종 검토 후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고(시스템 입력) 10.31일까지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자체(협·단체 포함)에서는 마을 공동활동 등 추진결과를 최종 검토 후에 매년 10.1일까지 통보하고(시스템 입력) 10.31일까지 마을 공동활동 등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관련 법상) 준수사항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각 지자체	산림부서	읍·면·동

* 협조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등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I 개요 및 일반사항

□ **목적** : 임업직불금 수령 대상자의 ‘그 밖의 준수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점검 추진

□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제16조

< 법 제11조, 제16조, 시행령 별표2, 5 >

●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생태계의 보전 등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기타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사항]

- 비료의 보관 등에 있어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을 준수할 것
- 농약 및 분뇨 등의 배출 등에 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 하천수의 사용·관리(임업용도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3항을 준수할 것
-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을 준수할 것
- 퇴비·액비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의무를 준수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단서에 따른 퇴비액비화기준 및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준수할 것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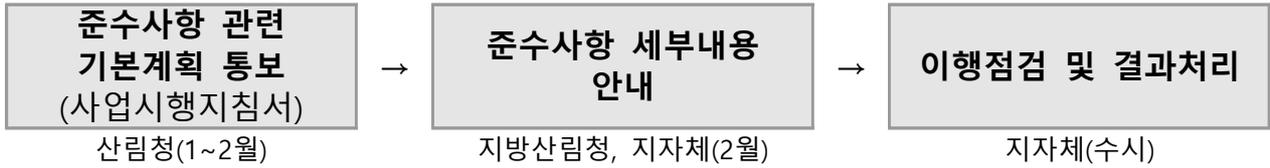
□ 적용기간

- 공익직불금 등록자 대상에 대한 그 밖의 준수사항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동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II 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준수사항에 대한 사업 시행지침 검토 및 시행	1~2월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직접지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및 계획수립 ▶ 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이행점검 (지자체 법률 소관부서)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률 위반내역 확인 - (지자체/시·군·구) 위반자 적발·처분 - (지자체/ 시도) 위반자 적발·처분내역 통보·보고 * 해당법률 담당부서 → 직불담당 부서
③ 법으로 정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결과처리 (지자체 직불담당 부서)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는 임업인 등이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을 위반하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 - 시스템을 통해 적발일, 통보일, 처분일 등을 입력

1. 공익직불 준수사항 계획 수립 및 교육



2. 기관별 주요추진 사항

[산림청, 1월]

- 산림청은 공익직불 준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여 통보한다.

[지자체]

- 지자체는 준수사항별 이행점검 결과 기타 관련 법상* 의무준수 위반자를 확인한 뒤(1단계) 위반자에 대한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여 감액 대상자를 확정(2단계)
 - *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하천법」 등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별표2·5에 정한 사항
 - ** 지자체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른 감액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14일)를 진행
 - 과태료나 처분의 결정이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생략 가능
- 직불담당 부서와 관련법령 담당부서가 다른 경우 ①법령 담당부서에 관련법에 따른 위반자 명단을 요청 → ②직불담당 부서에서 위반자 명단과 직불신청자를 대조·확인 및 의견청취 진행
 - * (예시) 하천수·지하수 점검 및 관리부서(환경부서) ≠ 임업직불제 담당부서(산림부서)
 - 준수사항별 담당기관이 제출된 위반자와 임업직불제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감액 대상자 확정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별표3의 제1호과목에서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임업인에게 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
 - 즉시 관할 지자체의 임업직불담당자에게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임업직불담당자는 해당 부과대상자의 정보를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25 전국 국·공립나무병원 수목진단센터 지정 현황

□ 국·공립나무병원(13개)

명 칭	소 재 지	연락처
국립나무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7 국립산림과학원	02)961-2677
부산시 공립나무병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6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051)756-2831
대구시 공립나무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342 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업소	053)640-4100
대전시 공립나무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69 한밭수목원	042)270-8472
경기도 공립나무병원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211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오산사무실	031)8008-6648
강원도 공립나무병원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강원도 산림과학연구원	033)248-6740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51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043)220-6154
충청남도 공립나무병원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110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361
전라북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북도 진안군 덕현로45-54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49
전라남도 공립나무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7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061)336-6300
경상북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통일로367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054)778-3850
경상남도 공립나무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수목원로38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055)254-3871
제주도 공립나무병원	제주시 수목원길 72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한라산연구부	064)710-7581

□ 수목진단센터(8개)

명 칭	소 재 지	연락처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02)880-4697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9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42)821-7800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	033)250-7225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병원	043)261-2534
전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63)219-5238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25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061)750-3865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2559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054)530-1246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501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55)772-1838

공동체활동 세부추진계획(00면(읍·동) 00리) (예시)

□ 마을자치회(3~5인으로 구성)

○ 회장(마을이장) : ○○○, 행사부장 : ○○○, 총무 : ○○○

* 마을단위 심사위원회 등 기존 조직이 동 역할 수행 가능

□ 2023년 마을공동체 주요활동 등 추진방향(예시)

○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건강하고 더불어 행복한 마을주민’을 목표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하되, 금년 9.30일까지 8시간 이상 실시

- 9.30일 이후에도 지속 실시(내년 공동체활동 이행실적에 포함)

○ 주요 활동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2회 운영) *영농폐기물 관리 이행과도 연계

② 명절전(추석, 설) 마을 대청소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경관 가꾸기(2회 운영)

④ 마을공동공간 청소, 마을축제 등 추진

□ 2023년 마을공동체활동별 세부계획(예시)

①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2023.9.5.(토)., 12.5(토))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원조직 참여자가 소각금지 등 준수사항 관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산지 : 전체 산지 대상, 특히, 발작물이 완료된 산지 대상

○ 주요내용 : 기본적으로 본인 산지의 영농폐기물을 회수, 공동수거 장소에 취합

- 방치 산지, 농로 등에 버려진 영농폐기물도 회수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후렛 등
14:30-17:30	영농폐기물 수거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	
17:30-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② 명절전 마을 대청소(추석전 9.27(일), 설날전 '21.2.7(일))

○ 일시 : 지정된 날의 14:00~18:00(4시간)

○ 장소 : 마을회관 집결

○ 참석자 : 공익직불금 신청·등록자 전체

- 마을방송, 전화, 문자 등으로 공지(회장, 행사부장, 총무 등 역할분담)

○ 지원조직 : 지역농협 등과 연계하여 행사 추진

- 지역농협 담당자가 홍보전단 설명, 참석자 확인 등 협조

○ 대상장소 : 마을 전체(넋가, 도로 등)

○ 주요내용 : 쓰레기 줍기, 도로 보수, 현수막 걸기, 교육 등

- 명절 등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해 마을에서 절대 소각 금지 등 교육 병행

○ 세부일정

시간	주요 활동	비고
14:00-14:15	마을회관 집결 및 참석자 서명 간략한 행사 설명	회장 행사부장 등
14:15-14:30	지역농협 담당자 준수사항 설명	리후렛 등
14:30-17:30	대청소 행사 - 집중 추진할 내용 기재 -	
17:30-18:00	마무리 인사 참석자 확인	마을자치회 대표 지역농협

○ 준비사항 및 연락사항

-

③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④ 마을공동공간 청소(①, ② 참고하여 작성)

⑤ 마을축제 등(①, ② 참고하여 작성)

□ 행사결과 정리 등 행정사항

○ 행사 참석자 및 행사 관련되는 내용 사진 촬영 등 결과 정리 자료 준비

○ 행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시 반영

○ 참석자확인은 마을대표자 3인 이상 및 지원조직(지역농협 등) 담당자 등이 실시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마을자치회는 미참석 등으로 추후 공동체활동 8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등록자는 지자체에 반드시 통보(내년은 주의장만 발급 예정)

* 지자체에서는 미 이행자 중심으로 실경영 여부를 다시 확인

□ OO마을 마을공동체활동 참석대상(지자체에서 자료 협조)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붙임27 마을공동체활동 행사결과(양식)

마을공동체활동 행사결과(00면(읍·동) 00리)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지정 행사결과

- 일시 및 장소 :
- 주요내용 :
- 참석자 : 대상자 100명중 95명 참석(참석자 현황 붙임 참고)
- 행사 관련 미흡사항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
- 행정사항 : 8시간이상 활동 미 참석자 지지체 통보 등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의 날 행사 주요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마을공동체활동 참석자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 총 참석대상자 100명 중 ___명 참석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자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마을자치회 회장					
마을자치회 대외부장					
마을자치회 총무					
지원조직 담당자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					

* 마을자치회 회장 등 3명 이상의 마을자치회 구성원들의 확인을 받되, 지역농협, 농업회의소 등 지원 조직 담당자의 확인도 받도록 합니다. (지원조직이 없는 경우 생길 때까지 생략 가능)
* 위 마을공동체활동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붙임28 산림청 소관 협회·단체 행사결과(양식)

--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 주요내용 :
- 주 관 :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행사 주요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참석자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1

□

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참석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 확인자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협·단체 회장					
협·단체 부회장					
협·단체 담당자					

* 협·단체 회장 등 3명 이상의 구성원들의 확인을 받음
 * 위 협·단체 참석 여부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양묘협회	52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2	한국합판보드협회	53	한국산악문화협회
3	한국조경수협회	54	한국산림과학회
4	한국포플러·속성수위원회	55	한국나무병원협회
5	한국산림정책연구회	56	한국새우란협회
6	한국산림경영인협회	57	한국식물세밀화협회
7	한국임산물연료협회	58	숲생태지도자협회
8	한국산악회	59	숲과문화연구회
9	한국목재칩연합회	60	한국산악승마협회
10	대한민국자생란협회	61	한국산삼학회
11	한국숲사랑청소년단	62	한국등산연합회
12	한국분재조합	63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13	한국수목보호협회	64	한국산림경제학회
14	한국자생식물협회	65	산림문화콘텐츠연구소
15	한국산림보호원	66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16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67	유명산숲학교
17	한국산지환경연구회	68	자연휴양림협회
18	한국임업후계자협회	69	한국해안림연구회
19	한국목조건축협회	70	노거수회
20	한국산림보호협회	71	백두대간연구소
21	자생식물단체연합회	72	백두대간진흥회
22	한국임업기계화협회	73	한국산림치유포럼
23	한국산림자원육성운동협회	74	숲길
24	생명의숲	75	전국산림기능인협회
25	한국자생식물보존회	76	숲사랑
26	한국임산탄화물협회	77	전국호두생산자협회
27	한국산림유기자원협회	78	한국DIY가구공방협회
28	산지약용식물협회	79	수목장실천회
29	평화의숲	80	한국시설양묘연구회
30	나라꽃무궁화운동중앙회	81	미래숲
31	한국숲해설가협회	82	한국잔디협회
32	동북아산림포럼	83	숲연구소
33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84	대한목재협회
34	생태산촌	85	한국목재공학회
35	광릉숲보존협회	86	무궁화문화포럼
36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87	한국산림문학회
37	새천년생명운동	88	한국밀원수조림육성협회
38	한국꽃누르미협회	89	한국산림기술사협회
39	한국아트플라워협회	90	한국수목보호기술자협회
40	한국닥나무협회	91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41	한국밤재배자협회	92	태극무궁화협회
42	한국수액협회	93	한국산양삼협회
43	한국보호수보존연구회	94	한국목공교육협회
44	대한산악스키협회	95	대한산악구조협회
45	한국목재보존협회	96	한국대학산악연맹
46	한국옻나무협회	97	곤충다양성연구회
47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98	한국산악마라톤연맹
48	한국표고생산·유통협회	99	백두대간보전회
49	한국산림공학회	100	한국숲유치원협회
50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101	한국임우회
51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102	한국잔디학회

103	한국산림유전·생리학회	155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104	무궁화사랑	156	사단법인 한국식물보전네트워크
105	백두대간 숲연구소	157	숲사랑산사랑
106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158	나눔정원가든제이
107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159	한국성형목탄협회
108	한국트레킹연맹	160	한국목재시설물협회
109	야생자원식물 소재연구회	161	산림자원육종가협회
110	숲과 아이들	162	한국숯유통협회
111	산림경영정보학회	163	사단법인 한국산림휴양경관협회
112	한국고열처리협회	164	사단법인 한국산서회
113	한국숲길등산지도사협회	165	사단법인 한국산림탄소협회
114	한국무늬목협회	166	사단법인 전국무궁화생산자 협회
115	나무심는 사람들	167	한국산림치유지도사 협회
116	한국원목생산업협회	168	한국뚝은감협회
117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169	광릉숲친구들
118	한국무궁화연구회	170	한국민간정원협회
119	한국마루협회	171	한국뚝은감생산자협회
120	생태창의성 연구소 푸른상상	172	한국숲사랑총연합회
121	한국목공인협회	173	사단법인 우리꽃무궁화교육원
122	한국산림습원보호협회	174	남북산림협력포럼
123	푸르네정원문화센터	175	대한동백협회
124	팔공산문화포럼	176	365산림화재예방협회
125	한국식물분류학회	177	한국야생식물가꾸기협회
126	한국사찰림연구소	178	산림휴양협회
127	한국대나무발전협회	179	한국가로수협회
128	세계녹화연합	180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129	산지포럼	181	한국산림환경운동본부
130	한국유아숲지도사협회	182	한국산림복원협회
131	전국대학학술림 협의회	183	한국생활정원진흥회
132	한국산림보호협력센터	184	한국나무의사협회
133	한국숲교육협회	185	한국산촌재생본부
134	한국전통참숯협회	186	한국국산목재재협회
135	한국WPC산업협회	187	시민정원문화협회
136	숲과아동 청소년교육	188	한국목수협회
137	한국아보리스트협회	189	한국임업인총연합회
138	숲태교연구협회	190	한국정원문화협회
139	한국정원협회	191	임산물 수출연합회
140	한국수목장협회	192	한국무궁화재배관리연합회
141	산림형 사회적경제협의회	193	무궁화연대
142	숲을 찾는 사람들	194	한국석재협회
143	대한트레일런협회(KTRA)	195	LG상록재단
144	더-좋은 나무만들기	196	늘푸른영농재단
145	속리산둘레길	197	서울그린트러스트
146	산림보호통신원협회	198	소호문화재단
147	한국소나무보호협회	199	천리포수목원
148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200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149	생태문화포럼	201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150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202	한국숲
151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20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152	산림환경포럼	204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153	이음숲	205	산림힐링재단
154	사단법인 대한민국무궁화예술협회	206	재단법인 나눔

II. 임산물생산업 준수사항

① 농약 등 안전사용(잔류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성조사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각 지자체	산림부서	읍·면·동

* 협조 : 한국임업진흥원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I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농약 등의 안전성 조사 이행점검을 추진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 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 (법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시행령)
 1.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시행규칙)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8.31. 시료수거일 기준 조사결과,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까지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대상으로 확정 / 8.31. 이후 시료 수거를 통해 9.30. 이후 부적합 판정된 경우 다음년도 감액반영
 -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 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생산단계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대상자는 임업경영체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정
 - * 친환경, GAP인증, 로컬푸드 등 정책지원으로 대상자가 특정한 경우, 폐광산 등 중금속 오염우려지역의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만, 전년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포함

- 생산 및 유통·판매단계 임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임가
- 임산물에서 농약 외 유해물질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임가
- 국내 미등록 농약(밀수농약), 등록 취소된 농약(폐기농약)이 검출된 임가

-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전에 안내
 - 임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업직불금의 일부가 지급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시료수거 7일전 경 조사목적, 조사시기(일자)와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입회 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 * 안전성조사 현장 입회요구서(시료 수거 7일 전 발송 안내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점검계획 통보 생략 가능
 - 유통단계 부적합 임산물 재배임가의 생산단계 재조사,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 같음
- 지방산림청은 시료를 수거하여 농약 등 유해물질 잔류검사 등에 적합하게 지정된 기관(업체)에 시료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회신

5. 준수사항 이행점검

1)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① 생산단계 임산물(지방산림청)

- 임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임산물에 대하여 출하제한(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② 유통·판매단계 임산물(지방자치단체)

- 임업인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유통·판매단계 임산물에서 위의 기준을 초과한 임업인 중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 유통·판매단계 부적합 처분임가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추적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1건의 준수 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③ 기타사항

- 친환경인증, GAP인증 임산물 등 정책지원으로 실시하는 임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유통·판매단계(「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위의 기준을 초과한 임업인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수출임산물은 국내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수입국 기준에 적합하면 준수 의무 이행으로 처리하고 수입국기준과 국내기준을 동시에 초과하여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의무 미이행으로 처리
- 임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첨부1)이 검출된 경우
 - 허용기준과 상관없이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처리. 다만, '18년 환경유래잔류허용기준(eMRL)으로 설정한 농약성분(DDT, 엔도설판, 키토젠, BHC)은 제외

2) 임산물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준수

- 농약 외 유해물질 중 임의사용으로 인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 다만, 중금속, 방사능, 독소류와 같이 비의도적인 요소로 오염되어 해당 임산물을 폐기한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감액대상에 미포함

3) 출하제한 명령준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부적합 임산물의 출하연기, 폐기, 용도 전환 등의 처분사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벌칙)에 따라 조치하고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리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이행점검 거부·방해·기피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한 자는 같은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전성조사 기관)하고
 - 「임업직불제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업직불금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치
- (의견청취 등)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 관할 지방산림청(관리소)에 의견을 제출
 - * 출하제한 명령준수 위반, 안전성조사 기피 등으로 고발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의견청취 없이 임업직불금 지급 제한대상으로 처리한다.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의견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산림청(관리소)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임업인에게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는 없음).
 - * 부적합 고지 및 생산단계 안전성 재조사 시 현장에서 준수사항 위반 통보 및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 갈음

7.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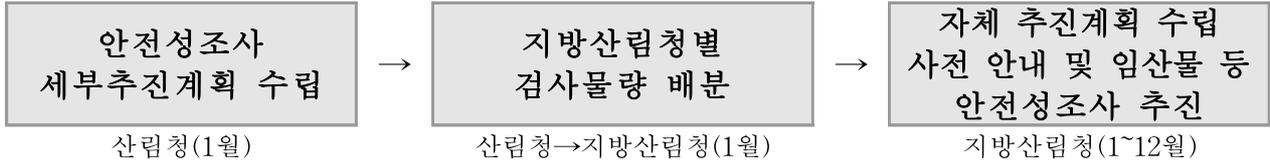
- (이행점검 결과입력)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는 이행점검결과 미이행 정보를 10. 1.까지 시스템에 입력
- (이행점검 결과전송) 지방산림청에서는 입력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임업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는 매년 10. 10.까지 시스템에 최종 전송
- (결과보고) 지방산림청은 10. 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상시 안전성조사	연중	▶ 부적합 임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사
②-1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등	출하 1~2개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품목·재배 면적을 감안 무작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사전 안내 ▶ 시료수거 7일 전 경 시료수거 임회요구서 발송
②-2 시료수거 및 분석의뢰	출하 10일 전	▶ 조사원 등을 활용하여 현장 시료 수거 및 분석기관에 시료 제공(지방산림청, 관리소) 및 분석추진(한국임업진흥원 및 민간 위탁기관 등)
②-3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결과 통보	출하 3일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사실 관계기관(지자체)에 통보 ▶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지방산림청, 관리소)
②-4 출하연기, 폐기 등 처분 이행점검	완료시	▶ 부적합 임산물 등에 대한 처분요구사항 이행점검
②-5 공약지불 결과 입력	연중 (완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결과 입력(지방산림청·관리소) - 안전성조사 결과 임업직불제 준수 의무 미 이행자
③ 특별조사 등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단계 부적합의 생산단계 재조사(수시) ▶ 동절기·하절기·추석대비 등 기획조사 ▶ 친환경, 로컬푸드, GAP 등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등
		* 특별조사 등 시료수거 및 부적합에 대한 조치는 상시조사 절차와 동일
④ 결과 점검 및 통보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준수 의무 미이행 등을 종합 검토(지방산림청) ▶ 시스템에 임업직불제 준수 의무 미이행자 전송(10.10.)
⑤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성과분석 및 개선 사항 발굴 ▶ 다음년도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III

세부추진사항

1.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교육



2. 임업직불제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내용

시기	항목	산림청	지방산림청	민간위탁기관
1월	계획수립	○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 (전국)	○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자체 추진계획수립 - 광역시도에 계획 통보	○ 임업인 교육계획 수립
1~12월	교육 및 홍보	○ 시행지침 교육 및 공유	○ 임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홍보	○ 임업인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
	사전안내	-	○ 사전안내문 작성·발송 - 시료수거 입회 요구	-
	시료수거 (연중)	-	○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및 분석 의뢰	-
	유해물질 분석	○ 민간 위탁기관 선정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 정기 및 수시 점검	○ 위탁기관 점검 - 정기 및 수시 점검	○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 및 분석결과 통보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 부적합조치 지도	○ 조사결과 부적합품 조치 - (생산단계)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고지 - 고지결과 이행여부 확인 - 확인결과에 따라 미이행자 고발 등 조치 - (유통단계) 생산자 추적조사 ○ 부적합 임업인 현장지도	<지방산림청 공동 추진> ○ 생산자 추적조사 ○ 부적합 임업인 현장지도
전년도 10~ 당해연도 9월	준수의무 이행 점검 및 결과 처리	○ 임업직불제 준수의무 미이행자 처리 지도 및 결과 관리 ○ 도매시장 등 유통·판매단계 안전성조사 정보 공유	○ 안전성 임업직불 준수의무 미 이행자 처리 - 허용기준 초과 임업인 - 고지사항 미이행자 - 국내 미등록 농약 검출자 - 시료수거 거부·기피자 ○ 의견 청취 및 최종 결과 시스템 입력	
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임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평가 ○ 임산물 등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수립(전국)	-	○ 임업인 교육계획 수립

[식약처 · 지자체]

I 개요 및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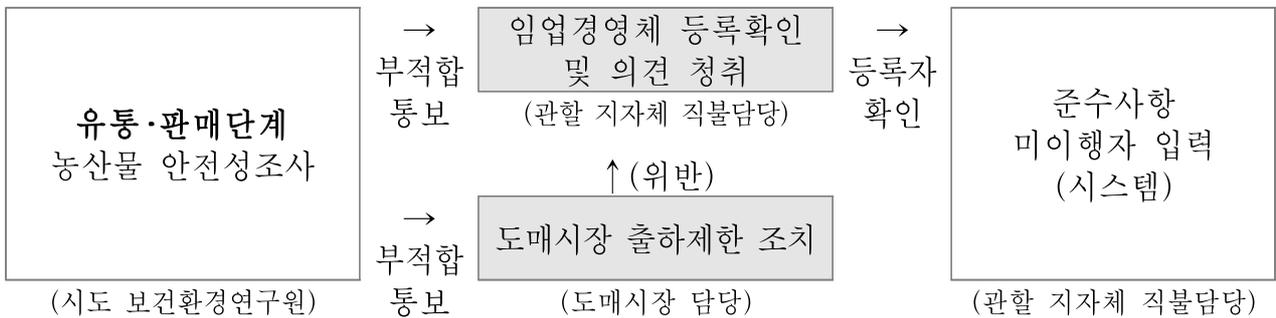
1. 적용기간

○ 공익직불금 등록자 대상 임산물 안전성조사는 아래 사항을 적용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안전성조사 기피자, 생산단계 부적합고지(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사항 이행 위반자, 도매시장 출하제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적용시점은 고발, 과태료부과 등을 명령(공문 시행)한 날

2. 관리체계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임산물에 대한 유해 물질 안전성조사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의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폐기하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따른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후 전국 도매시장에 통보하며 생산 임업인의 소재지에 속한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지자체에서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에서는 출하제한 명령을 받은 임업인이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지방산림청 및 지자체(직불담당부서)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

3. 준수사항 이행점검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 확인 결과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한다.
-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검출된 농약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
 - 검출된 농약성분이 DDT, 엔도설판(Endosulfan), 퀸토젠(Quintogene), BHC인 경우 (* 농약 PLS 관련 환경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구분)
-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임업인에게 부적합 판정 결과 및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통보
 -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제출
 - 필요한 경우 임업인의 농약 구매이력(농약판매상 확인), 영림일지에 사용기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농약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참고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④ **(농약 안전사용교육 등)** 시·군·구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잔류허용기준을 미준수한 임업인 대상으로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 실시
 - * (1)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에만 사용할 것 (2) 정해진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지켜 사용할 것 (3) 사용시기, 사용가능횟수를 지켜 사용할 것
 -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 성분(첨부1)이 검출된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전문가와 함께 구매처(경로), 임가가 보유한 농약확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지자체 담당자는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또는 최근 5년 이전에 등록 취소된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약제품을 농약판매상에서 진열·판매·보관 등이 확인된 경우 「농약관리법」 제 32조에 따라 고발등의 조치를 하고 사용한 임업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 잔류기준 준수

-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지방식약청,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안전성조사 결과 기타 유해물질(이산화황)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어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 확인 결과 임업직불금 신청자인 경우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처리
- ② (미이행자 제외대상) 유해물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도적인 원인으로 오염된 것으로 임업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자에서 제외
 - 중금속(카드뮴, 납, 비소(쌀)), 방사능, 독소류(아플라톡신 계열)인 경우
- ③ (의견청취 등)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①-③의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③ 출하제한 명령준수

- ① (임업경영정보 확인) 시·군·구 직불담당부서에서는 시도 도매시장 담당부서로부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
 - 통보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여부 및 임업직불금 신청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
 - 확인 결과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6. 이행점검결과 처리

- 지자체 직불담당부서에서는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③ 출하제한 명령준수를 위반한 임업직불금 등록 임업인에 대한 정보를 매년 10.1.까지 임업직불금 시스템에 등록 완료

등록 취소(폐기) 농약성분 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

□ 등록 취소(폐기)농약성분(폐기연도)

* 토양 장기잔류로 디디티, 비에치시, 키토젠, 엔도설판은 환경유래 잔류허용기준 설정

파라티온메틸(1969년), 디엘드린(1970년), 디디티(1971년), 비에치시(1979년), 헵타클로르(1979년), 키토젠(1987년), 디설포톤(1989년), 클로로벤질레이트(1990년), 프로폭서(1990년), 클로르펜빈포스(1991년), 에트림포스(1996년), 터부트린(1998년), 벤즉시메이트(2001년), 키노메티오네이트(2001년), 메카밤(2001년), 피리미포스에틸(2001년), 펜코나졸(2006년), 퓨라티오카브(2007년), 터부틸라진(2007년), 디코폴(2010년), 헥사플루뮤론(2010년), 아이소펜포스(2010년), 포사론(2010년), 피리미디펜(2010년), 트리아조포스(2010년), 엔도설판(2011년), 아닐로포스(2011년), 이피엔(2011년), 메토밀(2011년), 모노크로토포스(2011년), 오메토에이트(2011년), 파라티온(2011년), 피리미카브(2011년), 디클로플루아니드(2012년), 툴리플루아니드(2012년), 페노티오카브(2013년), 뉴아리몰(2013년), 프로피소클로르(2013년), 피라클로포스(2013년), 트랄로메트린(2013년), 빈클로졸린(2013년), 아진포스메틸(2014년), 플루아크리피림(2015년), 클로펜테진(2016년), 플루시트리네이트(2016년), 헥사지논(2016년), 말라티온(2016년), 몰리네이트(2016년), 포스파미돈(2016년), 피리미포스메틸(2016년), 피리다펜티온(2016년), 트리아디메놀(2016년), 에디펜포스(2017년), 실라플루오펜(2017년), 플루페나셋(2018년), 클로르피리포스(메틸포함, 2021년)

□ 국내 미등록 농약성분

* 농관원 안전성조사 결과 검출된 적은 있으나 국내 등록된 적이 없는 농약성분

디우론, 디클로포프메틸, 메톡시클로르, 에티오펜카브, 에티온, 옥사밀, 유니코나졸, 이마잘릴, 퍼메트린, 페나미포스, 페노트린, 피페로닐부톡사이드

②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 협조 :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I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추진하기 위함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1조

< 법 제11조,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

- (법률) 농약 및 화학비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시행령) 화학비료 : 산림청장이 정하는 화학성분 및 비료사용 기준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조사·수거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이행점검 결과적용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시료수거일 기준)

4. 이행점검 대상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대상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에 한함
 - 임업인이 지자체에 희망조사 요청으로 토양검정 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르지 아니함
 - 임업인에게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도록 권고
 - 지역별 면적, 품목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하는 것을 방침으로 함

5. 검사항목 및 적용기준 : 붙임

6. 토양검정 대상자 선정 및 사전안내

- 지방산림청은 시스템의 임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면적, 주요 재배 임산물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토양검정 대상자를 선정
 -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임가는 2차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
 - * 당해연도 이행점검 1차 부적합 필지는 다음년도 2차 대상필지에 반드시 포함
- 지방산림청은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음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

7. 이행점검 체계 : 별도 안내 예정

8.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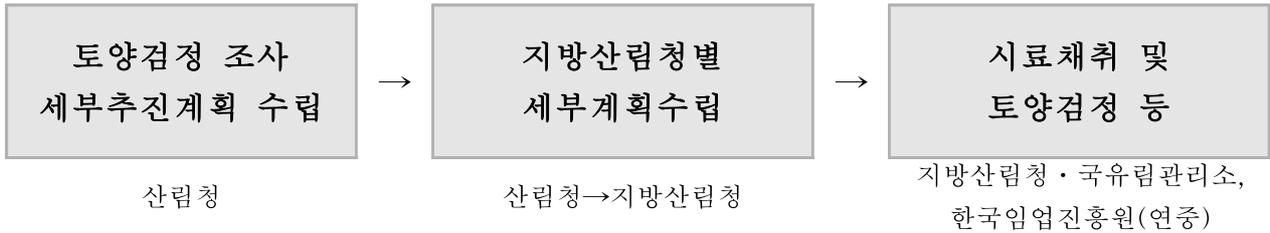
-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
- 지급제한과 관련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소명이 없는 경우 이행점검기관은 처분의 내용을 적용
 - 임업인 등이 토양검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 토양검정을 실시
 - 임업인이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토양화학성분 개선을 위해 비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토양 검정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이의신청할 경우에는 비료 구매 영수증, 영림기록일지 등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에서는 이의신청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민원처리 결과보고 공문 등 제외근거 기록물 보존 필요)

9. 이행점검 결과처리 및 보고

-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이행점검 결과는 조사대상 필지수, 조사결과 필지수, 부적합 필지수 등을 포함
 - * 점검결과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 1. ~ 당해연도 9. 30. (시료수거일 기준)
-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이행점검 「전년도 결과 및 당년도 계획」을 산림청장에 보고
 - 지방산림청장은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기한에 이행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전송
 - 결과입력 전송 기한
 - * 시료채취 기간(1. 1. ~ 9. 30.) 이행점검 결과입력·전송 기한 : 10. 15.
 - * 시료채취 기간(10. 1. ~ 12. 31.) 이행점검 결과입력·전송 기한 : 1. 20.

II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토양검정 계획 수립 및 검정



[산림청]

-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관련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에 통보
 - 임업경영체 등록자의 지역별 면적, 품목 등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에 검사 물량을 배정한다.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 여건, 지역의 특성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 산림청은 화학비료의 적정사용, 보관방법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임업인 대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산림청은 비료의 적정사용 기술을 지도·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도,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 관련 부서와 협업할 수 있음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관할 지역 특성에 맞게 국유림관리소(또는 시·군·구 별) 검사 물량 배정계획, 임업인 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토양검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제출
 - * 점검계획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 1. ~ 당해연도 9. 30.
- 국유림관리소는 지역내 임업직불금 등록자 대상으로 주요 임산물에 대하여 토양검증대상 필지를 무작위 선정하되, 최근 3년 이내 중복조사는 제외
 - 이행점검 계획은 조사대상(계획) 필지수, 전년도 토양검정 부적합 필지, 3차 판정 적합 이후 3년이 경과한 임가의 산지 등을 포함

- 선정된 필지가 형질의 변경, 타용도사용 등 토양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 필지를 추가 선정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참고하여 작성 및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후 당해연도 직불등록 제외된 필지는 이행점검 결과에 미반영.(제외된 필지만큼 추가 이행점검 실시한다.)
- 기존의 경영체에 대해서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경영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경영체에 대해서 1차 이행점검을 한 것 판단
- 임업인이 희망하여 토양검정을 요구할 경우 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지방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는 임업인이 적정하게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하고,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2. 이행점검(상시)

[산림청]

- 한국임업진흥원의 토양검정에 관한 분석기술 관리를 위하여 토양검정에 대한 지원 가능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시료 수거 7일전**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이 포함된 현장 입회요청서(양식별도)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
 - 다만, 정해진 일자에 조사대상자 미입회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할 수 있음
 - 입회요청서는 1차 토양검정 결과 부적합 필지에 대해 실시하는 2차 토양검정 필지부터 적용.
- 지방산림청은 시료를 수거하여 토양검증에 적합하게 지정된 기관(업체)에 시료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를 회신
- 토양검정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토양검정결과 부적합인 경우 이행점검 기관의 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제한의 처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
- * 임업인은 14일 이내 소명자료(비료구매영수증, 영림기록일지 등)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토양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1회 추가 검정을 실시
- 부적합 임업인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 등을 활용하여 **집합교육 또는 개별교육**을 추진
-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 추진시 등록부 등을 활용하여 교육 수료 결과를 관리

3. 이행점검 결과 및 계획 보고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은 등록신청연도 임업직불제 **토양검정 계획**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 이행점검 계획은 등록신청 임가, 점검임가, 2차 및 3년 후 대상임가 현황을 포함
 - * 점검계획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 1. ~ 당해연도 9.30.까지
 - * 토양검정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영체로 간주 작성하고, 토양검정 시 변경사항 반영
- 지방산림청장은 이행점검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년 10. 31.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
 - (결과입력 기한) 토양검정 결과는 시스템에 10. 15.까지 및 1. 20.까지 입력
 - * 시료채취 기간(1. 1. ~ 9. 30.) 이행점검 결과입력·전송 기한 : 10. 15.
 - * 시료채취 기간(10. 1. ~ 12. 31.) 이행점검 결과입력·전송 기한 : 1. 20.
 - 이행점검 결과는 등록신청 임가, 점검임가, 부적합임가 및 단계별 부적합 임가 상세정보(경영체 등록정보, 임가명, 지번 등)이 포함

토양화학성분 및 적합 여부 판단기준

1. 토양화학성분 기준

항목	기본항목			예비항목
	① pH	② 유기물(%)	③ 전질소(%)	④ 탄질율
기준	4.5~6.5	3 이상	0.10 이상	30 이하
※ 항목 설명 ① pH: 토양 수소이온농도, 토양 내 화학반응 관여 주요 인자 ② 유기물: 유기물 함량, 토양 내 주요 양분 저장고, 탄소중립정책 관련 주요 인자 ③ 전질소: 질소함량, 주요 양분 형태, 토양 내 미생물 활성 등 관여 주요 인자 ④ 탄질율: 유기물 분석값을 전질소 분석값으로 나누어 산출, 양분 순환 및 미생물 등 활성 판단 지표				

○ 토양검정 토양화학성분 분석 결과값의 반올림

- pH: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예시) pH 5.07 → pH 5.1

- 유기물, 탄질율: 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 (예시) 유기물 13.55 → 14, 탄질율 24.7 → 25

- 전질소: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 (예시) 전질소 0.167 → 0.17

2. 적합 여부 판단기준

○ 1년 차 토양검정 적합 여부

- 1차 판정: 기본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

- 2차 판정: 기본항목의 pH와 예비항목의 탄질율 항목을 동시 만족할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부적합 필지는 2년 차 토양검정에 포함)

○ 2년 차 토양검정 적합 여부

- 1차 판정: 기본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만족할 경우 적합
- 2차 판정: 기본항목의 pH와 예비항목의 탄질을 항목을 동시 만족할 경우 적합
- 3차 판정: 아래 표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적합 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으로 최종 판정(부적합 필지는 3년 차 토양검정에 포함)

항 목	구 분	판 정
① pH	당년도 토양화학성분이 전년도 보다 개선된 경우	적 합
	당년도 토양화학성분이 전년도 보다 개선되지 못한 경우	부적합
② 유기물(%)	당년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③ 전질소(%)	당년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pH는 당년도 조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 제1호의 적정기준(pH 4.5~6.5)에 근접하였을 경우 개선된 것으로 판정

○ 3년 차 이상 토양검정 적합 여부: 2년 차 토양검정 과정과 같음

토양시료채취 및 항목별 분석(산출)방법

조사항목	조사 기준	방 법	단 위
1. 토양시료의 채취 및 조제	<p>이행점검 대상 필지에서 12~15지점을 골고루 선정하여 유기물층을 제거한 지표면으로부터 표토층(0~15cm) 깊이를 채취한다.</p> <p>토양 시료는 온도(20~25℃)와 습도(20~60%)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건조한다. 풍건한 시료는 전량을 분쇄한다. 분쇄과정은 모래나 자갈이 깨어지지 않도록 고무 롤러(Roller)나 나무방망이 또는 토양분쇄기를 사용한다. 분쇄된 시료는 2mm 체를 통과시킨다. 유기물과 전질소 분석 시료는 2mm 체를 통과한 토양을 유발로 갈아서 0.5mm 체를 전량 통과시켜 사용한다. 체질한 시료는 균일치 않으므로 잘 혼합한다.</p>	토양화학성 분석용 토양 시료 조제	
2. 분석과정	<p>한 차례의 실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점수는 20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한 차례의 실험에는 참조물질(분석 평균값과 불확도 값이 측정된 토양)과 Blank가 포함되어야 한다.</p>		
3. 분석결과 확정	<p>참조물질의 분석값이 인증범위 이내일 때 같이 실험된 토양의 분석 결과를 확정한다. (단, 2차례 이상의 실험에서는 참조물질의 분석값이 2회 연속 인증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같이 실험된 토양의 분석결과를 확정한다.) 참조물질의 분석값이 인증범위를 벗어나면 원인을 규명한 뒤 다시 토양을 분석한다.</p>		

조사항목	조사 기준	방법	단위
4. 분석방법			
① pH	토양시료 5 g에 증류수 25 ml을 가한 후 30분간 진탕한다. pH meter를 표준완충용액으로 보정한 후 전극을 토양현탁액에 넣고 측정한다.	초자 전극법	pH
② 유기물	<p>2 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하여 0.5 mm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토양 0.1~1.0 g에 0.068 M (0.4 N) 중크롬산칼리 황산 혼합 용액 10 ml를 가하여 200℃ 정도의 전열판에서 기포발생 후 정확히 5분간 반응시킨 후 식힌다.</p> <p>분해액에 약 150 ml의 증류수와 5 ml의 85% H₃PO₄ 및 5~6방울의 지시약을 넣고, 0.2 M (0.2N) FeSO₄(NH₄)₂SO₄ 용액으로 분해액을 적정한다. 분해 시 소요된 K₂Cr₂O₇의 양에 탄소의 원자량과 유기물 변환인자(1.724)를 감안한 값으로 계산한다.</p>	Tyurin법	%
	<p>i) 2 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하여 0.5 mm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이미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2 point를 작성한다. 공시토양을 분석기에 적절한 시료량을 용기에 칭량하여 자동 시료 주입기에 장착하여 총탄소 함량을 측정한다.</p> <p>ii) 측정값(X, %)을 회귀식(Y=0.8592X, X는 CN분석기 활용한 측정값, Y: 튜린법으로 환산한 값)에 대입하면 튜린법(기존 표준법, %)으로 변환되므로 그대로 사용한다.</p>	CN분석기	%

조사항목	조사 기준	방 법	단 위
③ 전질소	2 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하여 0.5 mm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토양 0.25~2.0 g에 증류수 2~3 ml과 K ₂ SO ₄ 와 CuSO ₄ 혼합시약 3.5 g, 황산 10 ml을 넣고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220℃에서 1.5시간, 360℃에서 3.5시간 분해한후 식힌다. 냉각된 분해관에 10M NaOH을 주입하고 증류액 수거용기에 2% 붕산을 넣어 증류배관 하단에 위치한 후 증류를 시작한다. 증류완료 후 증류액을 0.01M 황산을 이용하여 적정한다.	Kjeldahl 증류법	%
	i) 2 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유발에서 마쇄하여 0.5 mm 체눈을 모두 통과되도록 한다. 이미 알고 있는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2 point를 작성한다. 공시토양을 분석기기에 적절한 시료량을 용기에 칭량하여 자동 시료 주입기에 장착하여 전질소 함량을 측정한다.	CN분석기	%
④ 탄질율	별표 2의 ②,③항의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유기물(%) 분석값을 전질소(%) 분석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Ⅲ. 육림업 준수사항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국 지자체(실시)	시도, 시·군·구,	-

* 협조 : 지방산림청

*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 1588-3249 +5

I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이행점검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6조제2호

< 법 제16조, 시행령 제25조 >

- (법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시행령)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이하 산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11조, 제16조의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4. 적용내용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침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임도관리원 배치 기준(제26조 제2항)
-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실행할 것**
 -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업무편람 -> 실적 서면 점검 (지자체 자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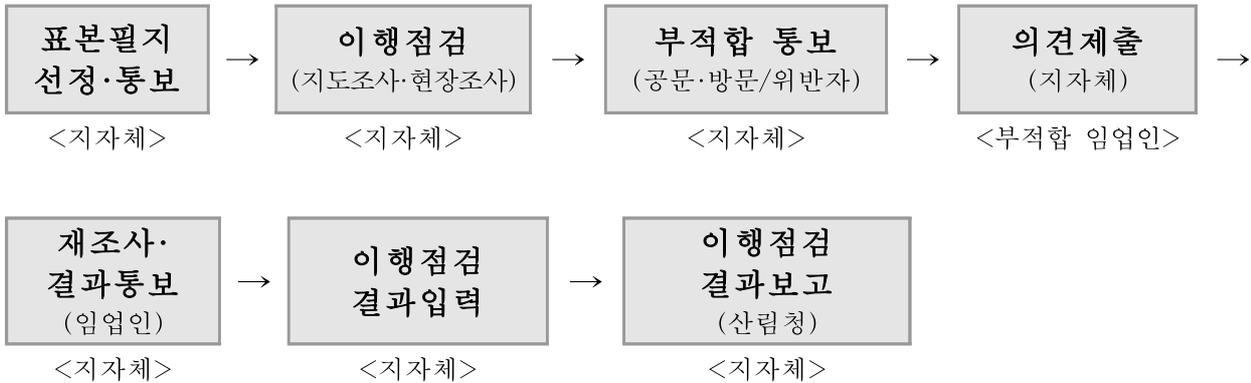
5.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선정방법** : 육림업 직불금 대상 중 무작위 5% 선정
 - * 주업기준 경영자, 경영체 DB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대면적 경영자 등 우선 선정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6. 이행점검 조사

- 점검대상 : 육림업 직불금 신청·등록된 산지(임업인)
 - 등록된 산지(임업인) 중 경영체 정보 및 현장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부정 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여부
- 점검방법 : 지자체는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영체 정보와 신청면적 비교,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
- △ 임도·작업로·운재로(진입로) 등 시설은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 ❶ 임도·작업로 등 시설의 기능 발휘에 저해가 되고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사·나뭇가지 등 제거의 적정성 유무
 - ❷ 배수로·암거·노면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의 제거 및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의 적정성 유무
 - ❸ 피해 또는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작업이 필요한 임도 등의 방치 여부
- △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차별 산림사업을 실행하여야 한다. 단,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❹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시설, 소득사업 등 연도별 계획에 따른 사업실행 여부. 단, 계획연도의 전·후 2년 이내 실행할 경우 계획대로 실행한 것으로 본다.
 - ❺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산림경영계획 실행신고 등 산림자원법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 준수 여부
- *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여 실적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부적합 판단기준
 - ❶~❺ 중 2가지 이상일 경우 부적합, ❸ 또는 ❺에 해당하면 부적합 판단

○ 점검절차



7.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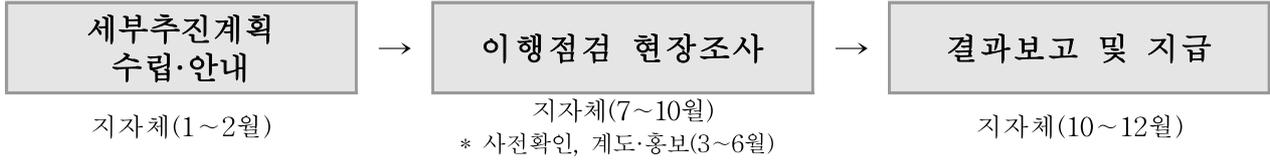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 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자체는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 점검결과를 10.1.까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자체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II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계획 수립	1~2월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		
② 현지조사	3~9월	▶ 현장 조사
↓		
②-1 표본선정 및 사전안내	3~6월	▶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확인,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 선정 ▶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		
②-2 현장조사	7~9월	▶ 항공사진, 드론,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 조사
↓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 제출고지	7~9월	▶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		
②-4 의견제출 제출	7~10월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자체에 의견서 제출(서면)
↓		
②-4 재조사	7~10월	▶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		
③ 결과 통보	10월	▶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자체)
↓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III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2. 공익직불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2월	계획수립	○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 계획수립(전국)	○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3~10월	교육 및 홍보	○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 임업인 대상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이행점검 안내·홍보
	표본선정 및 안내	○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	○ 이행점검 표본대상 선정 검토 및 안내(관할 지역)
	지도조사 및 현장조사	○ 태블릿PC조사팀 배부 * 현장조사 앱 개발 예정	-	○ (1차) 서류 조사, (2차)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제출 고지 적정 관리	-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 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	○ 임업인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의견제출 제출(서면) ○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보고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	○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이행점검 결과 평가 ○ 익년도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

2 입목의 유지

이 지침은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수립된 사항으로 지방산림청의 입목의 유지 점검 관련 분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담당기관	담당과	전화번호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738-6186	동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33-640-8652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54-850-4101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41-850-4049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063-620-4683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1588-3249 + 5

* 협조 : 지자체 시·군·구, 읍·면·동 등

I 개요 및 일반사항

1. 목적 : “입목의 일정 수준 유지”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점검 추진

2. 근거 법령

○ 「임업직불제법」 제16조제4호, 제20조~제22조

< 법 제16조, 시행령 제27조 >

- (법률)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입목을 유지할 것
- (시행령)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 법 제20조 >

- 공익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 법 제21조 >

-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22조 >

- 제 11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 미이행자 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3. 적용기간

- 이행점검 적용기간 : 직전년도 10.1 ~ 당해연도 9.30
 - * 현장조사는 9.15일까지 완료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9.30일까지 조사 완료
- 적용시점 : 위 기간 내에 부적합으로 적발된 시점

4. 조사대상자 선정방법 및 사전안내

- 선정방법 : 전체 육림업 직불금 대상자 중 5% 표본 선정
 - * 주업기준 경영자, 경영체 DB와 직불신청 내용 불일치 신청자, 필지 또는 면적 변경 2회 이상 신청자, 대면적 경영자 등 우선 선정
- 사전안내 : 표본 선정된 산지의 현장조사 시 해당 임업인에게 일시, 목적, 내용 등을 7일 전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 *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문자, 전자우편 등도 가능
- 다만, 기획조사, 긴급조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상기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에서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5. 이행점검 조사(지방산림청)

- 조사방법
 - 대상지의 나무그루 수는 표준지(400m²/개소)를 조사하여 산출
 - 대상 산지의 면적별로 3ha 이하는 1개소, 3ha 초과 ~ 10ha 이하는 3개소, 10ha 초과는 4개소의 표준지 선정하여 조사한다.
 - 대상 산지가 소면적으로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양할 경우에는 임분의 표준이 되는 곳에 표준지를 배치하고 좌표를 기록한다.
 - 표준지 내 입목은 청색 페인트 또는 청색 마킹테이프로 표식한다

○ 적용기준(임업직불제법 시행령 별표 4)

△ 수종 및 가슴높이 지름에 따른 ha당 적정 그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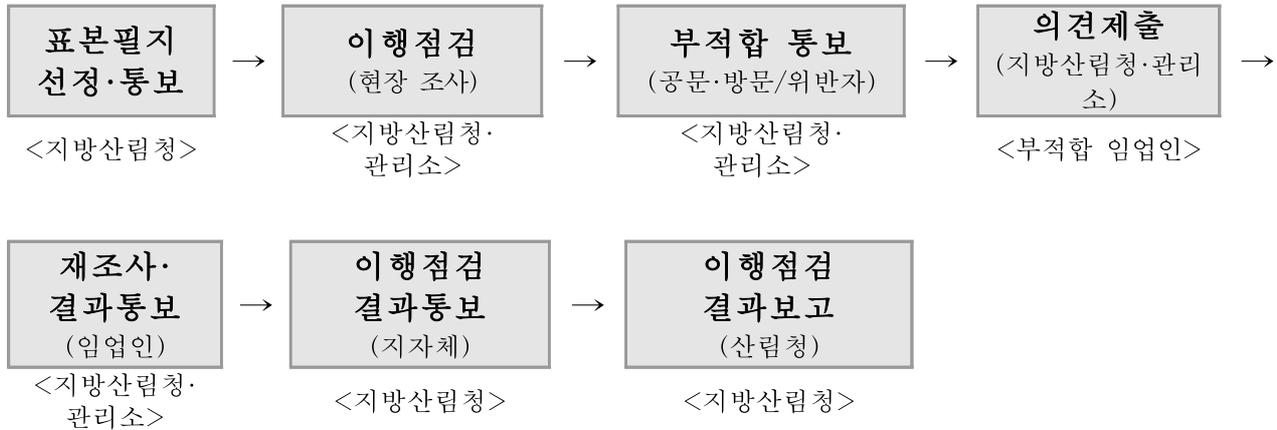
수종	가슴높이 지름(센티미터)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이상
잣나무	1,500	1,200	1,000	880	760	670	600	530	480	440	400	273
낙엽송	1,500	1,300	1,100	1,000	900	800	700	600	530	490	410	298
리기다소나무	2,000	1,600	1,300	1,100	940	810	710	630	560	500	-	438
소나무(강원)	2,300	1,800	1,500	1,300	1,100	950	840	740	670	610	-	528
소나무(중부)	1,300	1,110	960	860	780	710	650	610	-	-	-	528
삼나무	2,200	1,860	1,630	1,430	1,260	1,130	1,010	890	-	-	-	533
편백	2,700	2,200	1,700	1,510	1,330	1,180	1,070	950	-	-	-	664
해송	1,700	1,400	1,200	1,060	950	850	750	660	620	-	-	435
참나무류	980	880	800	730	660	600	540	500	460	430	390	350

* 비고: 소나무(강원)는 강원도, 경상북도 영양군·울진군·봉화군·영주시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하고, 소나무(중부)는 그 밖의 지역에 생육 중인 소나무를 말한다.

△ 기준의 적용원칙

-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이상이고, 조림(造林) 후 10년을 초과한 산지는 해당 산림 내 입목의 그루 수가 제1호에 따른 적정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슴높이 지름이 8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조림 후 10년 이내의 산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조림 후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8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 처리
 - 2) 조림 후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초 조림한 그루 수의 60퍼센트 이상이 생존한 경우에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 처리
- 테다소나무·리기테다소나무는 리기다소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나무·종비나무·가문비나무·잎갈나무는 낙엽송의 기준을 적용하며, 테다소나무·리기테다소나무·전나무·종비나무·가문비나무·잎갈나무 외의 침엽수는 잣나무의 기준을 적용하고, 활엽수는 참나무류의 기준을 적용
-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으로 산지의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목의 유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지의 피해율은 산불·산사태의 경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해충의 경우에는 나무그루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점검절차



6.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에 대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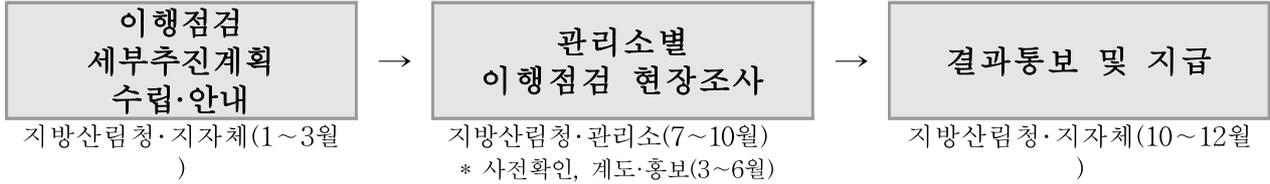
- (증빙자료 확보) 현장조사 시 조사원은 부적합 사항에 대한 현장사진, 조사 내용에 대한 임업인 서명·날인, 조사자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
- (부적합 사전통보)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에 부적합 결과와 임업직불금 감액사항을 임업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 다만, 현장에서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 또는 부재시 전화 녹취 등으로 신청인으로 부터 확인을 받을 경우(의견제출서 포함) 부적합 결과 서면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서 제출 및 재조사) 부적합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 의견서를 지방산림청에 서면으로 제출
 - 의견서를 받은 관할 지방산림청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재조사 결과를 임업인에게 서면 통보한다(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임업인 의견청취절차 없음)
- (결과 통보 및 보고) 지방산림청은 부적합 사항과 재조사 결과를 포함한 이행점검결과를 10.1.까지 서면 또는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며, 10.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를 산림청에 서면으로 보고
- (전년도 감액 대상자 사전안내) 지방산림청은 임목의 유지 준수사항 부적합으로 감액처분을 받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감액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또는 사전 안내(서한문, 전화, 문자메세지 등)를 실시

II 입목의 유지 관리 추진계획

[업무 흐름]	[시기]	[주요내용]
① 입목의 유지 관리 계획 수립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목의 유지 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유
② 현지조사	3~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조사
②-1 표본선정 및 사전안내	3~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신청 고위험군 대상 면적 중심 조사대상 사전확인, 계도·홍보 및 산지 표본 선정 ▶ 조사시 현장입회, 부적합사항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안내 고지
②-2 현장조사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진, 드론, 현장조사 등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표본필지 조사
②-3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통보 및 의견 제출고지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결과를 확인한 경우 10일 이내 해당 임업인에게 부적합 결과를 서면 등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고지 - 다만, 현장에서 신청인의 확인을 받거나 전화녹취하는 경우 통보 생략 가능
②-4 의견제출 제출	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임업인은 이행점검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의견서 제출(서면)
②-4 재조사	7~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된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후 결과통보
③ 결과 통보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점검결과 시스템 입력·공문 통보 (지방산림청→지자체)
④ 이행점검 결과 평가 및 계획 수립	1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발굴 ▶ 익년도 이행점검 세부추진계획 수립, 심의 등

III 기관별 세부추진사항

1. 이행점검 조사 및 결과 통보



2. 공익직불제 ‘입목의 유지’ 이행점검 세부 내용

시기	항목	본청	지방산림청(관리소)	지자체
1~3월	계획수립	○ 이행점검 현장조사추진 계획수립(전국)	○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 추진계획수립(관할지역) - 광역 및 기초지자체 통보	○ 이행점검 현장조사 세부추진계획 공유
3~10월	교육 및 홍보	○ 임업인 및 조사원 교육 교재제작 등	○ 임업인 대상 입목의 유지 관리 이행점검 안내·홍보	○ 관할 시·군·구 임업인 대상 이행점검 안내·홍보
	표본선정 및 안내	○ 이행점검 표본필지 선정	○ 이행점검 표본대상 선정 검토 및 안내(관할 지역)	-
	지도조사 및 현장조사	○ 태블릿PC조사템 배부 * 현장조사 앱 개발 예정	○ 항공사진·드론 조사 및 현장조사 ○ 현장조사 7일전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
	부적합결과 통보 및 의견청취 안내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통보 여부 및 의견 제출 고지 적정 관리	○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 통보 및 의견제출 고지 (서면, 임업인) - 다만, 현장에서 부적합 결과에 대해 해당 임업인에게 서명 등 확인을 받았을 경우 부적합 결과 통보 생략 가능	-
	의견제출 접수 및 재조사	○ 의견제출 접수 현황 및 재조사 통보 여부 등 관리 총괄	○ 임업인이 이행점검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의견제출 제출(서면) ○ 의견제출 대상 필지에 대하여 현장재조사 후 최종 결과 통보(서면)	-
이행점검 결과 통보 (지자체)	○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지자체 송부 관리 총괄	○ 직불금시스템에 이행점검 결과 입력 및 관할 지자체(시·군·구)로 통보	○ 직불금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아 감액결정 후 직불금 지급	
11~12월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이행점검 결과 평가 ○ 익년도 이행점검 추진계획 수립	-	-

[4] 부정수급

I. 부정수급 범위(착오 등 포함) 및 조치

- ☑ 임업직불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22조) 엄격하게 처분
- ☑ 부정수급,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한 직불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 부과한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시스템을 통해 수시 관리

①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8년 이내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강제징수,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조치

* 「**임업직불제법**」 제22조(공익직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31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40조(벌칙)

참고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질 것으로 규정(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도5085판결등)**
 -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이 이로 인하여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 불법영득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303판결)**
- ▶ **(착오등) 행위자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아니함(「형법」 제16조)**
 - 착오등(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또는 행위자 모두 발생할 수 있어, 「**임업공익직불법**」에서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착오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은 수령한 금액 전부가 아닌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대법원 2019.2.21., 선고 2014두12697)**

△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록제한 기준

부정수급 종류	분류	부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	-	-	5년	3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등을 분할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3년		

- ②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임업공익직불 등록대상 임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 임업직불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임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 지방산림청·지자체 등의 임업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해당 산지분)
 - △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을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 ③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의 변경(증명자료 미보완), 재배 조정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임업직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산지의 폐경확인, 산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 ④ (착오 등) 임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해당 산지분에 한정하여 전부 미지급
- ⑤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 행정조사 결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어 부정수급자인 경우
 - ▶ 지급받은 직불금의 전부를 환수하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부가금, 지원제한 등 행정명령
- ※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산지가 제외될 경우
 - ▶ 면적직불금은 해당 산지면적 1구간 단가를 적용하여 환수 조치
 - ▶ 소규모임가직불금은 해당 산지면적을 제외하여도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 0.1ha 이상인 경우 환수 미실시

Ⅱ.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 방지대책

□ 부재산주

○ (문제점)

- 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부재산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발생 우려
- 원거리 거주자가 자격요건만 갖추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부재산주가 직불금을 산지 임대료에 반영해 부당하게 수익 창출하는 등 부당수령 가능

<부재산주의 부정수급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양도세 감면 목적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산지 소유주가 실경영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산주는 임대료 받는 대신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양도세 감면 목적으로 산지 소유주가 실경영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부재산주는 임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수령한 후 직불금을 실경영자인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대료 받음
② 임업인 지위 유지 목적	지역산림조합 조합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부재산주가 실경영자인 임차인과 구두로 계약하여 임대료 대신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직불금을 실경영에게 양도

○ (방지 대책)

- 산지소재지와 동일 시군 또는 연접 시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한정
- 재촌산주 이외 부재산주는 주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연 90일 이상 임업 종사 포함)

※ 부재산주의 주업기준

참고

- ▶(임산물생산업) 주소와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하는 3ha(법인 10ha) 이상 산지 경영 또는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600만원(법인 8,000만원) 또는 연간 경영투입비용 800만원(법인 4천만원) 이상
- ▶(육림업) 주소와 같은 시·도(주소지 시군 기준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 소재하는 30ha(법인 300ha) 이상 산지 경영 또는 100ha 이상의 산지(하나의 주된 시군과 연접 시군 한정)에서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연 목재 판매액 1,600만원 이상이거나 연 경영투입비용 800만원 이상

□ 분리등록(산지쪼개기)

○ (문제점)

- 직불금 상한면적, 구간별 단가 차이로 인해 분할 매각, 임차를 통한 편법, 부정수급 발생 우려

<분리등록(산지쪼개기) 부정수급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산지 소규모 분할 및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산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임대 - 1ha를 이웃주민 10명에게 0.1ha씩 쪼개기 임대하여 각각 소규모임가직불금 수령
② 산지 분할 후 매각 또는 증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림업 직불금 산지를 분할하여 매각 또는 가족에게 증여 - 120ha를 경영하던 A씨가 30ha 초과 부분을 B, C, D에게 각각 30ha씩 매각
③ 부동산 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 비해 저렴한 임야가 투기대상으로 변질 - 저렴한 임야 구입가 대비 직불금 지속적 수혜로 수익 발생

○ (방지 대책)

- 직불금 산지의 일부를 양수(매매, 임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분할 양도/양수 어느 한쪽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단, 제외된 산지를 일정 기간(2년) 이상 계속 실 경영하면 직불금 지급(소규모임가 제외)
- 상속 또는 고령, 질병으로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분할 인정

□ 관행적(고의) 신청

○ (문제점)

- 부정 신청을 해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관행적·고의적 신청

<관행적(고의) 신청 유형>

대표 유형	구체적 사례
① 영림행위 없이 위탁 영림으로 직불 신청	- 고령(요양원, 병원 입원 등)의 경우 영림행위(식재, 농약살포, 수확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이 대행토록 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② 무단 점유 산지 신청	- 산지 소유자로부터 산지 관리를 위탁받은 마을 주민(A)이 마을 주민(B)에게 재임대를 해 주어 직불금 수령
	- 산지 소유주가 고령으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장 및 면사무소 직원과 결탁하여 이웃 농가가 해당 산지를 직불금 신청하여 수령함
③ 농촌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	- 도시지역 거주자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임산물생산업: 3ha 이상, 육림업: 30ha 이상)이 되지 않아 농촌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 후 직불금 수령
④ 폐경임에도 경영산지로 허위 신청	- 산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오랫동안 방치(침낭쿨, 수목이 우거진 곳)되어 영림행위가 없는 산지를 매년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후에도 직불 신청	- 임업경영체 등록은 폐경 면적을 제외하고 실면적만 등록한 후, 직불 신청할 때는 폐경 면적을 전부 포함하여 신청 후 직불금 수령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산지 소유주가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 협의를 거친 산지)를 받았음에도 해당 산지를 가족이나 지인이 직불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 (방지 대책)

1. 실경영 확인 프로세스

- 읍·면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두어 서류 및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경우 그 결과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 신청 가능

2. 벌칙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
- ③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 ④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과태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①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②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직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신청 마감한 날과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개 정보 : 성명(법인명), 산지의 지번, 등록면적, 공익직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5. 명예감시원제

- (목적) 민·관합동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적 민간 자율감시 기능 강화로 공익직불금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주요 활동

- ① 공익직접지불제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지도·홍보,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
- ② 지방산림청(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지도·홍보, 감시·신고 등 합동조사 등 참여
 - * 관외경영자 부정수급 점검, 표본 미선정 대상에 집중 투입 준수사항 이행 등 관리 지도

- 위촉대상

- ① 이장·통장 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직불제도의 투명성 제고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운영계획: 30명 내외(지방산림청별 5명 내외 위촉 예정)

6. 신고포상금제

- 직불금의 신청·선정·등록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해당 직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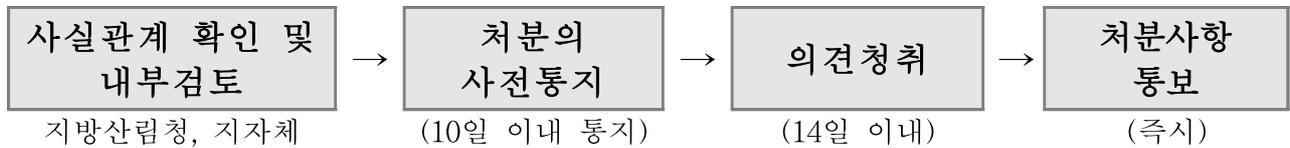
- ①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 ② 신고한 자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③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해 사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거나 조사·수사 중인 경우
- ④ 그 밖에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한 경우 등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절차

☑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 청취, 처분 통보 등이 생략되지 않도록 주의

☑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35조제1·2항에 따라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권한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있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방산림청(의무준수사항 관련 서류 보관 등 위반행위로 한정), 지자체에 있음



① (내부검토) 부정수급 관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단순착오 등 여부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자의 처분내용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

△ 필요할 경우 법률 적용 방법, 조사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 처분의 내용 등 변호사·회계사 자문, 조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

②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함

*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등의 처분내용을 모두 통보

△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와 동시에 의견청취 가능. 사전통지하는 경우 처분 대상(임업인, 산지, 금액)을 특정하여 안내

- 의견제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처분 중단을 요청할 경우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 통보되면 재개 사실을 통보

③ (처분사항 통보 및 고지서 발급) 처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등에 대하여 반납고지서 등을 발급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를 통해 이루어짐

△ 직불금의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구체적인 사유 등을 산림청에 통보(시스템 입력)하여야 함(「보조금법」 제14조)

④ (환수, 제재부가금 국고 반납 등) 착오지급,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징수하였을 경우 분기별 상황 보고, 반납 처리

△ (정보관리) 징수결정 금액을 모두 완납하였을 경우 완납일자, 금액 등을 기록 관리

△ (징수보고) 기초지자체에서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발생 시 분기별로 환수 상황을 보고(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취합) → 산림청)

* 보고 서식(필요 시 수정 가능)

(단위 : 천원)

광역	기초	착오지급		부정수급			비고
		환수액	이자액	환수액	제재부가금	이자액	

△ 징수한 금액의 정산, 반납 등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관리시스템(dBrain, e나라도움, e호조)을 통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반납 처리



* 반납 진행시 산림청에서 발부한 반납 고지서를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징수대상자에게 전달하여 징수(반납)처리하는 것은 불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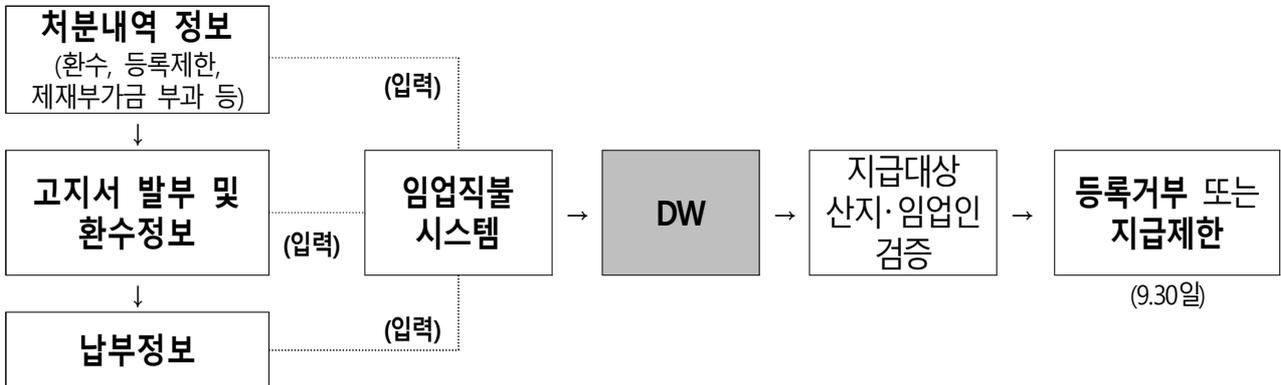
붙임30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대상자 시스템(구축 예정) 정보관리

☑ 산림청,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직불금)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명령을 한 경우 ‘임업직불 시스템’에서 입력·보완 등 대상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 (주요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착오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직불 시스템을 통해 입력·확인

* (처분) 환수명령,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수)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환수금액의 납부 정보



○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DW(DataWare House)를 통해 임업 직불 신청자, 등록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납부내역 등을 검증

- 검증결과 부적격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거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부정수급 등 관리 추진

○ 법원·검찰청의 수사기관, 정부합동감사·자치감사 등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

□ (정보관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가 임업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매일)

○ 지방산림청은 임업직불 시스템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지도·관리 협조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작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주요 질의응답

1. 공통사항

Q1-1 직불금 지급 조건이 농업과 비교했을 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

☑ 농지의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적용되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나, 임야는 해당 규정이 없음.

또한 논, 밭은 경작지를 경영하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임야의 경우 나무에 가려 경영 여부 확인이 어려움.

따라서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업종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함

Q1-2 산지를 쪼개어 직불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30ha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산지를 나누어 직불금 수령액을 늘릴 유인이 있음.

이 경우 필요 예산이 급증할 뿐만 아니라 임업인이 아닌 자가 직불금을 정당하지 않게 지급받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양수한 산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강화함

<임업직불제 산지 쪼개기 방지 대책>

원칙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제외	
예외 (대통령령 규정)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임산물생산) / 육림업	1. 상속 2. 직계존비속 증여 3. 양수 산지 이외의 산지를 제외하는 경우 4. 제외된 산지를 2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Q1-3 채취업만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

- ☑ 연중 관리가 필요한 재배업과, 일시적인 채취에 의한 생산방식에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합함.

예외적으로 송이는 일시적인 채취행위 지급하나, 생산 촉진 및 집약적으로 관리 면적에 대하여 증명하여 인정받을 경우 직불금 대상으로 인정함

일시 채취하는 수액, 죽순은 임산물 과종·식재 이력이 증명하고, 생육 촉진 및 집약적으로 관리 면적을 증명하여 인정받을 경우 직불금 대상으로 인정함

Q1-4 1인이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같은 연도에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한지

- ☑ 다른 토지의 경우 농업, 수산업, 임업 직불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분야 기본직불금 중 면적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은 한도가 적용됨

* 면적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Q1-5 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제한 이유

- ☑ ◇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 상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의 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없어, 등록기간을 제한해 대상산지를 한정

- 등록기간 : '19. 4. 1. ~ '22. 9. 30.

■ WTO농업협정 부속서2 제6항 가목에 따라, 직불금 수혜자는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생산요소의 사용, 산지의 사용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되어야 함**

2. 대상 산지

Q2-1 그동안 임야가 농업경영체(농관원) 등록되어 직불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농관원에서 '21년부터 임야는 직불금 지급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이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가능한지

- ☑ '22년부터 농업직불금 지급 받았던 대상자 중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이 불가함(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는 '22.9.30까지 임업경영체에 변경등록을 하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면 직불금 지급 가능.

단, 임야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 임업경영체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임야는 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지급이 불가.

또한, 직불금 제한 규정에 따라 직전년도 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은 산지는 당해연도에 한해 직불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Q2-2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던 산지를 추후 육림업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업종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임산물생산업'으로 등록하였다가 추후에 '육림업'으로 변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2-3 산림청 보조금(소득지원, 조림보조 등)을 받고 있는 임야에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 ☑ 임업직불금은 자격요건 및 이행점검을 충족했을 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지원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으로, 농식품사업자금에 해당하는 소득지원 보조사업, 조림보조사업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음. 그러므로 임업직불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 가능함

Q2-4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라도 직불금 수령자가 매입하면 대상이 되는지

- ☑ 직불금 수령자가 추가 매입한 산지라 하더라도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5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

- ☑ 한 토지에 '임산물생산업' 과 '육림업'을 동시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때, 한 토지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니며, 면적 기준입니다.

Q2-6 '22년 9월 30일까지 직불금 대상으로 등록된 산지는 향후 소유권이 바뀌어도 계속 직불금을 받는 임지로 유지되는지

- ☑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해당 산지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로 유지되며, 변경된 소유자가 임업경영체 등록 한 후 직불금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산지를 분할하여 여러 명에게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2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7

산림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숲가꾸기 등 벌채 허가가 승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육림업을 하는 임업인은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육림업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육림업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산지에 산림보호구역이 있으며, 일부 제한적으로 벌채가 가능하더라도, 해당 산주가 벌채 등 육림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향후 보전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2-8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조림까지 해야 직불금 지급 면적으로 인정된다면, 시군 조림물량이 벌채물량보다 모자라서 즉시 조림이 안되는 경우 자가 조림밖에 방법이 없는데, 산주의 불만이 있을 것임. 예외 인정 가능한지

- ☑ 육림업 직불금에서 벌채 후 재조림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림물량에 따른 사유에도 예외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림한 후 그 해에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다른 지급조건을 충족했을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Q2-9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 '22년에 직불금 대상 산지를 매입하고 당해연도에 직불금 신청하면 바로 지급 가능한지

- ☑ 임업직불금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매입한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1년 이상 종사하여야만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10 임업경영체에 ‘휴경’ 또는 ‘폐경’ 등록한 경우에도 ‘22.9.30까지 등록된 산지로 보는지

☑ 임업경영체에 ‘휴경’으로 등록한 경우도 등록된 산지로 인정됩니다.

단, 법 제7조에 따르면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제외 조건 중 ‘휴경중인 산지’가 해당됨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실 경영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한 후,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이란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형상이 변경되거나, 경영주가 지속적으로 경영 의사가 없게된 산지를 말합니다.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되므로 폐경인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로 볼 수 없습니다.

Q2-11 타인이 받고 있는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중 일부를 임차해서 임산물을 재배하려고 함.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대상자 중 ‘산지의 일부를 양수, 임차,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의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단,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가능

• 소임가직불금 예외 인정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면적직불금 예외 인정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 유예기간 후 지급 재개

Q2-12 산지에 비닐하우스로 버섯을 재배하는데, 직불금 지급 가능한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단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 식물을 재배 -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7호(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에 한정)의 경우 예외로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제외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필요하나 비닐하우스(시설재배)를 설치하는 행위는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대상이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음

Q2-13 감로차 등 잎을 이용해 차를 만들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수목부산물류로 제외되는지

☑ 일시적 채취행위에 해당하는 수목부산물류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단,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 산수국의 잎을 이용하는 것은 수목부산물류에 해당하므로 직불금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2-14 육묘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경우, 지급대상 산지에 포함되는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아닌 자갈의 경우는 포함 되는지

☑ 직불금 지급 요건으로 임산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바닥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펴 놓은 경우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산지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 단, 부직포로 바닥을 정비하는 등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가 가능한 경우 지급대상산지로 인정

Q2-15 등록제한 기간 중인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산지를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 ☑ 등록제한은 부정수급자의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산지를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Q2-16 신청된 산지 중 타 시·군·구 소재의 산지가 포함되어있을 경우 처리 방법

- ☑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타 시·군·구의 신청사항까지 전부 전산 입력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타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신청서 등의 사본을 이송 받은 지급 관할 읍·면·동은 이송된 신청서의 정보 누락 및 적정 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고 현지조사, 조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등록증 발급 등 후속절차 추진

3. 지급 대상자

Q3-1 90일 이상 종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 ☑ 원칙적으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스마트 영림일지’(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및 수기 영림일지를 통해 90일 종사함을 증명해야 함

‘스마트영림일지’ 어플리케이션은 GPS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위한 동선을 기록할 수 있으며, 기타 영수증 스캔 및 전문가 상담 등 임업종사를 인정함.

- * 단,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것을 증빙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육림업 주업기준 중 해당 산지에서의 90일 이상 종사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Q3-2 120만원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 ☑ 임업직불금에서는 임산물 출하 등 납품 영수증과 직거래 증빙 영수증을 병행 인정하고 있음. 단, 직거래 시 허위증빙 가능성이 있어 거래내역서의 구매자 인적사항정보를 통해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통장입금내역 증명이 불가능한 현금거래는 불인정(ex 전통시장 현금거래 등)

Q3-3 120만원 판매액 증빙의 경우, 출하실적 없는 해에는 인정되지 않는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120만원 판매 실적’은 직불금 지급 기본 요건으로, 직전년도의 120만원 판매 실적이나, 신청연도의 직불금 신청일까지의 120만원 판매 실적을 증명해야 함. 단, 생산주기가 길어 매년 판매 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을 기준으로, 판매실적 발생 연도부터 신청 직전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판매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음(본 지침서 13페이지 사례1 참조)

Q3-4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일시적인 채취행위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부적합한 산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제9호)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판단 기준은 **과종, 식재(접목을 포함), 또는 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경우**(수목부산물류는 과종, 식재하더라도 직불금 지급 제외)를 말한다. 단,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약적으로 관리하여 생산하는 송이,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하는 수액과 죽순은 예외로 인정

Q3-5 본인 소유의 산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아왔음.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소유자인 본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 가능한지

- ☑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지급대상 산지’의 조건과 ‘지급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기존에 임차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산지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인 산주가 직불금 신청 직전년도에 임업에 종사하여야 하므로, 임대 종료 직후 산주가 직불금을 신청한다면 1년간 임업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요건 충족 후 익년도에 직불금 신청하여야 함

Q3-6 산주가 아니지만 입목등기(소유권보존등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했다면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육림업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에 한해 지급대상자가 됨. 단,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입목에 관한 소유권을 보존 받은 사람의 경우 산림소유자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자로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함

*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은 산지 소유자 이외에도 산지 내 입목을 등기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도 가능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2항)

Q3-7 배우자 소유의 산지에서 배우자와 공동경영하는 A의 경우, A가 임산물 생산업 면적직불금을 신청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자기 소유의 산지 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할 때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적법한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단 배우자 소유 산지를 동일 경영체에서 공동경영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 불필요함

Q3-8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해 1년 이상 종사, 90일 이상 종사 증명, 120만원 판매액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한 자로서 연간 종사일수 90일 이상, 지급대상 산지 면적 0.1ha 이상, 임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4. 지급 금액

Q4-1 직불금 종류별 지급상한면적과,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지급 여부

- ☑ 직불금 종류별 지급상한면적

구분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0.1~0.5ha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 임가 당 지급상한면적

구분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직불금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0.1~0.5ha	임업인 60ha	임업인 60ha

*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한 면적의 경우, 초과분에 한해 직불금 미지급

5. 이행점검 및 부정수급

Q5-1 직불금 이행점검 시기에 임산물이 없을 경우 점검 가능한지

- ✔ 임산물이 보이지 않는 시기에 이행점검을 할 경우 토양이 유지되고 있는지, 작물 재배 흔적 등 경계가 구분되는지, 해당 임지에서 재배 중인 사진 자료, 임산물판매실적(임업인에게 요구),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

Q5-2 부정수급 적발된 직불금의 환수 가능 기간은

- ✔ 국가보조금의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적용

* 관련법령 : 「국가재정법」제9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3조의2, 「국세기본법」제27조

[6] 관련 서식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시·군·구 및 관계부처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지방산림청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운영일자	비고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임업인용)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8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계좌의 예금주는 등록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

② 경영주인 임업인	성명	전화번호	신청유형	※ 안내문 참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시설임가 여부	[] 시설임가
③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등록신청인 기준)

④-1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④-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구성원 ※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⑤-1 산지일반				⑤-3 산지 면적(m ²) A ≥ B+C+D					⑤-4 시설현황		⑤-5 품목별 재배면적			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해당란 []에 √ 하시오)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⑤-2지목		공부(A) A ≥ 자경+임차			미이용		시설종류	시설면적(m ²)	품목	노지(m ²)	시설(m ²)	신청면적(E) E ≤ B [신청인 소유 산지 또는 신청인 명의의 임차·사용차 등(이하 이 쪽에서 "임차등"이라 한다) 적법한 권원을 가진 산지만 신청 가능]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선택, 1개 이상 "미해당"인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공부	실제	산지면적	자경	임차 기간 (~)	실제경영(B)	휴경(C)							폐경(D)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신청· 소유면적 등
															소계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m ²)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m ²)	1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지의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하 1-1 임가 내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의 면적의 합이 1만5천500제곱미터 미만	신청(경영)면적의 합 (m ²) 소유면적의 합 (m ²)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소계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m ²)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m ²)	2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지의 영농종사기간,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3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2천만원 미만 3-1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천500만원 미만	영농종사 년 농촌거주 년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소계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m ²)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m ²)	4 임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 각각의 실제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800만원 미만		[] 해당 [] 미해당
															소계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m ²) []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 (m ²)	5 신청일 직전 연도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 직접지불금 수령이력 없음(해당 임가 구성원 포함)		[] 해당 [] 미해당
합 계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등 산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 모두 선택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

⑦-1 산지일반				⑦-3 산지 면적 (m ²) A≥B+C+D						⑦-4 시설현황		⑦-5 품목별 재배면적			⑧-1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 보유 면적	⑧-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⑦-2지목		공부(A) A≥자경+임차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품목	재배면적		육림 실적 보유 면적(E) E≤B [휴경 중인 산지는 면적 에서 제외]	신청면적(F) F≤E [육림 실적 보유 면적만 신청 가능]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실제 경영 (B)	휴경 (C)	폐경 (D)				노지 (m ²)	시설 (m ²)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m ²)	[] 신청인 소유 산지 [] 신청인 명의 입목 등기 산지
합 계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 √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임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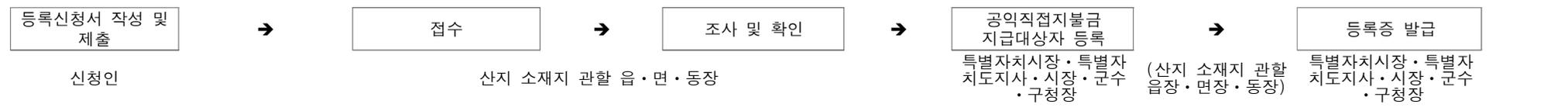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등록신청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으로 임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합니다.

나. ②와 ③의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 ④-1란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관계’란에 등록신청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부, 모, 자, 녀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 내 모든 세대원을 작성합니다.

라. ④-2란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3년 이내인 임가 구성원의 인적정보를 모두 작성합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⑤-1부터 ⑤-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⑥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신청면적란은 ⑤-3 ‘산지 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차 등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종류 선택란은 등록신청인이 표 안의 ❶부터 ❸까지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란에 체크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미해당란에 체크합니다.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에 체크하고, 미해당이 1개라도 있는 경우에는 면적직접지불금에 체크합니다.

3) ❶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요건(❶-1부터 ❶-5)에는 모두 해당되는 임가 중 면적직접지불금 금액이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지급단가보다 낮은 경우 소규모임가 직접지불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⑦-1부터 ⑦-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⑧-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⑦-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⑧-2의 신청면적(F)은 ⑧-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임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바. 영 별표 1 제1호다목 및 사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

※ 7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경영정보변경일		처리기간	90일
------	--	-----	--	------------	--	---------	--	------	-----

1. 일반현황

① 등록신청인	대표자명(법인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	(마을명:) (전화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② 법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	증명서류
③ 구성원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④-1 산지일반				④-3 산지 면적(m ²) A ≥ B+C+D					④-4 시설현황		④-5 품목별 재배면적			⑤-1 면적직접지불금 신청면적(m ²)	⑤-2 실 경작자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④-2지목		공부(A) A ≥ 자경+임차		실제 경작 (B)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품목	재배면적			
			공부	실제	자경	임차		휴경 (C)	폐경 (D)				노지 (m ²)			시설 (m ²)
						기간 (~)										
합 계																

등록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 표시합니다.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4.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등록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등록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4. 소득금액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
6.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7.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8.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록신청인(농업법인의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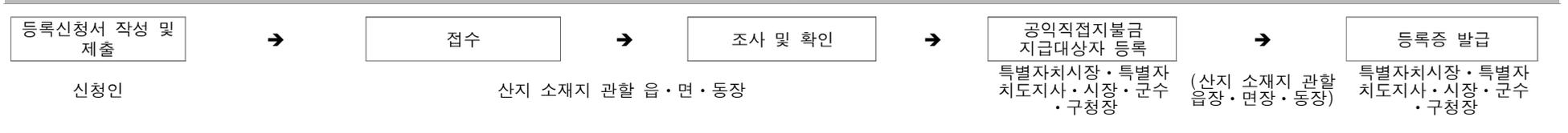
		년	월	일
등록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등록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가.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소재지(마을명 포함),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나. ①란의 전화번호는 해당 농업법인용 전화번호를 적되, 농법법인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임산물재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④-1란부터 ④-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⑤-1란의 신청면적은 ④-3 산지 면적의 실제경작(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⑤-2란은 해당 농업법인 내 산지 소재지별 실경작자를 적습니다.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 등록신청인의 산지 및 산림경영, 육림업 직접지불금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가. ⑥-1란부터 ⑥-5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나. ⑦-1란은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휴경 중인 산지의 면적은 제외하며, 육림 실적 보유 면적은 ⑥-3 산지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⑦-2의 신청면적(F)은 ⑦-1의 육림 실적 보유 면적(E)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산지와 신청인 명의의 입목 등기 산지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산림청장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산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라. 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산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에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사용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산지에 대해서는 그 점유·사용에 변동이 없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법 제8조제3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영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 다. 법 제14조제3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신청 연도 전에 증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조사 통보서식**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산지형상 부적격이 우려되는 지번 내역				
산지 소재지	00군 00면 00리 000			
사전조사결과(추정치)	공부상면적(m ²)	산지형상 유지면적(m ²)	산지형상 미유지면적(m ²)	산지형상 미유지 사유
	1,000	800	200	묘지
<p>* 폐경면적을 신청면적에 포함하여 직불금 신청할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직불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항공사진으로 조사한 결과(추정치)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임업인께서는 반드시 폐경면적 등을 제외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면적만 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폐경 등이 표시된 항공사진 첨부 (사전조사 시, 우려필지는 폐경 위치를 표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p>				

* 사전조사 결과, 부적합 우려필지는 우려사항을 추가로 출력하여 배부

공익직불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구분 ([] 해당란에 “√” 표시)		등록 산지등 소재지 및 면적				등록 산지등 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면적(m ²)	합계	경작· 경영	휴경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소규모임가 []·면적 [], 육림업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에게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할 목적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산지등의 공익직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급대상 산지 제외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인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휴대전화)	
승계 산지 정보	산지소재지	공부상 산지면적(㎡)	
	산지소유자	취득 경로(양수, 임차, 사용차, 분할, 공유지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승계인이 승계하는 산지 이외에 신고인이 보유 중인 모든 지급대상 산지는 향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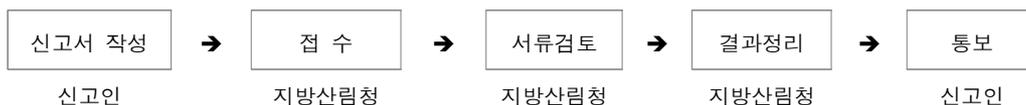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야대장 3. 임대차계약서 등(신고인 또는 승계인이 임차 또는 사용차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임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야대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록번호 제 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 해당란에 "○" 표시

등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m ²)	실제경영 면적(m ²)	품목	등록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임사지번)					
합계							

2 육림업 직접지불금()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산지 면적(m ²)	실제경영 면적(m ²)	품목	등록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임사지번)					
합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면적직접지불금()]·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 5쪽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	-----

① 등록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② 산지일반				③ 산지 면적(m ²) A ≥ B+C+D				④ 시설현황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⑦ 변경 사유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②-1 지목		공부(A) A ≥ 자경 + 임차		③-1 실제경영(B)	③-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⑤-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⑤-2 육림업 직접 지불금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 불금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C)	폐경(D)			신청 면적 (m ²)	신청 면적 (m ²)		신청 면적 (m ²)	신청 면적 (m ²)

*** 기타 변경 사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297mm × 210mm [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변경등록 신청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

-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확인
-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 4.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는 변경등록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했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변경등록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변경등록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변경등록 신청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변경등록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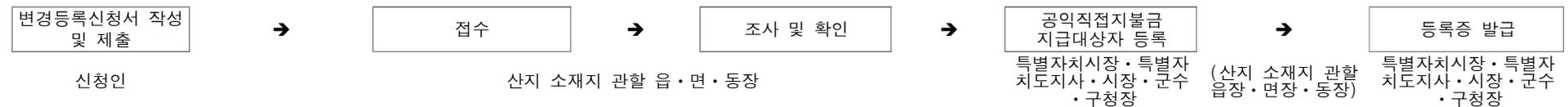
		년	월	일
변경등록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변경등록 신청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의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②란의 산지소유자란, ②-1란, ③란부터 ⑤란까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⑥-2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4.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③란의 산지 면적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 임대종료, 임차, 임차종료,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시 첨부서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발급받은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등록된 지급대상 산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면적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

※ 5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등록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	-----	------	-----

① 현 등록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② 변경등록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직접지불금 수령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산지일반				④ 산지 면적(m ²) A≥B+C+D				⑤ 시설현황		⑥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면적(m ²)				⑦ 변경 사유		
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 소유자	③-1 지목		공부(A) A≥자경+임차		④-1 실제 경영 (B)	④-2 미이용		시설 종류	시설 면적 (m ²)	⑥-1 임산물생산업 직접 지불금			⑥-2 육림업 직접지불금	
			공부	실제	자경	임차 기간 (~)		휴경 (C)	폐경 (D)			등록 면적	신청 면적		등록 면적	신청 면적

* 기타 변경신고 사항: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변경등록 신고인(대표자)

확인	읍장·면장·동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변경등록 신고인 확인 사항 ※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읽어본 후, [] 확인란에는 V 표시합니다.

- 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고합니다. [] 확인
- 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수거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조치되거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향후 지급대상자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 5.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는 변경등록 신고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변경등록 신고인에게 있음을 고지받았습니다. [] 확인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임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
5. 소득금액증명
6. 입금계좌확인정보
7.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9.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10.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변경등록 신고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담당 공무원이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여부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변경등록 신고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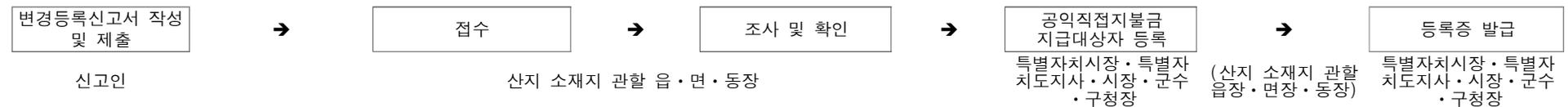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변경등록 신고인(임업인의 경우에는 경영주인 임업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 그 외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합니다)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임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임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임업보조금 정보, 그 밖의 정책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임업·산림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고서에 기재한 변경등록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기계·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변경등록 신고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대표자)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의 임업인(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그 외 가족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작성방법

1. ③란의 산지소유자란, ③-1란, ④란 및 ⑤란의 정보는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2. ⑥-1란은 변경 후의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또는 면적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3. ⑥-1란은 변경 후의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신청면적을 작성합니다.
4. ⑥-1란과 ⑥-2란의 신청면적의 합이 ④-1란의 실제경영(B) 면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⑦란은 필지별로 변경사유[매매, 증여, 상속, 임대, 임대종료, 임차, 임차종료,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 시 첨부서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지급대상 산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임차·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뇌사판정서 사본 등 사망이나 뇌사판정을 증명하는 서류(「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임업직불금 등록 거부(제외자)대장

번호	신청구분 ([] 해당란에 “√”표시)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면적 (m ²)	제외사유
1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2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3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4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5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6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7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8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9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0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1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2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3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4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5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6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7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8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19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20	소규모임개 [], 면적 [], 육림업 []					

※ 제외자: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 산지등 전체가 대상산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에 대한 재심사신청서

구분	<input type="checkbox"/>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input type="checkbox"/> 면적직접지불금 <input type="checkbox"/> 육림업 직접지불금	※ <input type="checkbox"/> 해당란에 "√" 표시
----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심사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읍장·면장·동장 _____
----	-------------------

첨부서류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 2. 재심사 신청내용과 관련된 증명서류
------	---

(앞쪽)

제 호

조 사 원 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백상지 120g/㎡]

(색상: 연녹색)

(뒤쪽)

조 사 원 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사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거주지, 지급대상 산지,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재판매처 및 출하처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구분	[]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 [] 면적직접지불금, [] 육림업직접지불금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산지 지번		신청 산지 면적	
-------------	--	-------------	--

이의신청 내용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읍장·면장·동 장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

(앞쪽)

사업연도	직불 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번	부번	주소	산지면적(㎡)	적격여부	수령금(원)	지급면적(㎡)	휴경면적(㎡)

위 지급대상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2조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명)			지급대상 면적(m ²)			소요 자금(천원)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합계										
00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산림청장) 귀하

임업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m ²)			지급 결과(천원)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육림업 직불	합계	임산물생산업직불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소규모임가	면적
합계											
00군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산림청장) 귀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인 성명	산지등 주소	위반 행위	직불 종류	처리 연월일	처리내용	결과통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우편 등)	포상금 지급액

※ 직불종류: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면적) 또는 육림업직불금

공익직접직불금 부정행위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산지				
신고내용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당자 : (소속) _____ (직급) _____ (성명) _____
- 조사결과
 - 부정행위 연도 : _____
 - 부정행위 산지등 : _____ (면적 : m²)
 - 부정수급 직불 : _____
 - 부정수급 금액 : _____ 원
 - 부정행위 내용 : _____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_____
 - 환수액 : _____ 원 (부정수급액 _____ 원, 가산금 _____ 원)
 - 미지급액 : _____
 - 등록제한 : _____ 년(_____ 년 ~ _____ 년)

3. 부정행위 상세내역

- 부정행위자 : _____ (생년월일 : _____)

직불종류	신청·수령연도	산지등 지번	면적 (m ²)	금액 (원)	비고
합 계					

※ 직불종류 : 임산물생산업직불(소규모임가·면적) 또는 육림업직불

4. 포상금 신청 상세내역

적용법조	수령 여부	지급 연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금액(원)	포상금 계산내역	포상금 신청금액(원)	비고

※ 부정수급 필지를 포함하여 지급한 직불금 전체를 환수한 경우 전체금액을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으로 산정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용	* 임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신청면적(m ²)		공부상 면적 (m ²)	조사결과								비고 (불이행 사유기재)
읍·면· 동	본번	부번	경작· 경영	휴경		산지형상 (공부상면적 기준으로 조사, 단위 m ²)				① 불이행 면적 (신청면적 대비)		산지기능 (불이행 항목 "×" 표시)		
						경작·경영	휴경	부속시설 등 (미감액)	폐경 (감액)	미감액 (미지급)	감액	보호·정화 활동②	경계 ③	
00리	111	1	500	200	1000	300	200	100	100	100	100	-	×	생산시설물 100m ² , 불법형질변경 100m ²

- i. ① 불이행 면적은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를 불이행할 경우 불이행 면적 기재, 미감액은 생산·개량·부속시설* 등 임업에 이용되는 면적[지급면적에서만 제외(미지급)], 감액은 미관리 및 방치 또는 콘크리트시설물, 주거시설** 등의 면적[지급면적에서 제외(미지급), 나머지 산지분 감액 적용]
- ii. ②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③ 이웃 토지와 경계 표시 및 관리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iii.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임도(육림업에 한정),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경우는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불이행면적에 해당하지 않음

* 생산·부속시설: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되지 않으나, 임업에 이용되는 면적,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임도(임산물생산업에 한정), 6)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산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m²이하, 주거목적 제외), 9) 간이저온저장고 (33m²이하), 10)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 감액대상(폐경): 산지가 아닌 토지(불법형질변경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포함),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정원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면적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신청·등록면적에 폐경 등이 포함된 경우, 산지기능 미유지 경우에는 각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점검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읍·면·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m)	신청 면적 (m)	①산지형상			②산지 기능	③감액 여부	부적합 사유
					적합 면적(m ²)		부적합 면적(m ²)			
					경작·경영	휴경				
전라남도 완도군 00면 00리	0376	0000	1,000	1,000	500	200	300	적합/ 부적합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① 산지형상 시설 100m ² 묘지 200m ² ② 산지기능 경계미설치
									-	

- ① 산지형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부적합면적: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유지·관리되지 않는 생산·부속시설(산림경영사, 농막 등)과 폐경(건축물, 묘지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등은 공익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됨
- ② 산지기능: (산림보호)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경계) 이웃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폐경, 산지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산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지방산림청장 산림경영과(연락처: 000-000-0000)>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이행점검 재조사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읍·면·동명	본번	부번	공부상 면적 (m)	신청 면적 (m)	①산지형상			②산지 기능	③감액 여부	부적합 사유
					적합 면적(m ²)		부적합 면적(m ²)			
					경작·경영	휴경				
전라남도 완도군 00면 00리	0376	0000	1,000	1,000	500	200	300	적합/ 부적합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① 산지형상 시설 100m ² 묘지 200m ² ② 산지기능 경계미설치

- ① 산지형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분에서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부적합면적: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이 유지·관리되지 않는 생산부속시설(산림경영사, 농막 등)과 폐경(건축물, 묘지 등 임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등은 공익직불금 지급면적에서 제외됨
- ② 산지기능: (산림보호)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을 수행할 것, (경계) 이웃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표시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폐경, 산지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산지를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등록한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농약등 유해물질 안전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조사결과

접수 번호	품목	시료 수거			종 류	소유자		생산자	
		연월일	수거 단계	장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일반, 인증, 수출국 등)				
분석항목		검출성분		검출치 (mg/kg)	허용기준 (mg/kg)	검토의견			
(잔류농약, 기타 유해물질 등)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미이행 조치계획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예정인 직불금의 10%를 감액을 검토할 예정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익 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동봉한 의견서를 산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특이 사항>			

4. 대표자 등 확인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대표자 (인)	연락처 :

※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공동활동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마을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수	명
<input type="checkbox"/> 의무 이행 상황					
◦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동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것					
신청인(성명)	연간 공동활동(8시간 이상)			이행점검결과	
	일시(월일)	활동내용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공동체 활동을 연간 1회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불금 총액의 일부(10%)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영농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영농폐기물·생활폐기 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을 방치하거나,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영농폐기물 관리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감액여부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직불금 총액의 5% 감액
영농폐기물·생활폐기 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농폐기물 관리) : 등록된 산지 등과 그 주변에 폐비닐·폐농약병 지상방치 여부 및 영농폐기물·생활폐기물을 산지에 매립 또는 소각 여부

* 영농폐기물을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불금 총액의 일부(5%)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임산물생산업 영림일지

필지							
품목				경영체 번호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O표시				※ O표시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O표시				※ O표시			
증빙 사진 · 자료 (선택 항목)							

임산물생산업 영림일지(작성예시)

필지	※ 작업을 수행한 필지를 모두 기재 (예) 1번 산지(산00번지) 또는 1번(산00번지)~ 10번 산지(산00번지)				
품목			경영체 번호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임내 : 작업단계 * 작업단계 : 재배·관리, 시설관리, 산림보호, 수확 중 1 - 세부 : 00가지치기, 00비료주기, 00비료주기, 00농약살포 00수확 등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구분 * 구분 : 임산물판매·사전준비(영농자재구입)·교육·컨설팅 중 1 - 세부 : 00판매, 00교육 참석, 00구입, 00컨설팅		임외()		
※ O표시			※ O표시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O표시			※ O표시		
증빙 사진 · 자료 (선택 항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뒷면, 별지 활용가능</p>				

육림업 영림일지

필지							
수종				경영체 번호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O표시				※ O표시			
작업일	년	월	일	작업일	년	월	일
실행내역				실행내역			
임내()				임내()			
임외()				임외()			
※ O표시				※ O표시			
증빙 사진 · 자료 (선택 항목)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경작·경영과정 필요한 사항		

※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작목별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사용내역 등을 경작·경영기간 중 기록 또는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이행 사유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 영림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직불금 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점검내용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표시)	비고 (불이행사유 등)	감액여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구입영수증 보관			직불금 총액의 5% 감액
농약, 비료 등 사용내역			
경운 등 기타 경작·경영과정 필요한 사항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영림기록 작성 및 보관) : 농약 및 비료의 투입내역, 종자 사용내역 등을 경작·경영기간 중 기록 및 구매한 투입자재 및 종자는 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2년간 보관

* 영림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의무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신청·등록인이 수령할 공익직불금 총액의 일부(5%)가 감액됨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준수사항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면적: m²)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실경작		미이용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품목	면적	
읍·면·동	본번	부번	자경	임차	품목	면적	폐경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의 항목번호(①~⑨)를 기재

- (항목) ①변경등록 잘 모름 ②단순 변심 ③가격변동 ④종자미확보 ⑤휴경,
⑥폐경 ⑦경영주변동 ⑧기타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일자 :	년	월	일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산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요청서

1. 경영체 등록번호 :
2. 주소 :
3. 경영주(법인대표) 성명 :

경영정보 구분	등록 내용	확인결과 변경을 요청 하는 내용
산지현황 임업현황 생산현황 소규모임가 지급요건		

상기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하오니 ()월 ()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확인결과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안내사항>

1. 본 통지서는 현지조사과정에 경영주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기피한 경우 또는 현지조사 및 전산검증 결과 등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발급합니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1.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일반현황)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사유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2-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산지현황)

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	조사결과(불이행 항목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말소	소유자명	공부상 지목	공부상 면적	

2-3.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임업현황)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폐경 면적 (㎡)	품목 및 면적(㎡)			조사결과 (불이행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휴경	품목	면적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의 항목번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목) ①변경등록 잘 모름 ②단순 변심 ③가격변동 ④종자미확보 ⑤휴경, ⑥폐경 ⑦경영주변동 ⑧기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공익직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00호 서식)를 산지 소재지 ○○지방산림청장,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불이행시 직불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의견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의견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장·○○관리소장 / 읍장·면장·동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의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했음을 통지합니다.

당사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전화:)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

공고 제 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처분결과 및 사유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직인